

불처벌 관련 박원순 변호사 글

1. 동경전범재판의 시작과 끝
 2. 영원히 쫓기는 나치범죄자-나치전범 사냥의 역사-
 3. 세계각국은 과거사를 어떻게 심판했는가-부당한 권력의 ‘불처벌’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cpb. d. 9

cpb. d. 9

동경전범재판의 시작과 끝

변호사 박원순

1. 서론

제2차대전이 한참일 때 일본 군국주의가 침략의 손을 뗀지 않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일본에 점령된 영토는 나치 독일의 그것보다 더욱 광대하였다. 거의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남북 7천킬로미터, 동서 1만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전역에서 전사자 117만명, 부상자 461만명, 일반 시민의 사상자 678만명의 큰 희생을 치른 이 전쟁은 일본의 완전한 패배로 끝이 났다. 이 전쟁과정에서 또는 점령지에서 일본이 벌인 잔혹한 범죄는 그에 대한 응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 오랜 전쟁이 끝난 뒤 1945년과 1951년 사이, 연합국은 920명의 일본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또다시 3천여명에게 유기형에 처했다. 자업자득이었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전쟁범죄형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국들이 각자 수행한 일본인 전범에 대한 처벌의 수준과 그 처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극동국제군사재판(흔히 동경제판이라고 불린다)은 주요한 전쟁범죄자들을 피고인으로 한 것이다. 동경제판에서 재판을 받은 25명은 일반적으로 A급전범으로 불리고 있다. A급 전범은 국제조약을 위반하여 침략전쟁을 기획, 시작, 수행한 사람들이고, B급전범은 전쟁법과 전쟁관습법을 위반한 자들이며 C급전범은 상급자의 명령에 의하여 고문과 살인을 직접 행한 사람들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가운데 25명의 주요 전쟁범죄자들에 대하여 동경에서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동경전범재판은 그 규모, 역사적 비중, 국제법상의 의미에 비추어 깊은 연구를 요하는 부분이다. 2년반이나 지속된 이 재판에는 연2만명의 방청객이 지켜 보았고 818회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2동병에서부터 중국의 마지막 황제 부의까지 419명의 증인이 나섰으며 779개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4,336개의 문서가 증거서류로 제출되었고 공판조서가 49,858페이지에 달했다. 이 재판의 비용으로 9백만불이 지출되었으며 100톤의 종이가 소요되었다. 재판관과 피고인, 변호인들과 진행요원들, 현병과 속기사, 통역관, 사진사, 방청객과 동서의 언론인들, 그 어느 날에도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법정을 봄볐다.

그러나 동경제판은 일본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아시아전역에서 저질른 모든 범죄와 비행의 극히 일부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었다. 빙산의 일각이었다. 당장 그 기나긴 침략과 학살의 전쟁을 일으키고 수행한 최고의 지도자 아키히토 천황은 멀쩡하게 전쟁의 책임을 면하였고 아우슈비츠의 그 유명한 생체실험과 비견될 만한 이른바 741부대의 지독한 범죄는 미국정부의 우산하에 불문처리되었다. 전쟁과 식민과 점령의 가혹한 정책에 관여하였던 수많은 책임자들이 대부분 면죄부를 받고 전후 일본 건설의 주역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그들의 죄악은 추궁되지 않은 채 역사의 장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더구나 동서양의 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은 뉴伦베르크의 그림자(shadow of Nuremberg)에 물혀버린 이 재판에 대해 오랫동안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동경제판은 그야말로 20세기의 역사속에서 커다란 블랙 홀속으로 삼켜지고 말았다. 단지 몇권의 책과 글만이 동경제판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뉴伦베르크 재판에 쏟아진 관심과 연구와 보도에 비교하면 참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냉대였다. 이러한 동경제판의 망각의 가장 큰 원인은 그 재판을 진행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자신의 관심이 사라진 데에서 아울 수 있다. 유럽의 연합국들에게 일본과 극동아시아는 이미 먼 존재가 되고 있었고 중국은 날로 치열해 가는 내전 속에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던 것이다. 공산권의 팽창이 아시아 지역에서 날로 높아가고 중국 조차도 공산화 물결속에 잠긴 상태에서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the most vital asset)이 아닐 수 없었다. 미국에게 있어서는 전범처벌 등 과거에 대한 짐작보다는 강력한 일본의 건설이 그 물결에 대한 확실한 방파제였던 것이다.

2. 동경제판의 준비

1) 항복 이전과 그 직후의 전범처리 논의

전쟁 상태에 돌입한 일본에 대하여 당초 연합국 당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문명국가의 행동과 국제법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기대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연합국들은 여러차례 경고를 발하기 시작하였다. 1942년 1월 영국 런던에서 마련된 전쟁범죄의 처벌에 대한 연합국 선언(Inter-Allied Declaration on Punishment for War Crimes)에 이어 최초의 대일본 경고가 있었다. 그 회의의 옵저버였던 운즈 킹(Wunz King)은 중국이 전쟁범죄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이 추궁되도록 한다는 다짐을 하였다. 1942년 8월 21일,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보다 명확한 경고를 했다. 미국은 추축국들에 의하여 벌어진 전쟁범죄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장차 이루어질 기소에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야만적 범죄에 관련된 정보와 증거가 적절히 이용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1943년 10월 30일 모스크바 선언은 가해자들이 그 범죄가 행해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국가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임을 다짐하였다. 또한 범행이 특별한 지역적 연고를 가지지 않은 주요 전범들의 경우에는 연합국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이 선언에 포함되어 있었다. 동경제판이나 뉴伦베르크 재판이 후자의 언급에 의해 구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의 전쟁이 막바지로 다가서면서 이러한 전범처벌의 의지는 더욱 확고히,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바탕 죽음의 행진(Bataan Death March)에 관한 상세한 소식이 전해진 1944년 1월 미국무성 협장관과 영국의 에덴 외무장관이 동시에 책임자의 처벌을 경고했다. 프랑스의 국민해방위원회 수반인 드골 장군도 1945년 5월 프랑스인과 인도 차이나인들을 학대하는 어떠한 일본인도 전범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945년 6월 스위스 정부를 통하여 미국은 연합군 포로의 학살을 허용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일본에게 통보하였다.

가장 중요한 논의는 역시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이었다. 미국, 영국, 중국, 그리고 소련은 일본인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노예화되거나 멸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로에 대해 가해진 학대를 포함하여 모든 전쟁범죄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비록 이 조항은 10개의 요구조건 가운데 마지막으로 있었지만 일본의 전쟁 지도자들에게는 가장 심각한 요구조건으로 받아들여졌다.

1942년 12월 미국과 영국 사이의 합의에 기초하여 유엔전범위원회(UNWCC, UN War Crimes Commission)가 1943년 10월 생겨났다. 16개국으로 조직된 이 위원회는 연합국의 전범 처리에 필수적인 기구였다. 사실조사를 으뜸가는 임무로 삼고 있던 이 위원회는 수십개의 조사단을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파견하였다. 연합국에 의하여 해방된 지역에 파견되어 조사활동을 벌인 이들은 증거의 수집, 증인의 행방, 원주민의 인터뷰, 석방된 포로의 진술등을 채취했다. 1944년 5월 신설된 중경소위원회(Chungking Sub-Commission)는 중국의 王寵惠를 위원장으로 하여 중국에서의 전범용의자 목록을 작성하는데 주력

하였다. 1945년 8월 25일 유엔전범위원회는 일본의 전범용의자들이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유엔이 이들을 파악한 내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였다. 이들 가운데에는 정부, 군부, 재정 분야의 주요인사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이들의 체포, 재판은 이제 필지의 사실이 되었다. 한편 유엔 전범위원회는 같은해 8월 28일 일본의 전범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이 권고안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 중앙전범기구(Central War Crimes Agency)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미국은 이러한 기구 대신에 연합군최고사령관의 권한으로 넘김으로써 미국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고 말았다. 실제 이 제안은 광범하고도 지속적인 전법재판을 실시할 구상을 담고 있었다.

- 1) 일본 영토안에서 계획되거나 지시되거나 범해진 모든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일
- 2) 그 어느 곳에서 범해졌던 간에 일본의 전쟁범죄와 관련하여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일
- 3) 발견된 전쟁범죄의 증거와 아직 유엔의 전범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범해진 전쟁범죄의 증거를 위 유엔의 전범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전달하는 일
- 4) 유엔의 어느 국가나 국제군사재판소에 의해 확인되거나 수배되거나 재판을 받은 모든 일본 전범의 명단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일
- 5) 어떤 정부나 기관에 의하여 확보된 모든 증거를 보내야 하는 중앙 증거센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
- 6) 이 기관, 유엔 전범위원회, 그 소위원회, 또는 유엔의 어느 정부에 의해서도 발견되는 일본 전범의 이름의 확인과 체포를 준비하는 일
- 7) 확인된 모든 전범의 이름을 유엔의 전범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통보하는 일
- 8) 일본 전범을 요청하는 국가에 인도하는 일. 요청국가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이 기관이 인도의 조건을 결정한다.
- 9) 일본 전법문제에 관하여 유엔 전범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해당 정부와 협력하는 일
- 10) 전법에 관한 모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하고 각국의 전범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일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 조인과 더불어 일본정부는 프로답선언을 수용하였다.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연합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Far Eastern Commission)가 설치되었다. 미국은 이 극동위원회와 연합군최고사령부등에 암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일본 점령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사실상 주도하였다. 대일 점령정책의 목표는 일본에서의 탈군사화와 민주화에 있었다. 전법처리는 바로 이러한 점령목표와 맞닿아 있었다.

그러나 일본점령정책은 그 시작에서 끝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점령군의 대부분을 차지한 미국의 입김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만하였다. 따라서 전법의 처리를 위한 준비도 미국에 의하여 초기부터 기획되고 있었다. 미국은 국무성·전쟁성·해군성 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는 9월초에 이미 전법정책을 마련하여 맥아더에게 전달하였던 것이다. 이 정책 속에는 중일전쟁과 나아가 태평양 전쟁의 계기가 된 1931년 9월 18일 Mukden(Mukden)사건 이후의 전법용의자들의 구금과 천황에 대한 불구금 원칙이 담겨 있었다.

(2) 전법용의자들의 검거와 구금

전법들에 대한 재판은 기정사실이었고 따라서 이들의 신병확보는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점령군이 확고히 자리를 잡고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완료하기 전에 전법용의자를 수배하거나 체포에 나서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다. 맥아더 사령관이 전쟁범죄 용의자 체포를 명한 것이 1945년 9월 11일이었다.

그 당시의 명단은 39명.

東條英機, 東郷茂徳, 鳩田繁太郎, 賀屋興宣, 岸信介, 寺島健, 岩村通世, 橋田邦彦(자살), 井野硕哉, 小泉親彦, 鈴木貞一, 本間雅晴, 黒田重徳, 村田省藏, 長兵影, 太田清一, 테이 몬 박사(주일 버마대사), 호세 라우렐(필리핀 대통령), 비루가스(주일 필리핀 무관), 아키노(필리핀 국민호의장), 하인리히 스타마(주일 독일대사), 그레치마(독대사관 육군무관), 우카탄 위치트(주일 타이대사)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진주만공격 당시의 내각 각료, 필리핀 군관계자, 일본내 포로수용소 관계자들이었고 외국인도 일부 체포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즉 동경라디오로부터 국제전파를 방송한 자, 주일독일대사관 관계자, 이른바 대동아제국인 버마, 타이, 필리핀등의 주일수뇌부등이 체포대상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3명, 호주인 2명, 네덜란드, 버마, 타이, 미국인등이 각각 1명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으뜸가는 전범은 東條英機, 그 사람이었다. 그는 전쟁중 포로가 되느니 자살하라고 가르킨 가혹한 군인이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폐전의 소식을 듣고 자살한 마당에 최고의 전범으로 체포가 예상되었던 그가 그대로 잡혀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다. 드디어 그가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자살에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채 미군의 체포와 긴 재판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9월 12일 필리핀의 주일대사 비루가스가 미국 현병에게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같은 날 오후 東條의 해군에서의 분신이었던 鳩田繁太郎 해군대장이 연합국 군인들에게 역시 체포되었다. No.2의 전범이었다. 같은 시간 제1군 총사령관으로서 본토방위의 책임자였던 杉山이 자살했다. 체포명령을 받은 전법용의자들이 차례로 미제8군현병대사령부에 출두하였다.

체포의 선풍이 물아닥치자 당시의 허가시쿠니 항복내각은 구금 명령권을 일본법원에 주기를 SCAP에게 요청하였고 일부 언론 역시 일본정서를 감안하여 그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사령부가 전법체포를 지원시키고 있다는 연합국 언론의 비판과 압력에 추가구금에 나서게 된다.

이리하여 9월 19일 연합군사령부는 다시 11명의 전범의 체포를 명령하였다.

荒木貞夫, 本庄繁, 麻生繁, 小磯國昭, 久原房之助, 松岡洋右, 易生能久, 松井石根, 真崎甚三郎, 南次郎, 白鳥敏夫등이다. 추밀원 고문이자 봉천·만주사변을 주도한 육군대장 本庄繁 대장은 20일 오전 자결하였다. 나머지 사람들은 차례로 築鶴(쓰가모)형무소로 구금되었다.

11월에 이르러 유엔전법위원회는 두 건의 전법용의자명단을 맥아더에게 전달하였다. 여기에는 관동군의 악명높은 7명의 장군과 3명의 전직 수상을 포함하여 20명이 넘는 용의자들이 들어 있었다. 사령부내에서 가장 관심과 논쟁을 일으켰던 사람은 후미마로 코노에 왕자였다. 그는 3번의 수상직을 역임하였지만 전후 일본헌법기초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등 평화의 왕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투철한 반공노선을 견지하고 있던 그의 전법용의자 포함은 미국이나 맥아더로서는 당황스런 일이었다. 그러나 맥아더는 전법용의자로 거론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았다.

논쟁이 거듭되는 가운데 12월 2일 또다시 59명에 대한 체포명령이 떨어졌다. 72세의 황족의 몸이었던 萩本宮守正王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황족으로서는 최초의 체포였다. 그 명단과 악력은 다음과 같다.

12월 6일에는 고노에 왕자와 천황의 가장 중요한 측근이었던 코이치 키도(木戸幸一)가 드디어 구금 명령을 받았다. 이것은

천황에게는 두려운 일이었다. 이를후인 12월 28일 히로히토는 맥아더를 방문하여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이미 천황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고노에는 결국 자결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미군 진주 이래 2-3개월 사이에 100여명의 전범용의자가 체포되었다. 그러나 동경에서의 A급전범자 용의자를 대한 구금이 신중하고도 느릿느릿 진행되는 동안 과거의 대동아공영권에 속했던 곳곳에서 B.C급전법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마닐라에서는 말레이의 호랑이로 이름을 날렸던 토모유키 야마시타 대장이 이미 1945년 10월 29일 기소가 된 상태로 물고간 마사하루 흄마장군이 다른 193명의 일본군인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한편 요코하마에서는 동경전법재판이 열리기 전에 하위급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B.C급전법으로 재판받기 시작하였다. 854명이 요코하마에서 재판받았고 그 가운데 51명이 처형되었다.

(3) 전범처리를 위한 근거, 기구등의 마련

가. 연합군최고사령부내의 기관

주요 일본전법의 재판을 위한 군사재판소의 설치를 위한 조치는 항복 직후 곧바로 시작되었다. 미국 합참본부(JSC)는 맥아더 최고사령부에 1945년 9월 22일 일본의 전범용의자의 기소와 재판소 설치와 관련한 상세한 지시를 내렸다. 일본의 항복 직후 연합국최고사령부 법부국(SCAP Legal Section)은 주요 전범의 파악 작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작업이 전적으로 미국의 손에서 진행되는 동안 다른 연합국들은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이었다. 미국과 영국, 중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연합국최고사령관을 자문하기 위한 극동위원회(The Far Eastern Commission)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1945년 12월 27일에 이르러서였다. 당초 항복문서에 서명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 중국 외에도 필리핀과 인도가 추가되어 11개국이 극동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또한 항복문서의 실행을 위하여 대일본 연합국 이사회(The Allied Council for Japan)도 함께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국의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되지는 않았다. 일본에서의 점령정책은 거의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로 기획되고 수행되었다. 연합국들이 국제검사국과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 검찰관과 판사를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미국의 둘러리를 서는 것에 불과하였다. 극동위원회에서 미국과 소련, 미국과 필리핀 및 중국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과 의견 다툼은 결국 이 기구의 파산을 초래하고 말았다. 뉴른베르크 재판이 4대 연합국의 완전한 합의와 조정의 산물이라면 동경재판은 미국의 단독 작품이었다.

나. 국제검사국의 설치와 전용, 전법수사

1945년 11월 30일 트루만 대통령은 조셉 배리 키난(Joseph Berry Keenan)을 일본인 전법재판의 수석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동경에 나타난 그는 곧바로 전법들의 수사와 기소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키난과 그의 보좌관이 법정의 규모와 기소에 참여할 연합국의 숫자, 기소할 혐의의 요지등에 관하여 아무런 방침이나 구상이 없이 그들의 직무를 시작하였던 것은 분명한 일이다. 연합국으로부터 파견된 수십명의 검찰관을 이끌은 키난은 동경재판 내내 화제를 뿐이고 다녔다. 동경재판에 관여한 사람들이 대체로 키난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역사적인 재판의 수석검찰관의 직책에 맞는 자질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특히 그가 알콜중독자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상원의원의 지렛대로 그 직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었다.

12월 8일 최고사령부에 설치된 국제검사국(International Prosecution Section, IPC)은 개별적 전범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였다. 최초의 국제검사국 팀은 미국 법무성에서 차출된 22명의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3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키난은 수석검찰관이었으며 연합국에서 파견된 검찰관들은 단순한 보조 검찰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은 미국의 다른 검찰관보다 한 수 위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명단과 직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Arthur S.Comyns-Carr. 영국 의회 의원. 지도적인 바리스터
- * Hsiang Che-chun. 상해고등법원 검사장. 전 중국 대법원 소속 검사. 국제법 전공

* W.G.Frederick Borgerhoff-Mulder. 헤이그 특별전법재판소 판사

* Robert L.Oneto. 프랑스 법무장관. 베르사이유 특별법원의 수석검찰관으로서 나치와 비수 전범자와 부역자의 재판에 참여

* Alan Mansfield. 오스트렐리아 퀸스랜드 대법원의 판사. 뉴기니아의 일본전범 수사.

* Brigadier Henry Nolan. 캐나다 육군법무차감.

* Ronald Quilliam. 전 뉴질랜드 대학 형법학 교수. 뉴질랜드 육군 군무국장.

* S.A. Golunsky. 모스크바 법학원 및 소련 적군법학아카데미 교수

그러나 전범 용의자들의 확인, 소재파악, 체포, 적확한 증거의 수집등은 손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미군의 상륙 전에 많은 일본 군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의 인멸과 조작을 완료한 뒤였던 것이다. 일본 천황의 항복 방송부터 미군의 점령에 이르는 기간동안 이치가야 언덕에 자리잡고 있던 전쟁성에는 밤낮으로 수천의 문서들이 불탔다고 한다. 육군과 해군 주둔지, 현병대 본부, 비밀경찰등 일본제국의 전역에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인멸된 증거 속에는 내각회의, 어전회의등 전쟁수행을 위한 각종 회의자료, 필리핀과 동남아 침공에 관련된 모든 명령과 계획, 만주와 중국에서의 전쟁에 관련된 문서등이 포함되었다. 심지어 주요 지휘관들의 개인적 서신이나 일기등 집에 보관된 문서조차 파기하도록 하는 지시도 있었다. 때로는 연합국의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기 위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들조차 적지 않았다.

국제검사국의 수석수사관으로 임명된 미국 육군 중령 Ben Sackett는 당초 주요 전범용의자들에 대한 협의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수집되어 있지 않다고 국비 메모를 통하여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초의 이러한 황무지 상태에서 조사의 시작과 더불어 외의의 자료들이 수확되기도 하였다. 樞密院 의사록이라든가 木戸日記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특히 키도의 구금과 더불어 제공된 그의 방대한 일기는 그야말로 기소의 살아 있는 바이블이며 향후 모든 조사의 주요 열쇠가 되었다. 이 일기는 1930년 1월 1일부터 1945년 12월 15일까지 계속되면서 内府秘書官長, 内大臣으로서 그가 목도한 일본의 거의 모든 정치·군사·외교적 결정의 과정과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구금된 전범용의자들의 訴聞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개전을 반대하였던 정치인과 군인들도 비공개 자료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이미 구금된 전범용의자들과 책임을 면하려는 비구금 참고인들의 변명은 대체로 다른 용의자들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였다.

다. 재판소현장의 공포

이제 재판을 위한 재판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였다. 재판소의 현장이 1946년 1월 19일 연합군사령부의 일반명령으로 공포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동경제판의 근거가 되었다. 이 현장의 권원은 일본의 연합국에 대한 항복선언과 거기에서 수용되고 있는 포츠담선언에 있다. 포츠담선언이 전범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미 본대로이다. 극동에 있어서의 중대전쟁범죄인의 공정하고도 신속한 심리 및 처벌을 위해 마련된 이 현장은 제1장은 재판소의 구성, 제2장은 관할 및 일반규정을, 제3장은 피고인에 대한 심리, 제4장은 재판소의 권한 및 심리의 집행, 제5장은 유죄 무죄의 판결과 형의 선고를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법률적 및 절차적 규정은 이 현장의 부속문서인 재판절차규칙, 기소의 유죄항목 내용등에 담겨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의 문제였다. 재판소가 취급할 수 있는 범죄는 평화에 대한 죄(Crimes Against Peace), 전쟁법규 또는 관습법에 위반한 죄, 인도에 대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의 세가지였다(현장 제5조). 평화에 대한 죄는 침략전쟁 혹은 국제법, 조약, 협정 또는 보장에 위반한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수행 혹은 위각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계획 또는 음모에의 참가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통례의 전쟁범죄(Conventional War Crimes)는 전쟁법규 또는 전쟁관례의 위반으로 이루어진다.

세계의인도에 대한 죄는 전전 또는 전시중 민간에 대하여 행해진 살륙, 섬멸, 노예적 혹사, 추방 기타 비인도적 행위 혹은 범행지의 국내법위반인지 여부를 불문한 본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죄의 수행으로서 혹은 이것에 관련하여 행해진 정치적 또는 인종적 이유에 기한 박해가 해당된다.

통례의 전쟁범죄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적 규범과 처벌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대한 죄는 2차세계대전 이후에 확대된 전쟁범죄의 유형이다. 평화에 대한 죄는 침략전쟁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판단이 개재되기 마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폐전에 따른 정치적 보복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았다. 다만 인도에 대한 죄는 종래의 형별규범에 비추어서도 죄가 되는 것들을 인도에 대한 죄목의 이름하에 통합하여 개념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뉴른베르크 재판이나 동경제판을 비판하는 견해는 주로 평화에 대한 죄를 적용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

전쟁범죄인의 조사와 소추를 위하여 연합국최고사령관은 수석검찰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었던 각 연합국은 수석검찰관을 보좌하기 위한 참여검찰관 1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장 제8조).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재판부가 변호인을 기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은 방어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소환, 신문할 권리가 가졌다(현장 제9조). 재판판은 항복문서의 연서국(連署圖)이 제출한 사람 가운데서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임명한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재판판으로 구성하고(현장 제2조) 그 가운데 재판장을 역시 최고사령관이 임명한다(제3조). 전 재판판의 과반수의 출석을 정족수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유죄 무죄의 결정 및 형의 양정을 포함한 재판소의 일체의 결정과 판결에는 출석한 재판판의 과반수에 의하여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한다(제4조).

이 현장의 내용은 뉴른베르크의 그것과 거의 다른 것이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SCAP 법무국과 국제검사국 키난 팀에 의하여 기초된 이 현장은 맥아더로 하여금 재판소 판사와 재판장을 임명할 막강한 권한을 주었다. 연합국사령관은 항복조항의 이행을 책임지고 있었고 그 이행사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전범에 대한 처벌이었기 때문이었다.

(4) 일본정부측의 대응

가. 自主裁判工作

일본정부로서도 일단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이상 전범처벌의 문제는 기정사실이 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 공관들을 통하여 나치전범재판의 관련자료를 입수하면서 향후 일본에서의 전범재판의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1945년 8월 22일 이미 일본정부는 종전처리회의를 설치하였으며 같은해 9월 22일자 회의에서는 재판이 연합국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라도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되 먼저 자주재판을 열어 약간의 자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그 결과를 연합국측에 통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군법회의를 열어 처벌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성명 일본측군법회의 판결일 죄명 형량

M육군소좌 대만군임시군법회의 1945.11.5 직권남용 금고10월

N육군대위 대만군임시군법회의 1945.11.5 직권남용 금고11월

K육군대위 제38군임시군법회의 1945.9.11 살인 징역13년

H육군주계소위 제38군임시군법회의 1945.9.11 살인등 징역15년

T육군주계소위 제38군임시군법회의 1945.9.11 살인 징역 8년

육군헌병조장 제38군임시군법회의 1945.9.11 살인방조 징역 3년

B해군기관병조장 제11근거지대임시

군법회의

1945.9.14 살인 징역 7년

Y육군헌병조장 제2군임시군법회의 1946.3.27 살인약탈 종신

종신징역까지 선고되었으나 그 죄명에 비추어보면 결코 무거운 것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속하고도 약삭빠른 조치는 결코 일본의 자체 반성과 진정한 처벌의지에서 나왔다가 보다는 교묘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즉, 일본정부로서 연합국에 먼저 처벌을 하면 일사부재리의 법원칙에 따라 처벌이 어려울 뿐더러 일본정부가 생색을 내어 연합국의 전범처벌의지를 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위의 명단을 보아서 알 수 있지만 일본정부의 이같은 뜻은 전혀 연합국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송사리 몇마리를 잡는 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미군의 짐령후 오래지 않아 전범용의자들의 검거에 나선 것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맥아더 사령부와 이른바 자주재판구상에 관하여 계속 논의를 추진하였으나 맥아더 사령부가 거부함으로써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오히려 이들은 나중에 B.C급전범재판에 회부되어 자국에 의해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이 보다 쉽게 입증되어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히로히토는 자신의 운명도 운명이려니와 전범 처벌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보좌진들이 히로히토로 하여금 전범재판을 일본의 손에 남겨주도록 요구하도록 하였으나 히로히토는 이에 반대하였다. 책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은 특히 국가에 충직한 사람들인데 천황의 이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는가라는 담담한 히로히토의 질문에 뉴른베르크 식의 전범재판을 구상하고 있던 맥아더의 의중을 알고 있던 전후 최초의 내각 수상이었던 東久邇는 전혀 대안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일본의 자주재판의 의지는 그 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시데하라 내각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한 문서는 외국과의 전쟁으로 히로히토의 평화의지를 거스른 사람들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가하려고 한 재판계획을 담고 있었다. 국민감정의 안정과 국가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국가윤리 수립을 위한 긴급 칙령이라는 제목의 초고는 이같은 계획의 초안을 만들고 있으나 결국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하였다. 1946년 3월 연합국사령부가 일본정부에 의한 전범의 조사나 재판을 완전히 금지함으로써 자주재판의 구상은 완전히 끝났다.

나. 전범 보호 위해 광분

—변론방침 정하고 譲人宿까지 만들어

사태가 거스르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안 일본정부는 그다음으로 이를 전범자들을 위한 변호를 위해 나선다. 1945년 10월 23일 A급전범에 대응한 방침을 보여주는 소위 戰犯人 譲護方針은 다음과 같이 근본목적과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다.

<근본목적>

- 1.至尊(천황)에게 누가 미치도록 하지 않는 것
- 2.제국으로서의 피해를 극소히 방지하는 것
- 3.개인의 피해를 극소히 방지하는 것

<기본방침>

- 1.국제법상 소위 전범처벌의 불합리한 것을 선명히 한다
- 2.제국현법상 지존에 관계가 없는 것을 선명히 한다.
- 3.기왕의 국제정세에 의해 제국은 개전이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선명히 한다.
- 4.소위 전범의 공적 사적 사정을 명확히 하고 범죄사실을 부정 또는 변호한다.

이어서 1945년 11월 5일 종전연락간사회의 이름으로 전쟁책임등에 관한 응답요령을 만들어 체포 또는 신문시에 대비하여 답변의 요령을 제공하였다. 이 요령은 통칙과 세칙으로 분류하여 천황과 일제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연합국의 국제검사단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본군은 연합국측의 소환 또는 방문을 받은 경우의 행동 및 응접요령, 포로취급관계연합측신문에 대한 응답요령등에 관한 건등을 하달하여 그에 대비케 하는등 주도면밀하게 대응하였다. 뿐만아니라 관방임시조사부를 설치하고 변호자료연구반을 조직하는등 연합국의 기소에 대한 자료수집과 대응논리등을 연구 제공하는 부서를 두어 기소된 전범들의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이들은 영미법에 관한 연구를 거듭하는가 하면 중인숙(謙人宿)까지 만들어 중인의 전술요령까지 훈련시키는 등마치 전투준비를 하는 군대와 같은 일사불란한 체계로 들어갔다.

(5) 연합국의 최초의 전범재판

동경제재판의 기소에 앞서 열린 전범재판도 있었다. 이른바 土屋재판이 그것이다. 피고인 土屋辰雄은 전쟁 중 만도의 일본군 포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수용소의 포로들을 구타하여 사망하게 하는등 학대행위로 전범 제1호로 기소된 土屋은 미제8군의 장교들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사건에서 적용죄명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군사재판으로서의 재판부의 관할권에 대한 적법성 시비등에 관하여 논란이 벌어졌고 이것은 동경제재판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재판은 동경제재판의 예행연습 또는 리허설이라고 불렸다.

3. 동경제재판의 진행

(1) 재판의 당사자

가. 피고인석의 면면들

국제검사단에 의해 기소된 사람은 총 28명이었다. 일본 제국을 주름잡던 주인공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동경제재판에 얼굴을 드러냈다. 19명은 직업군인이었고 나머지 9명이 민간인이었다. 4명의 전직 수상, 3명의 외상, 4명의 육상, 2명의 전직 해군상, 6명의 장관, 2명의 대사, 3명의 재계 지도자, 1명의 귀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28명의 면면과 간단한 약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끝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가운데 국제연맹 탈퇴의 주역이었으며 1930-40년대의 일본 외교를 이끌었던 마츠오카가 6월 3일 결핵으로 입원하였고 그로부터 한달이 채 되지 않아 사망하였던 것이다. 또한 개정 초기 법정에서 토조를 떠려 소란을 일으켰던 슈메이 오카와는 정신질환으로 밝혀져 재판을 받지 않았으나 그의 혐의는 동경제재판이 모두 끝나면서 함께 취하되었다. 그러나 그의 정신질환이 진실인지 가장인지는 지금까지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체포된 다수의 사람들,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전범으로서의 혐의가 두어지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28명이 최종적으로 기소된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한 뒤였다. 전범체포 리스트는 이미 보았던대로 유엔전범위원회의 것을 비롯하여 영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가 각각 자국이 판단한 것을 기초로 하여 제출한 것들이 있었다. 당시 국제검사국의 검사들이 조사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Carr의 집행위원회가 기소자를 선별하였다. 키난은 피고인의 선별이 진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 당시 검사들의 다수결 투표가 동원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피고인들은 전체 연합국의 이름으로 기소되었고 뉴른베르크전범재판처럼 연합국에게 개별적으로 기소할 사람이 할당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기소자의 선별과정에서 이루어진 토론과 논쟁은 남아 있지 않아 그 상세한 경위는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나. 판사들의 구성

재판소의 현장이 마련되고 전범용의자들이 체포되었으며 국제검사국이 수사를 마무리해 가면서 이제 관심은 판사들의 도착에 쏠렸다. 1946년 2월 15일 항복문서에 조인한 9개국이 국동국제군재판소에 참여할 판사를 파견하였으며 이들은 전원 맥아더에 의하여 그대로 임명되었다.

당초 키난은 미국측의 판사로서 Willis Smith 미국변호사협회 회장이나 하버드 법대 Roscoe Pound 학장을 임명하도록 추천하였다. 이 정도는 되어야 국제적 명성이나 평판에 어울리는 재판소 구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막상 임명된 것은 메사추세츠 주대법원장 John P.Higgins 였다. 단지 일개 주의 대법원장으로서 다른 연합국의 피임명자와 격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키난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의 임명은 강행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예상대로 퀸스랜드 대법원장이던 William Webb을 임명하였다. 그는 2월 20일 맥아더에 의해 국동국제군

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당시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군대에 대한 일본군의 가혹행위를 수사하는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판사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재판의 초기에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Webb 뿐만 아니라 일본군 포로였던 필리핀 판사 Delfin Jaranilla에 대해서도 부적격 항변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소련에서 추천한 사람은 레닌의 불쉐비키 혁명의 과정에서 사법위원장을 지냈던 I.M.Zarayev였다. 적군의 소장과 적군의 법학군사아카데미 원장을 지낸 사람이기도 하였다. 중국은 역시 소장과 중국전법재판소장을 지낸 Shih Mei-yu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2천명이 넘는 중국내 일본 전범들을 처리하기에도 바빴던 그는 결코 동경에 나타나지 못하였고 그대신 파견된 사람이 중국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 Mei Ju-ao였다. 네덜란드의 B.V.A Rolling 역시 국제적 명사의 한 사람이었다. 유트레히트 대학의 교수출신이었다. 뉴질랜드에서는 대법원 판사였던 Harvey Northcroft가 임명되었다. 영국의 Lord Patrick은 스코틀랜드 최고법원 판사였다. 프랑스에서는 당초 Henri Reimburger를 파견하였으나 곧 사임하고 프랑스의 여러 법원에서 나치 담당 검사를 지낸 Henri Bernard가 임명되었다.

중국인 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유럽 중심의 서양사람이었다. 여기에 필리핀의 Delfin Jaranilla와 인도의 Radhabinod Pal이 추가되었다. 필리핀과 인도는 항복문서 조인국은 아니었지만 전전의 종주국이었던 미국과 영국의 강력한 회방에 의해 뒤늦게 판사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인도와 달리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았던 베마가 대표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필리핀과 인도는 그 당시 아직 독립국의 지위를 확립하지 못하였음에도 대표를 낼 지위를 부여받았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전쟁 중 비워정권에 의하여 통치되었고 독일의 요청에 의해 일본군의 전진 기지로 사용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재판 참여를 주장하기가 어려웠다. 판사들의 출신국별로 보면 모두 7개국의 영미법계 국가에서 암도적으로 많았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인도, 필리핀, 뉴질랜드, 미국, 영국이 그러하였다. 연합국 가운데서도 전쟁에 직접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던 나라들은 제외되었다. 1922년의 9개국조약의 당사자였던 포루투갈이나 벨기에는 이 행사에 전혀 초청받지 못했다. 평화회복과 연합국 포로의 고통 경감에 큰 노력을 기울였던 스웨덴, 스위스, 아르헨티나 역시 배제되었다.

다. 검사와 변호인

동경제판의 검사측은 당연히 수사를 담당하였던 국제검사국 소속의 검사들이 그대로 맡았다. 피고인들을 위한 변호인 선임과 그 활동의 문제는 SCAP이나 국제검사단 측에서 별로 준비되지 못한 것이었다. 구금된 전범들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가 들어 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마침내 변호인단(Defense Division)이 꾸려진 것은 1946년 4월 5일이었다. 재판소의 사무국장 Vern Walbridge가 이날 변호인단이 향후 있게 될 재판절차에서 변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던 것이다.

피고인들을 위한 변론에 핵심이었던 일본인은 세사람이었다. 종전 전에 일본 중의원을 8차례나 역임한 이치로 키요세(清瀬一郎)는 가장 우수한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꼽혔다. 그 자신이 국우인사로 분류되어 SCAP에 의해서 숙청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켄조 타카야나기는 하버드 법대에서 로스코 파운드 아래에서 법학을 전공했던 학자로서 변론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변호인단의 3인방(trio) 가운데 또한 사람들은 명치대학 총장이자 유명한 법률가였던 소메이 우자와였다. 그는 변호인단의 단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판사들의 대부분이 영미법계 출신이어서 일본인 변호인만으로서는 재판 절차와 변론의 내용에 있어서 대응하기가 부족하였다. 일본 정부는 1946년 2월 14일 피고인들을 위해 영국과 미국의 변호사들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법정변호사(바리스터)는 원래 외국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변호사들만이 변론에 참여하게 되었다. 허테키 토조의 경우 자신은 미국변호사들이 천황의 전쟁책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도움을 받겠다고 하여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다. 이들 미국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위하여 혼신적인 변론을 하였음은 일본 변호인들과 가족들도 인정하는 바였다. 특히 일본인 변호사들은 국가의 명예와 천황의 보호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변호사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고객의 이익에 더욱 열중이었다. 이러한 점이 일본인, 미국인 변호사간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들에 대한 변론 비용은 미국정부의 예산에서 지출되었다. 국선변호인이었던 셈이다.

(2) 기소의 제기와 그 요지

당시 쓰가모형무소안에 구금되어 있던 80명 이상의 A급 전범용의자 가운데 누구를 기소할 지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키난이 행사하였지만 국제검사단의 이사회가 논의와 권고를 하게 되어 있었다. 이사회는 우선 평화에 대한 죄, 즉 침략전쟁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한 적이 없는 사람은 기소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음으로 기소대상은 반드시 정체결정자로서 책임이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또한 A급 전범으로 기소되는 사람은 15인 이내로 하자고 하였으나 연합국 상호간의 역학관계로 각국이 2명씩의 용의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 합의되었다. 1946년 4월 중순경 이사회는 당초 약속한 22명 보다 4명이 더 많은 26명의 기소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뒤늦게 도착한 소련 대표단의 요청으로 그 당시까지 아직 구금되지도 않았던 전 외무장관이자 주소 대사였던 시게마츠와 1939년부터 1944년까지 관동군 사령관을 지냈던 우메즈 장군을 그 기소자 명단에 포함시켜 총 28명이 되었다.

이라하여 국제검사단은 5개월여의 수사의 결정(結晶)으로서 기소장을 작성하여 4월 29일, 종전 후 최초로 맞는 천장절(天長節)에 발표하였다. 그 기소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1928년 1월 1일부터 1945년까지 사이에 일본의 대내, 대외정책은 범죄적 군벌에 의해 지배되고 지도되었다.

① 대내정책: 일본국민에 조직적으로 민족적 우월성의 사상을 심어 정치적으로 일본의 의회제도에 나치 혹은 파시스트당과 같은 조직을 도입하여 이것을 침략의 도구화하였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일본의 자원을 대부분 전쟁목적에 동원하였다. 또한 정부에 대한 육해군의 재압을 강화하고 익찬회를 창설, 국가주의적 팽창정책을 가르치고 신문 라디오에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이로써 국민의 여론을 정신적으로 침략전쟁에 이용하였다.

② 대외정책: 나치독일, 파시스트 이태리의 침략자를 동원하여 침략국가에 의한 세계지배와 착취획득을 위하여 공동모의를 행하고 평화국가들에 해하여 국제법, 조약에 위배하여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하고 실행하였다.

2. 세계분쟁을 야기하고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며 한편으로 포로학대등의 전시법규위반 및 일반 민간에 대한 잔학행위를 감행하였다.

기소장은 범죄를 제1류 평화에 대한 죄, 제2류 살인, 제3류 통례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로 3분하고 있다. 공소사실로서 55개 항목을 설정하고 부속서 A에 이러한 공소사실을 정당화하는 주요한 사실을 10개 절에 걸쳐 例記하고 있다. 55개 공소사실 가운데 36개가 평화에 대한 죄, 16개가 살인, 3개가 인도에 대한 죄 또는 전통적 전쟁범죄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A급 전범은 대체로 평화에 대한 죄가 암도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부속서 B,C,D에서는 일본이 침략하였던 조약의 주요한 것, 일본이 위반한 공식의 보장 또는 전쟁법규를 예거하고 있다. 부속서 E에서 3종류의 범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피고의 약력에 의하여 설시하고 있다. 21명의 피고인이 1931년의 만주침략을 시작으로 한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기획, 시작하였던 혐의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었다. 오카와와 시라토리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헤이그와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전통적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가 부가되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피고인에 대해 단독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미국과 영국, 소련에 대해 침략전쟁을 기획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3) 재판의 개정

드디어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946년 5월 3일 동경제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른 아침부터 방청객들은 자리를 잡기 위하여 법정으로 쓰이게 될 이치가야 전 전쟁성 건물로 몰려들었다. 4개월 동안이나 단장된 이 법정에는 일반 방청객석 660개를 비롯한 1천개의 좌석이 배치되었고 각 좌석에는 통역장치가 설치되었다. 영어와 일어, 러시아어 세 언어의 통역이 이루어졌다.

28명 가운데 26명이 법정에 나타났다. 스가모 형무소에서 구금이래 각기 고립된 방에서 오늘의 재판을 기다리며 고립되어 지냈던 것이다. 이들은 이미 위풍당당한 모습을 잊어버린 노인들에 다름 아니었다. 군국일본의 재정통이었던 오키나리 카야는 체중이 현저히 줄어들어 자신이 옷이 두배나 커 보였으며 한때 조선의 호랑이로 불렸던 쿠니아키 코이소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 전통의상을 입고 나타난 전쟁광 쇼메이 오카와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복이거나 계급장이나 표식 없는 국민복을 입었다.

예정된 10:30을 넘겨 11:13에 재판장 Webb을 비롯한 판사들이 입장하였다. 정리의 개정선언에 이어 재판장의 간단한 개정연설이 있었다. 그는 인류의 역사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형사재판은 일찌기 없었다. 이 크나큰 과업을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사실과 법률 심리에 임할 것이다.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유죄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라고 선언하였다. 이어서 검찰의 공소장 낭독이 시작되었으나 그다음날까지 계속되었다. 파란이 일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들의 기소인부 절차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4) 심리의 전개와 쟁방의 공방

① 재판부 기피 신청

첫번째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재판부의 기피신청이었다. 재판장 Webb이 뉴기니아에서 행해진 일본군의 가혹행위를 조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판사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피고인측 변호인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잠시의 휴정기에 이루어진 결정으로 배척되었다. 재판부는 연합군최고사령관에 의해서 임명된 판사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에서였다. 뿐만 아니라 Webb 자신도 임명당시 그 문제를 고려하였으나 재판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될 수 없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후 7월 20일에는 미국측의 허긴스 판사의 사임후 대신 임명된 크레머 판사에 대한 기피가 있었다. 크레머 판사는 소장으로 일본군과 싸운 군인이다가 재판소 조례에 의하면 11인 이상 6명 이하의 판사가 열석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그동안 크레머 판사는 재판에 12번째 판사이고 증거조사는 이미 상당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직접 참여하지 않은 판사로서 재판의 공정을 위해 기피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Webb 재판장은 뉴런베르크 현장과 달리 동경제판소 조례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판사의 간접을 허용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며 사고와 질병등으로 판사의 간접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재판은 강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크레머 판사의 임명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② 관할권의 하자 주장

피고인들은 기소인부 절차에서 모두 범죄를 부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변호인들은 이 법정의 관할권 자체에 도전하였다. 변호인단의 키요세(清瀬一郎) 변호인의 주장은 독일과 달리 일본의 경우 포츠담선언에 관하여 전범처벌은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용어의 해석에 따라(in accordance with the commonly accepted understanding of that term) 이루어질 것임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용어의 해석이란 전통적 전쟁범죄일 뿐이며 평화에 대한 죄라든가 인도에 대한 죄등은 모두 전통적인 국제법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포츠담선언의 수락은 1941-1945년 전쟁의 종료를 위해 이루어졌던 것이지 1931년의 만주침략과 관련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주요 연합국의 하나인 소련은 바로 만주국을 승인했던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공소 자체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떴다.

미국측 변호인 Blakeney는 육군소령의 복장으로 일어나 재판부의 부적격과 무관할권을 다시 공격하였다. 그는 판사들이 모두 연합국 출신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법적인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다면서 왜 중립적인 국가들의 판사로 재판을 할 수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어서 전쟁은 무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이며 전주만에서 4천명이 죽은 것이 살인이라면 어떻게 하로시마는 살인이 아닌가를 반문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검사국측은 포츠담선언과 항복문서가 연합군최고사령관에게 전범재판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또한 일본을 포함하여 62개국이 서명한 1928년의 Kellogg-Briand 조약 또는 파리협정이 전쟁을 불법화시켰기 때문에 전쟁은 더이상 당사국의 절대적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만주 침략의 경우, 선전포고가 없는 하나의 사건(incident)이라고 해서 전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닐 뿐더러 전쟁이 아니라면 그 것은 수백만 중국인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전주만의 경우 선전포고 없이 이루어진 선제공격으로서 이것은 일본 자신이 당사국인 헤이그협정 위반이라는 반론이었다. 며칠이 소요된 이 치열한 논쟁은 5월 17일 재판부의 변호인측 항변의 기각으로 끝이 났다.

③ 공동모의(Conspiracy)는 있었던가

중국과 미국등 연합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수행과 세계정복의 야망은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이었다. 검찰측은 이러한 공모는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참가와 동의가 전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공모의 시작은 1928년의 만주침략으로서 만주사변->일지사변->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본침략전쟁의 발단이라는 것이 검찰의 인식이었다. 또한 일본은 1928년 체결된 파리조약, 이른바 웰로그-브리앙 부전조약의 당사자가 되었는 바 침략전쟁을 포기한 이 해 침략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은 피고인들 사이의 그러한 공모가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었다. 이러한 공동모의의 직접적 증거로 이른바 田中上奏文 또는 國策基本要綱을 제출하였다. 이 증거는 중국 대륙에서의 일본의 팽창과 무력의 중대를 꾀하고 아시아에서의 구미 세력을 축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측은 뉴런베르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독일 지도자들과는 다른 일본의 정치 구조를 내세우며 공동모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독일은 당시 일당독재의 전제주의 국가였지만 일본의 경우 히로히토가 즉위한지 3년부터 항복때까지 17년동안 16회의 내각이 교체될 정도에서 일당독재 또는 전제국가라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어느 사건 또는 특정한 침략전쟁의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라도 다른 사건 또는 전쟁에는 무관한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함으로써 공동모의설에 기반한 공소사실은 허무하다는 것이다.

④ 만주침략과 만주국 황제 溥儀의 중언

공소사실의 순서에 따라 먼저 일본의 만주침략에 대한 입증활동에 들어간 검찰은 먼저 일본 육군소장이었던 田中謙吉을 증언대에 세웠다. 그는 1928년 6월 4일의 豪作霖의 폭사사건이 관동군 참모 河本大作 대좌등 십수명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으며 1931년 9월 18일의 柳條溝 폭발사건은 만주침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일본군의 음모였음을 증언하였다. 일종의 내

부고발이었다. 만주침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등장한 것은 이밖에도 리튼보고서였다. 일본의 만주진공이 파리조약 위반인가 아니면 정당한 자위행동인가에 관하여 국제연맹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파견되어 조사를 벌인 리튼 조사단이 내놓은 보고서였다. 거의 6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난 뒤 그 결론으로 127페이지의 본문과 부속서로 이루어진 보고서를 냈던 바 만주사면의 진상을 구명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자료였다.

8월 16일은 동경제판에서 횡기적인 날이었다. 만주국 황제였던 滕頤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였던 것이다. 그는 키난 겸사의 직첩신문에서 만주국 초창기의 이면사, 청조 최후의 황제로부터 축출되어 북경, 천진, 여순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일본 관동군의 괴뢰로서 만주국 황제에 옹립될 때까지 기구한 개인사를 전술하였다. 연합국에 의하여 승인받지는 못하였지만 사실상 5族 3천만 민중의 위에 군림하였던 일국의 원수가 법정에 나타난 것은 세계 재판사상 유례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법정은 내외신 기자와 일반 방청객으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그는 법정에서 만주국 황제로 취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일본 관동군의 협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나간 수많은 칙령을 단 하나도 알고 있지 못하였고 그 당시 일어났던 만주사변, 만보산사건 등에 대해서 신문을 통한 외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증언함으로써 일본 관동군의 손아귀에 든 꼭두각시 황제였음을 확인하였다. 더구나 행동의 자유가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자유라는 말은 10년 이상 나와 관계가 없었다, 나의 처도 일본의 吉岡 중장에 의해 독살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소련의 억류중에 있던 滕頤의 신분상 연합국에 의하여 강요 또는 교사된 증언이라는 것이 변호인측의 반박이었다.

⑤ 중국침략 10년, 세기의 참극 남경사건

중일전쟁의 단초가 된 蘆溝橋에서의 일발의 총성이 중국측에 의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일본군의 도발에 의한 것이었는가가 검찰과 변호인측의 피나는 논쟁을 불렀다. 蘆溝橋 사건으로부터 시작한 일본의 중국침략은 중국인의 엄청난 피의 회생을 초래하였다. 일본은 중국측의 공격에 대한 자위였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침략에 대응한 중국의 저항일 뿐이었음을 당연한 일이었다. 10여년 계속된 중국 침략 가운데에서 가장 악명높은 사건은 역시 남경학살사건이었다.

남경의 비극을 가장 잘 증언해준 사람은 그 당시 남경대학병원에 외파의로 근무하고 있던 미국인 의사 로버트 월슨이었다. 1938년 12월 13일 일본군이 남경에 입성하였을 때는 이미 중국군의 무장은 완전히 무장해제당하였고 저항은 그쳐 있었는데 그때부터 목이 잘려나갈 뻔 한 환자, 총상을 입은 민간인들이 수없이 병원으로 실려 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수많은 중국인들을 양자강 연안에 모아 놓고 사살하고서는 강에 시체를 던져 버렸으며 자신도 중국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간당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이었다.

당시 국제위원회의 난민구조사업을 하고 있던 중국인 증인도 남경 시내 곳곳에 쌓인 시체를 5백까지 헤아리다 그만 둘 정도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또한 자신이 본 시체 가운데 남녀노소가 함께 있었으며 그 가운데 군복 착용자는 한명도 없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증언을 토대로 동경제판의 판결문은 남경사건에서 20만 이상의 중국인이 학살되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측은 당시 장개석 군대가 계릴라부대를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하여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서 민간인과의 혼동이 불가피하여 일어난 불상사라고 변명하였다. 아무튼 남경사건은 그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보도통제가 실시되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어서 동경제판을 통하여 일본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⑥ 진주만 공격과 태평양전쟁의 책임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태평양전쟁을 촉발시킨 사건이었다. 일본 국민에게도 米英擊滅의 기세를 들통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미국 국민을 대일전쟁의 의지를 끓여 세운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사실 세계 지배를 위한 결정적 승리인 것 같아 보였지만 일본 몰락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진주만을 기억하라는 미국민의 의지는 전쟁 좋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이 끝난 후에 까지 초미의 관심이었다. 일본 전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초점이 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미국연합함대사령관이었던 제임스 리차드슨 해군대장은 11월 25일 법정에서 일본은 미국과 전투를 시작한다는 명백한 경고를 사전에 통고하지 않은 채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해군에게 비밀공격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연합국최고사령부가 편찬한 조사보고서가 동시에 이 증언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측은 그 당시 수교된 통고문이 최후통첩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최후통첩의 지연은 바로 사무지연에 다툴 아니었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외무성과 해군성, 東郷 전외상과 島田 해군상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되는 부분이어서 그 진술이 엇갈리기도 하여 더욱 흥미를 끌었다.

피고인들은 미일전쟁의 개시가 당시 일본을 상대로 부과된 이른바 ABCD포위체제로 인한 국민경제의 파탄을 돌파하기 위한 자위적 전쟁이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외국으로부터의 원료 구입에 의존할 수 없는 일본에 대하여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0년 7월 2일 수출통제에 관한 대통령 포고를 내려 모든 물자의 대일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특히 석유금수조치는 일본의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변호인측은 당시 일본이 처한 곤경을 입장하기 위하여 물자동원계획 생산물확충계획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당시의 상공차관등을 증인으로 소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경제에 대한 압박이 이미 아시아 태평양 전반에 걸쳐 침략을 노골화하고 있던 일본정책에 대한 견제와 보복이었다는 점에서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었다.

⑦ 소련의 조약위반과 원자폭탄 논쟁

3월 3일의 법정에서는 프레그니 변호인을 중심으로 2개의 주요문제가 논제로 떠올랐다. 이 변호사는 먼저 부전조약을 위반한 대국으로서 영국과 소련을 예로 들고 조약위반이 곧바로 국제적 범죄로 볼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소련의 경우 일본과의 중립조약을 위반하고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에 개입하였으니 이것 역시 전쟁범죄가 아닌가라는 것이 변호인측의 질문의 요지였다. 그러나 1936년 이후 1940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나치 독일과 함께 반-코민테른 조약에 기초하여 소련에 대한 침략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1940년의 독일, 이탈리아와 일본 사이의 삼국동맹을 체결한 이후 소련과 사투를 벌이고 있던 독일에 대한 지원을 거듭함으로써 일본이 먼저 소일중립조약을 파기하였다는 것이 소련의 입장이었다.

그와 동시에 프레그니 변호사는 원자폭탄의 사용에 관한 미국의 행위를 거론하였다. 그는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군사시설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비전투원의 대량살戮을 의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헤이그 육전조약에서 정한 전통적인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웨 재판장은 연합국이 어떠한 무기를 사용하였는가는 본심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물었다. 변호인측은 잔혹한 병기로서의 원폭을 사용하여 공격당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심리되어야 하므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폭 투하 이후의 일본군의 전쟁범죄는 면책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폭을 투하한 나라가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주장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두고 두고 동경제판이 승자의 정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유력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원폭투하는 실제 일본인의 가슴 속에 원한을 남긴 것은 분명하였다. 많은 일본인이 원폭투하를 결정한 사람 역시 전범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에 처해졌어야 마땅하다고 믿고 있다. 과연 전쟁의 종말을 앞당기고 수많은 생명의 회생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주장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일본인의 항변과 같이 그것이 또 하나의 전쟁범죄인지에 관한 논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⑧ 戰場의 잔혹행위와 그 책임자

전주만 공격에 대한 입증을 마친 국제검사단은 12월 중순 이후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 전장에서 벌인 포로, 민간억류자 및 점령지 주민에 대한 일본군의 죄과를 묻기 시작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맨스필드 검찰관에 의해 지적된 이 부분은 동경법정의 가장 큰 주제 중의 하나였던 전쟁법규 및 관습법위반에 대한 A급전범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었다.

맨스필드 검찰관은 일본이 1929년 7월 27일의 제네바 적십자조약을 1942년 1월 29일 통첩에 의하여 조인하였음에도 포로들을 이러한 국제조약이 아니라 일본 자신의 武士道에 의해 처리하였다고 공박하였다. 포로들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았고 인도의 기본적 고려를 무시하는 것을 정부의 방침으로 하였기 때문에 A급 전범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싱가포르에서의 5천명의 중국인 학살 및 유럽인의 잔인한 학대, 점령지주민의 무차별 살해, 1만6천명의 연합군포로의 생명의 상실, 10만명 이상의 고통스런 노동으로 인한 죽음, 베마·타이철도 건설 중의 학대, 바탕 및 보르네오에서의 악명높은 죽음의 행진, 방카섬에서의 오스트레일리아 간호부와 시민의 대량학살, 파라원의 학살, 뉴기나아의 둘 농원의 학살, 나하에서의 2백명의 포로의 학살등 곳곳에서의 잔혹한 살해와 학대는 결코 점령군의 개인이나 일개 부대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쟁정책 결정자나 지휘관의 지시 또는 암묵적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5) 선고와 집행

① 결심과 판결의 선고

검사와 변호인측의 쌍방 주장과 입증이 대체로 끝난 1948년 2월 11부터 3월 2일까지 검찰측의 최종논고,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변호인측의 최종변론이 이어졌다. 4월 16일에는 모든 심리를 종결하였고 판결공판까지 긴 휴정을 선언하였다. 드디어 1948년 11월 4일 판결을 위해 개정되었으나 판결문을 낭독하는 데에도 1주간이나 걸렸다.

판결문은 본재판소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조례에 형식적으로 구속되어 평화에 대한 재판소 조례를 심사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전체 55개의 소인(訴因) 가운데 10개의 소인을 인정하고 있다. 나머지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거나 각하고 있다. 10개의 소인 가운데 8개는 평화에 대한 죄를 적용한 것이고 나머지 두개의 소인이 통례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가 적용되었다. 검찰측의 입증이 거의 인정되어 25인의 피고인 전원이 유죄로 선고되었다. 특히 松井石根, 重光葵 두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침략전쟁의 전반적 공동모의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긴 판결문의 낭독이 끝나고 11월 12일 오후 3시55분부터 비로서 모든 피고인에 대한 형이 선고되었다. 판결의 형량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② 소수의견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5종의 소수의견이 있었다. 다수의견에 반대한 것은 인도의 팔 판사, 프랑스의 베르나르 판사, 네덜란드의 틀링 판사의 의견이었고, 다수의견을 인정하면서 보충의견을 낸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웨 재판장, 필리핀의 자라닐라 판사 두사람이었다.

소수의견의 내용도 제각각이지만 특징적인 지적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재판소가 극동국제군사재판소조례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었다. 다수의견은 심사권이 없다고 하였으나 베르나르 판사, 팔판사 두사람은 심사권을 가진다는 견해였다. 둘째, 천황의 전쟁책임에 관한 견해 차이였다. 프랑스의 베르나르 판사는 木戸日記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태평양전쟁 개전의 주요한 책임자는 천황 히로히토인데 다른 공범자가 그 대신 처벌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논하였다. 웨 재판장도 천황의 면책은 모든 연합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천황이 면책되었다는 점은 다른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해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째, 아시아인으로부터의 관점이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인도와 필리핀 2개국의 판사가 있었는데 이 두 판사의 관점은 너무도 대척적이었다. 팔 판사는 뒤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결하였고 필리핀의 자라닐라 판사는 다수의견의 양형이 그 중대한 범죄에 비하면 너무 가볍다면서 중형을 요구하였다. 팔 판사는 원폭투하가 연합국이 범한 전쟁범죄라고 한 반면 자라닐라 판사는 그것은 정당행위였다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은 필리핀과 그렇지 않았던 인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견을 낸 것은 인도 출신 팔 판사이다. 이 의견은 법정에서 낭독되지 못하였고 연합국사령부에 의해 인쇄도 금지되어 일본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야 비로서 판결원본을 받아볼 수 있었다. 그의 소수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조례의 법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무엇이 범인か, 조례는 적정한가에 관하여 당재판소 자신이 심사할 심사권을 가진다.
2. 증거에 관한 규칙은 변호인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특히 중국관계에서 중공발표에 관한 증거수리의 제한이 지나치고 사건확대의 책임을 판단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3. 가장 중요시된 공동모의는 직접적 증거는 없고 정황증거에 의존하였다. 일본의 행동은 공동모의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고 증거는 단지 정세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 뿐이다. 태평양전쟁도 당초부터 기획한 것이라는 증거가 보여진다.
4. 통례의 전쟁범죄에 관하여 소인 제54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고, 공소사실 제55조의 임무무시는 조례의 범죄가 아니고 본법정의 관할밖이다. 제1차대전의 독일황제의 명령에 의한 무차별살인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원자폭탄 사용의 결정이다.

5. 각피고의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강하게 주장한다.

팔 판사의 견해는 대체로 뉴르베르크 재판에 대한 비판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특히 침략전쟁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단지 승자에 의해 패자에게 붙여진 레벨(a label applied by conquerors to the conquered)이라는 주장이었다. 어쨌든 이 소수의견은 전범의 무죄를 통하여 일본의 무죄를 증명해 준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것은 동시에 연합국의 재판이 승자의 정의였을 뿐이며 피고인석에 섰던 전범들은 무고한 정치적 재판의 화생이었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전후 일본국민은 팔 판사의 판결문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후 몇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하여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일본방문기간 동안 그는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이기고 영구적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아시아의 민족들에게 각성을 불러온 명예로운 나라이다. 그 나라를 내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③ 전범의 처형과 집행

위와같이 형을 선고받은 25명의 피고인들은 1주일 후인 19일까지 맥아더에게 재심판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전 피고인의 뜻에 따라 탄원조의 내용 보다는 판결중의 사실인정의 오류라든가 법에 관한 주장이었다. 맥아더 연합국최고사령관은 이들의 형량을 경감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맥아더는 11월 23일 대일이사회와 극동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대표에게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부분의 대표들은 변경을 원하지 않았고 일부 국가가 일반적인 경감 또는 특정인에 대한 경감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나 맥아더는 원판결에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제8군사령관에게 집행의 지시를 내렸다.

이 사이 피고인측의 변호인들은 11월 29일 미국 대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구하는 소원제출 허가신청을 냈고 이에 따라 맥아더 사령관은 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행을 연기하였다. 미국 대법원은 12월 6일 소원을 청취하기로 결정하고 1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심리가 열렸으나 끝 국제군사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소원을 허가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말았다.

드디어 1948년 12월 23일 오전 0시 1분 쓰가모 형무소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7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히로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천황에 대한 충성을 마지막으로 보이기 위해 만세를 부르면서 집행에 응했다. 연합국의 공식 입회인으로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소련의 4개국 대표가 참석하였다. 이들의 시신은 화장되어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이용되지 않도록 가족에게 인계되지 않았다. 그 일부는 비밀리에 수거되어 인근의 아타미 신사에 봉안되었다. 7년후인 1955년 3월 후생성 배상지원과에서는 그 제를 일곱개 상자에 나누어 유족들에게 전달하였다. 나중에 이들에 대한 묘비가 세워졌으며 다시 靖國神社에 모셔져 일본인의 추앙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판결당시 쓰가모 형무소에는 岸信介, 見玉譽士夫등 17명의 A급전범용의자들이 있어 제2의 동경제판이 예상되고 있었으나 사형 집행 직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2월 24일 17명 전원을 불기소 석방하고 그와같은 종류의 재판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의 성격은 모호한 것이었으나 사실상의 사면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이때 석방된 키시 노부스케는 1958년 정계에 복귀하여 수상까지 되었으며 코다마 요시오는 미국의 정보기관과 손을 맺고 일본 정계의 막후 실력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이 석방은 필리핀, 소련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그러나 1948년 12월 29일 이 재판소는 문을 닫았고 이듬해 2월 24일 극동위원회는 미국의 주문대로 재판의 종결 정책을 승인하고 말았다.

기난은 일본을 떠나기 전에 앞서 히로히토 부처를 만났는데 싸인이 들은 사진과 그 부인을 위해 핸드백을 선물받았다. 동경의 유명한 황랑 주인은 그에게 천황의 무죄를 위해 공헌한 그의 노력의 대가로 황옥을 주었다. 더러운 거래가 아닐 수 없었다. 시게마츠 마모루는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4년후인 1950년 11월 석방되어 나중에 일본정부의 의상이 되었다. 1958년 까지는 모든 남은 피고인들이 석방되었다.

4. 동경제판의 한계

(1) 뉴른베르크 재판과의 비교

동경제판은 흔히 또 다른 뉴른베르크(The Other Nuremberg) 또는 뉴른베르크의 극동아시아판(Far Eastern Counterpart of the Nuremberg Hearing)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제2차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에 의한 추축국(権軸國)의 전쟁범죄 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다른 무엇보다도 양 재판의 근거가 된 현장이 거의 유사하다. 특히 동경전범재판은 훨씬 유명한 뉴른베르크 재판의 메아리(echo)에 지나지 않았다. 동경전범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거의 뉴른베르크 문서의 일반적 패턴을 그대로 따라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 당시 세계여론의 관심도에 있어서나 연합국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나 동경제판은 뉴른베르크의 그 것에 비교되지 못하였다. 이미 위에서 본대로 이 재판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던 미국 자체가 뉴른베르크 재판의 수석검찰관으로 연방대법원 판사를, 동경제판에는 겨우 주연방법원 판사를 판사로 과견하는 등 경시하는 태도가 역연하였다. 동경제판은 뉴른베르크 재판에 비하여 그야말로 2류재판임이 분명하였다. 당시까지의 세계사가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 더구나 뉴른베르크 재판이 먼저 실시되었고 비교적 신속히 끝나면서 이미 세계적 관심이 초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후에 벌어진 동경제판에 시선이 그만큼 모아지지 않았다.

뉴른베르크 재판은 주요 연합국이 모두 피해국가였고 당연히 재판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동경제판의 경우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한 연합국 보다도 일본의 침략과 점령을 당한 아시아국가들이 더 큰 전쟁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들은 중국, 필리핀, 인도를 제외하고는 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연합국의 피해는 주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사로잡힌 포로들의 학대에서 비롯되었다. 나머지는 구 식민지였던 지역에서 연합국들이 상실한 자산과 민간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 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등이 입은 피해는 그 국민과 국토가 함께 피폐해질 정도의 막대한 것이어서 비교조차 힘든 일이었다. 이들 국민들이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여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공헌한 점도 적지 않았다. 더구나 이들에게 가해진 비인도적 행위는 결코 유대인에게 가해진 것에 못한다고 볼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일본의 전범들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의 전과정에서 소외 당함으로써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였다. 만약 이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동경제판이 이들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의 부분을 좀 더 다루었다면 이 재판은 그 정당성에 있어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재판의 대상은 시기적으로도 만주침략 이후의 범죄에만 국한되어 그 이전의 한국등에서의 이권쟁탈, 러일, 중일전쟁 또는 식민지침략,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비인도적 행위들은 모두 제외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피해국들의 소외는 전범의 재판을 연합국의 수중에 둠으로써 펼연적으로 온당한 처벌의 실패를 가져왔다.

뉴른베르크 재판의 현장 제10조는 일정한 그룹의 범죄적 성격을 못박아 두었다. 이리하여 나치당, SS(Schutzstaffel), 게슈타포등이 모두 범죄집단으로 낙인찍혀 뉴른베르크 재판에 이어 각국이 계속하여 이를 집단의 구성원을 재판하는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동경제판의 경우에는 이들 집단에 대한 범죄의 낙인을 찍지 않음으로써 단지 기소된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대에 그쳤다. 더구나 독일과 달리 전범을 처벌하는 국내법을 제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단 한명의 전범도 일본 정부의 손으로 처벌한 적이 없어 결국 동경제판은 한때의 사건으로 지나가고 말았다.

또한 동경제판의 피고인 속에는 재벌이 들어 있지 않았다. 방대한 강제노동을 사용하고 동원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인권유린을 한 것은 독일의 재벌과 다르지 않았다. 뉴른베르크 재판에는 나치정권을 드고 도움을 받은 기업가들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동경제판에는 어느 기업가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 후 일본의 부흥과정에서 이들이 재등장하는 직접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세기의 두 재판이 벌어지고 있던 당시나 5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나 독일에 대한 관심과 감시의 눈이 일본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압력보다는 더욱 강한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신나치에 대한 관심과 경고는 유럽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로부터 나오고 있고 독일정부는 이에 대하여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피해국 몇 나라만이 일본사회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다. 나치시대의 베를린 일본대사관 건물을 새로이 단장

하여 1987년 학술센타로 개장하는 것을 기념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일본은 천황승배의 신토이즘과 독일민족 신화의 공통성을 점검하는 것을 주제로 제의하였으나 독일측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말았다. 과거 군국주의 파시즘에 대하여 독일이 얼마나 신중한지, 일본이 얼마나 개의치 않는 대범한 자세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일본을 감시하는 눈은 멀어 있거나 악시임이 분명하다.

(2) 정치적 재판과 법률적 재판

동경전범재판소는 뉴른베르크재판소와 마찬가지로 군사법정 (Military Tribunal)이었다. 이 재판소의 최종 근거는 연합군회고사령관의 명령에 있었고 국제검사국과 재판소 판사들의 구성권 역시 그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연합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의 대표로 구성된 민간재판소를 세울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에 아쉬워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동경제판의 법적 근거와 구성의 특색은 결국 연합국이라는 주관성과 군사적 색채를 지우기가 어려웠다. 그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의 여지를 주게 된 것이다.

동경제판에 앞섰던 뉴른베르크재판의 경우에도 그것이 일종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판으로서 죄형법정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이미 보았듯이 뉴른베르크 재판과 동경제판의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던 죄명은 세 가지 종류였다. 그 가운데 이른바 통례의 전쟁범죄는 이미 국제법의 규범으로 확립되어 있던 것이어서 비난의 여지가 없었다. 비인도적 범죄의 경우에도 새로운 죄명이기는 하였으나 이미 거의 모든 문명국의 국내법에서 가별적인 행위를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일본이 그토록 필요하게 관련 자료들을 소각하여 은폐하려 했던 것은 역으로 그것이 범죄라는 규범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도 하였다. 규범은 종래부터 확립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강제하는 재판이 없었던 것 뿐이었다. 문제는 평화에 대한 죄였다. 동경제판의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된 죄명은 바로 이 평화에 대한 죄였다. 다른 죄들은 전쟁 수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별적 범죄였기 때문에 하급 장병들도 그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평화에 대한 죄는 침략전쟁의 기회, 실행자들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군부를 포함한 가해 국가의 지도자들이 피고인이 되었다. 평화에 대한 죄가 과연 동경제판 당시 국제법 규범으로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1924년 10월 2일의 제네바의정서, 1928년 8월 27일의 파리조약에 의하여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전쟁에 호소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었다. 즉 그로티우스 이래 정당한 전쟁개념이 발전하여 한 국가가 자신의 존립과 정당한 방위를 위해 전쟁을 시작할 권리가 인정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러한 전쟁을 침략정책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시의 규범으로 존재했다는 것이 바로 뉴른베르크 재판과 동경제판의 결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책으로서의 침략 전쟁 금지가 당시의 국제법적 규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책을 추진한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당시의 국제법에 의해 확립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았다. 즉 폐전에 대한 책임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었던 것일 뿐 불법한 전쟁의 개시를 결정한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일본은 이 재판을 승자의 정의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는 승전국의 의식(儀式)이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견해들은 동경제판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승전국인 연합국의 일방적인 복수재판이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동경제판의 인도출신 판사 팔은 소수의견에서 이러한 견해를 반영하여 복수의 욕망이 가득차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률적 절차를 밟은 것과 같은 의양을 띠고 있더라도 국제정의의 관념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儀式化된 復讐는 순간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후회가 따르게 마련이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견해는 형벌이 일반적으로 응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뉴른베르크 재판이든 동경제판이든 간에 한 국가의 전쟁의 시작과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을 전쟁범죄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형사 법정에 세운 것은 최초의 일이었던 점은 사실이다. 승전국은 폐전국의 전쟁 지도자들을 아무런 재판없이 처단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재판의 절차와 정의와 인류의 양심의 이름을 빌어 그 처단에 법률적 형식을 갖추고자 한 것이다. 더구나 전쟁 중의 살인, 강도, 강간등의 행위는 그 가해자가 소속한 국가에서도 엄정한 군기의 확립과 점령된 주민들의 반감을 경감을 위해서도 스스로 처벌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범죄(individual criminality)와는 달리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명령하고 조장한 체계적 범죄(systematic criminality)는 더욱 중대하게 취급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금전된 무기의 사용, 불법화된 방법에 의한 전투, 부당한 목표물에 대한 공격, 작전 또는 점령지역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 전쟁포로의 부당한 대우, 점령법의 위반등이 포함될 수 있다. 동경제판은 바로 이러한 범죄들을 종합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한 체계적 전쟁범죄에 대한 응징이었다. 그것은 커다란 국제법적 발전이었고 인류의 평화를 보장하는 하나의 초석이었다. 침략적인 전쟁을 시작한 것이 죄가 되어 개인이 처벌받게 된 것은 전쟁의 방지에 큰 선례를 남기는 일이기도 하였다. 동경제판의 직전 선례가 된 뉴른베르크 재판의 현장과 판결이 남긴 국제법의 원칙은 그후 1946년 12월 11의 유엔총회결의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이 총회 결의는 전범재판을 위한 국제법의 근거와 그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재판의 구성과 절차, 판결의 결과에 있어 다른 형사재판과 달리 부당하게 피고인의 이익을 해하거나 절차적 권리를 무시당한 일이 없었다. 오히려 그당시 가장 사법적 정의가 앞서 있었던 영미법계 국가의 재판절차가 그대로 온전히 실시되었고 일본인 전범들은 당시 일본의 법정에서 보다 더욱 민주적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었다. 더구나 그것은 국제적으로 공개되고 감시된 분위기 속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았다. 다만 동경제판 보다는 뉴른베르크 재판의 판사들이 자신들의 정부와 검사로부터 보다 독립성을 지켰다는 평가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제판이 정치적이라고 비난 받을 구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그동안 비판의 핵심은 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민간인의 무차별 살상이 전제된 원폭의 투하는 그 자체가 전쟁범죄 또는 국제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연합국의 범죄는 그대로 두고 일본의 범죄만 추궁당했던 것은 동경제판이 가진 정치적 성격의 상징이며 불공정한 재판의 사례라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점령정책의 편의와 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실제 법정에 섰던 A급전범 보다 더 크게 책임을 져야 할 용의자들을 불문에 불이거나 책임의 추궁을 포기하였다. 일본 천황과 741부대 관련자들에 대한 용서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후자의 사례를 통하여 미국의 도덕성 조차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동경제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보다 더 심각한 전범으로 간주되었던 사람들의 면책은 동경제판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정쩡한 기소와 처벌은 오히려 일본의 반박의 여지와 기회를 주었다.

그후 미국은 나치 전범들을 보호하거나 은신을 목인하는 등으로 당초의 전범처벌의 의지를 퇴색시키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소련등 동구권 국가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은 냉전질서의 한 축으로서 수많은 제3세계의 내전과 국지전에 개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무수한 전쟁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강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응징받을 수 없었다. 베트남, 구아데말라, 도미니카, 그레나다, 니카라瓜아등 남미, 중동 여러 곳에서 미국은 결코 정당한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여러 전쟁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도록 하였다. 베트남전쟁에서는 1968년 3월 16일 비무장한 4백명의 여성, 어린이, 노인들을 단 네시간만에 학살해 버린 미라이 사건과 같은 학살사건도 벌어졌다. 그 사건에서 단

네명만이 재판에 회부되어 그 가운데 켈리 중위만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그도 몇달만에 풀려났다. 이 사건을 두고 미국의 정치지도자들과 미국 국민들조차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라거나 전쟁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치부하였다. 이것은 결국 동경제판이 하나의 역사적, 정치적 쇼였다는 일본의 부당한 비판이 정당함을 미국 스스로 증명해 주고 만 풀이었다. 그것은 동경제판의 주역을 담당했던 미국이 동경제판의 정신과 의미를 배반하였음을 뜻하기도 한다.

5. 결론

전전의 일본은 명치유신 아래 서구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용하는데 열성을 보였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로부터 범를 체제와 의회제도, 지방자치를 수입하여 접목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외양일 뿐 경찰국가로서의 일본은 그대로 온존하였다. 사상은 통제되고 천황이 신격화되었으며 군국주의가 승상되었다. 이러한 전근대성이 일본제국주의를 무모한 팽창과 침략, 비인도적 잔혹과 야만으로 몰고 갔으며 그 당연한 결과와 대가로서 폐배와 전범처벌이 있었다. 동경제판의 주된 대상이 된 이른바 15년전쟁은 명치유신 아래 추구된 팽창정책과 아시아 침략의 길의 불가피한 도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동경제판이 다른 것은 근대 일본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였다. 당연히 재판에 올라야 했던 것은 근대 일본의 역사 자체였던 것이다.

더구나 동경제판은 15년 전쟁의 기간에서나마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책임을 묻고 그 전쟁의 수행과정에서 벌어진 온갖 잔혹한 범죄를 처단하기에도 너무나 큰 한계가 있었다. 유엔전범위원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라이트(Wright)경은 대다수의 전범들이 처벌을 면할 것이다. 단지 10%만이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선례를 만드는 것 뿐이다라고 실토하였다. 특히 일본인 전범들이 처벌받은 것은 단지 1%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아시아의 어느 곳에서도 시몬 비센탈같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일본인 전범들은 정의를 비껴가고 말았다.

그럼에도 일본은 동경제판의 정당성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일본인 학자들과 정치인, 일반국민들은 동경제판이 전쟁에 승리한 연합국들의 정치적 보복 수단이었던 것으로 믿고 있다. 이것은 동경제판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한 재판이었으며 나아가 그 재판의 대상이 된 침략행위와 비인도적 행위등이 연합국에 의해 조작되었거나 과장되었던 것이라는 신념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경제판에 대한 비판은 나아가 일본이 벌인 전쟁이 정당한 것이었다는 지경으로 확대 비약되고 있다. 그 진정함이나 발언의 동기조차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의 발언들을 인용하면서 이들은 당시의 전쟁이 아시아인의 해방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인용되고 있는 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구미야말로 중요해야 할 아시아 침략의 장본인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당신들은 자식들에게 일본은 범죄를 저질렀다, 일본은 침략하였다고 가르치고 있다(인도의 팔 관사, 1952년 11월 헤로시마변호사회관 강연)

대동아전쟁은 대식민주의에 종지부를 찍고 백인과 유색인종의 평등을 가져왔으며 세계만방의 기초를 쌓고 있다(H. 웨일즈 박사, 영국의 역사학자, 항복 직후의 언정)

일본이 역사에 남긴 엄격의 의의는 서양인 이외의 인류의 면전에 아시아와 미국을 지배해 온 서양인이 과거 200년간 생각해 온 불폐의 신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었다(아놀드 토인비 박사, 1956년 10월 28일자 옵저버지 기고)

진주만의 진정한 책임자는 루스벨트 대통령이다(1945년 8월 31일자 뉴욕 태일리 뉴스지)

완전히 역사의 진실을 뒤엎는 말을 편집하여 이것들이 전세계 지식인의 의견인양 선전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일본의 과거 전쟁이 아시아인의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망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바로 일본인의 보편화된 이러한 신념과 일치한다. 그러나 아시아인의 해방전쟁을 통하여 일본이 아시아 각국과 그 민족들에게 준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학살과 참혹한 고통뿐이었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이미 여러차례 아시아의 전쟁희생자들에게 사죄의 의사표시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실천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체면치레일 뿐이었다. 한편으로 군국주의에 의 노스텔지어를 부추기고 천황 숭배와 우경화의 정표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 한편으로는 영화 연합함대 대일본제국등에 의한 군국일본에의 노스텔지어의 환기, 현직 대신이 긴시훈장의 부활을 공연하는 등의 상황에 놓여 있다. --- 이 시점과 행동--그야말로 행동이란 이름에 합당하는 행위야말로 참다운 반성이며, 참다운 사죄인 것이다. 반성없는 민족으로서의 슬픈 특유성 가운데서 이와 같은 행동이 보기 드문 것이 아닌 것으로 되는 날에는 우리를 일본인도 지구상에서 타민족과 손색없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을 것이다. --- 반성없는 민족이 변하는 날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는 이와같은 짹이 크게 자라는가, 짓밟히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인 스스로의 눈에도 오늘 일본의 무감각이 이같이 꼬집히고 있다. 불행히도 반성의 짹은 사라지고 전쟁 미화의 짹만이 점점 자라는 일본사회를 보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동경제판의 명암은 더욱 깊숙이 역사속에서 드리워지지 않을 수 없다.

영원히 쫓기는 나치범죄자 ---나치전범 사냥의 역사---

영원히 쫓기는 나치범죄자	B12	30
---------------	-----	----

변호사 박원순

1. 서론

2. 세계로 스며든 나치 전범

3. 나치전범을 학한 끝없는 추적

(1) 추적의 경과

- ① 추적의 개시 / ② 숨바꼭질 / ③ 동서냉전과 나치범죄자 / ④ 5-60년대의 안식, 70년대의 추적 / ⑤ 파일을 닫을 날

(2) 세기의 나치재판들

■ 아이하만 사건 / ■ 바르비사건 / ■ 템양유크 사건 / ■ 안드레아 아르트코빅 사건 /
■ 멘滕 사건 / ■ 뉴슈밥베르크 사건

(3) 추적을 피한 사람들

- ① 추적과 입증의 곤란 / ② 조셉 멩겔레(Joseph Mengele) / ③ 마틴 보르만(Martin Bormann) / ④ 하인리히 뮐러(Heinrich Muller) / ⑤ 범죄자를 보호하는 범죄자

4. 세계 각국의 나치전범 색출과 처단 노력

(1) 이스라엘과 유태인

(2) 독일

(3) 캐나다

(4) 오스트레일리아

(5) 미국

5. 결론

1. 서론

--지연된 정의

"이 처단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이 범죄자들의 몸이 먼지로 변한 이후에도 이 세상에 드리울 사악한 영향 때문이다. 그들은 인종적 증오, 테러리즘과 폭력, 권력의 오만과 잔혹성의 살아있는 상징이다. 그들은 또한 유럽의 세대와 세대를 이어 인간성을 말살하고 주거를 파괴하고 생활을 궁핍으로 몰아넣은 열렬한 민족주의와 군사주의, 전쟁 음모의 상징이다. 우리가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다시 등장하게 되고 말 이러한 사회적 세력과 문명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노인이 되었거나 병이 든 나치전범들을 추적하거나 체포된 범죄자를 법정에 세울 때마다 유럽의 각국에서는 왜 50년도 더 지난 일을 이제 와서 이토록 집요하게 다루어야만 하는가는 의문이 일부에서 따랐다. 진실로 이들 범죄자들은 전쟁이 끝난 뒤 곧바로 법정에 세워졌어야 마땅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요란하던 전범처단의 구호는 냉전의 전개와 더불어 여러나라에서 잊혀진 주제가 되었다. 나치 관련자들에 대한 탈나치화정책은 곧 수그러들었고 처벌은 완화되거나 다시 원칙에 복귀하였다. 수십년이 지나도록 공산주의자와의 싸움 때문에 그 나라들의 턱밑으로 숨어든 나치전범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에 다름 아니다. 오랜 세월은 범죄자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소멸시키며 증인은 죽고 기억은 흐리게 만든다. 그러나 그러한 지연이 면책의 이유는 될 수 없었다. 잔혹한 범죄는 세월의 흐름이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류는 확인해 왔다. 공소시효라는 방패막이를 제거하면서 적어도 나치범죄자들에 관한 한 영원히 피난처를 마련해 주지 않겠다는 규범의 정립과 그 구체적인 적용을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또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확보해 온 것이다. 이 범죄자들을 지구의 끝까지라도 쫓아가 법정에 세우는 일은 그들로 인하여 학살당하거나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회생자들의 정의감을 만족시켜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과 미래의 세대에 대하여 대량학살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범죄자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고 만다는 사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나치의 깃발 아래 살인의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신나치의 위험과 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나치전범의 추적과 처단은 복수(revenge)와는 다르다. 복수란 개인적 감정에서 회생자의 친구와 친척에 의해 선택된 대상에 대해 이루어지는 보복행위이다. 정의란 국가에 의해 공평하게 가해지는 용보이다. 그것은 공정한 재판 절차와 불복의 기회를 보장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처벌이다. 따라서 단순히 유태인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것은 근본적 인권의 문제이며 인류 전체의 관심사이다. 사실 수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그 가운데 1백만명의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치의 범죄는 이미 "지상의 정의"(earthly justice)에 의해서는 처단할 길이 없을 지경이 되고 말았다. 어떤 엄중한 형벌로도 그 죄악을 벌할 길이 없는 것이다. 세월의 흐름이 회생자들이 겪은 참혹한 기억을 지우고 인류의 양심이 지난 정의감을 빛바래게 할 수는 없었다. 범죄자를 잊고 용서한다는 것은 곧바로 그 회생자들과 그들의 고통을 망각하는 길이 된다. 범죄자의 처벌은 회생자의 어깨로부터 역사적 기록을 확립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서 법정에서 증명된 사실은 단순한 회생자들의 증언보다 훨씬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국제법 위반과 인권침해를 다루는 세계법정을 설치하는 것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인류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이러한 법정의 설치에 의해 양보하게 될 주권의 상실을 원치 않음으로써 그 소망은 수포로 돌아갔다. 나치전범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제적 권위를 가진 법정은 뉴른베르크재판 이후 각국에 내맡겨졌다. 비록 세계법정은 아니더라도 국제여론은 나치범죄자들의 우산을 그대로 내버려 두도록 만들지는 않았다. 빗발치는 여론에 따라 여러나라들은 각국에서 나치처벌법을 만들어 직접 처벌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련국에 송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나치의 추적과 처단이 가능했던 것은 정의를 추구한 개인과 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었다. '나치 헌

터'(나치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치밀한 계획과 지속적인 감시, 행동이야말로 전세계로 흩어져 사는 나치범죄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체포하며, 마침내 법정에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정의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구체적이고도 침묘한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살아 있는 교훈이다.

2. 세계로 스며든 나치 전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에는 수백만명의 피난민이 생겨났다. 대부분은 나치의 희생자, 강제수용소의 생존자, 노예노동자, 전쟁포로, 나치에 의해 이주를 강요당한 자들이었다. 비교적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누리고 있었던 서유럽,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등에 의해 이들을 수용해 낼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유엔의 주도에 의해 설치된 국제난민조직(IRO,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난민들은 거의 1백만명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70%가량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영국등으로 유입되었다.

그러나 이들 속에는 대량학살과 처단을 시행했던 나치 관리들과 이들을 자발적으로 지원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신분과 전쟁중의 활동을 은폐하여 나치와 공산권으로부터의 피난민임을 가장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나라가 공산화되면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서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등으로 이주의 길을 가게 되었다. 서방의 여러 국가에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피난처를 갖은 사람들 가운데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발트3국, 폴란드등 동구권국가들의 독일계 주민들이 적지 않았고 이들은 나치 전쟁수행 기관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동조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세계각지로 피신처로 숨어든 나치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들은 그 정확한 숫자조차 확인하기 쉽지 않을 정도이다. 나치헌팅조직과 서독, 미국정부의 관리들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이전에 벌어진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는 독일인들이 15만명에서부터 2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종전후 미국등 연합국에 의해 기소되어 처단된 나치 범죄자는 3만5천여명에 이르렀으나 이것은 전체 범죄자 가운데 20%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은신처를 찾아 세계로 흩어진 것이다.

당시 일반 난민과 뒤섞인 이들을 분류해 내어 배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유엔의 IRO 조차 그 지원을 받는 난민에 대한 신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허술한 분류, 심사작업을 통해 나치범죄자들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무사히 새로운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평화스럽게 보통의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에는 지은 죄가 너무도 커다. 이들을 쫓는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3. 나치 전범을 향한 끝없는 추적

(1) 추적의 경과

① 추적의 개시

영국의 외무장관 안소니 에덴은 나치전범의 추적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사냥"이라고 묘사하였다. 나치전범에 대한 추적은 연합국이 전범재판에 세우기 위해 이루어지거나, 그 희생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1945년 7월 연합국은 7만명에 이르는 <전범 및 용의자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 리스트에 속한 사람들은 연합국 점령지역 안에서 언제나 체포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막상 전후의 혼란과 독일의 분할점령, 다수의 피난민 속에서 그 리스트에 속한 다수의 주요 나치전범들조차 유유히 도주할 수 있었다. 한때 연합국에 의해 구금되었다가도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다시 풀려나거나, 난민들 속에 섞여 제3국으로 안전한 이민을 가기도 하였다.

1947년말이 되면서 거의 모든 연합국이 나치 사냥을 거의 포기해 버렸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관심은 새로운 위협으로 옮아간 것이다. 아이히만, 마틴 보르만, 죄셉 맹겔레, 하인리히 월러등 악명높은 나치범죄자들에 대한 여론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추적이 각국의 정책적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었다. 심지어 일부 서방 정보기관들은 바르비 사건에서와 같이 SS대원들이 소련과의 경쟁에서 유용한 존재들이라고 믿고 이들을 보호하기까지 한 것이다.

처음부터 나치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은 각국 정부의 정보기구 요원들이 아니었다. 아이히만의 경우만 하더라도 1946년 팔레스타인에 소재한 한 은밀한 조직이었던 '하가나'(Haganah)에서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에 5명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아이히만의 처가 거주하는 집의 하인으로 요원을 들여보내는데까지 성공하였으나 아이히만의 소재를 파악하는데는 실패하였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에 따라 이들은 철수하여 다른 작전에 투입되었으나 몇몇 요원들은 계속하여 아이히만의 소재 탐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것이 아이히만의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단체였다.

② 숨바꼭질

"드디어 연합군이 리옹 성문을 통과하였다. '인간백정'을 쫓는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 일은 40년이나 걸릴 것이다. 바르비는 여러번 잡힐 뻔하였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서 '쥐새끼'처럼 체포를 피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해바라지족'족의 변신, '야누스의 두얼굴'을 가지고 처음에는 미국첩보기관의 첨자로, 그 이후에는 불리비아의 '더러운 군사정권'의 협조자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르비는 리옹시의 주민, 프랑스 국민들에게 영원히 잡지 못할 '빛'을 진 채 숨바꼭질을 시작한 것이다."

추적자와 도망자의 숨바꼭질. 그 기나긴 긴장과 인내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연합국과 피해자들의 추적 노력과 더불어 나치 범죄자들 역시 필사적인 탈출과 잠적, 도피의 길을 찾았다. 이들은 대체로 고국을 둉지거나 제3국을 찾아 새로운 생활의 터전을 밟으면서 자신의 과거를 은폐하였다. 때로는 자신의 고국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중산층으로 자리를 잡아 "평범한 시민" 또는 "조용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거의 경찰 신세를 지지 않도록 조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미국의 친나치조직, 반유대인운동, 극우적 정치조직 등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 가운데 몇 명은 반공조직의 회원이기는 하였으나 정치활동에는 무관심한 것이 명백하였다. 분명한 것은 익명으로 남기를 바랬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한다는 사실이었다.

나치전범들과 그 협력자들의 이러한 변신과 은폐 노력은 추적의 단서를 끊어 놓곤 하였다. 더구나 정작 추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대단히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것이었다. 잘못된 정보들이 추적의 과정에서 혀탕을 치거나 더디게 만들었다. 유대인이나 점령지 주민들의 학살을 지휘하거나 조종한 중요 전범들은 게슈타포등 정보기관 종사자로서 자신들의 신분 자체가 비밀에 싸여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들의 기억을 더듬어 수집된 정보들은 엄밀성을 결하고 있었다.

세월이 가면서 현상금도 늘어났다. 수배자 리스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알려졌던 맹겔레의 목에는 1985년 8월 그의 사망이 확인될 당시 3백4십만불의 현상금이 붙어 있었다. 아우스비츠 수용소에서 수천명의 생체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추적과 피신의 숨바꼭질을 거듭하다가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나치범죄자에 대한

추적은 죽음만이 중단시킬 수 있었던 셈이다.

③ 동서냉전과 나치범죄자

1945년 4월 25일 나치독일을 해방하고 점령하기 위해 진군하던 미군과 소련군이 엘베강에서 환희의 조우를 할 때까지만 해도 공동의 적을 향해 싸웠던 연합군으로서 다시 서로 적으로 갈라서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이후 심각해진 동서간의 냉전은 나치범죄를 둘러싸고도 벌어졌다. 특히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은 서방국가가 나치범죄자들의 천국이 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베를린이 함락된 후 1947년 11월까지 미국측은 1,292명의 전범을 프랑스에 인도하는 것을 비롯하여 다른 연합국들의 재판에 전범인도, 중인 수색 등의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냉전이 시작된 이후에는 점차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은 서방국가들의 나치전범처벌의 의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였다. 서방국가들은 소련이나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등이 요구하는 전범을 인도한 적이 없었다. 소련은 구테리안, 폰 뢰트비츠, 라이네파르트, 로드, 폰 포르만의 5명의 장군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그들이 뉴른베르크 재판에서 재판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방에 긴요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과의 대결에 이용하려는 뜻에서 다수 나치전범을 정보요원으로 충원하거나 미국으로 유입시켜 왔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예컨대, 벨로루시아(Byelorussia)에서의 나치조직이었던 OUN의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미국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소련은 끊임없이 미국을 향해 나치전범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리투아니아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자국 출신의 전범들의 주소까지 제시하며 미국의 나치전범보호정책을 비판했다. 실제로 나치전범의 추적과 처단에 관한 한 공산권이 서방보다 열성적이었다. 1986년 동독은 720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혐의로 드레스덴의 게슈타포 책임자였던 헨리 슈미트를 체포해 법정에 세워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비난과 경쟁에도 불구하고 나치범죄자를 추적.확인.추방.기소.재판하는 데에는 상호간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였다. 범행지, 범죄자의 국적, 범죄자의 현재 거주지, 범행에 관한 각종 자료보관소들이 전쟁의 종료와 더불어 각각 달라지게 되어 관련국들의 협조가 필요하게 된 것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특히 상호간의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협력하고 있었다. 미국의 법무장관이 소련의 대법원장을 만나 나치전범 처벌에 관한 협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고 실제로 관련 종인과 문서의 제공등이 이루어져 나치범죄자 송환과 기소에 큰 역할을 다하기도 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과 캐나다등 서방국가로 이주한 나치범죄자들의 대부분이 동구권 출신이기 때문에 전후 동구권에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 소련의 자료가 전범의 확인에 필수불가결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이 상호 냉전상태에서 정치적 공방에 의해 불신받고 체손되기도 하였다. 여러 사건에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에서 제공한 증거들이 정치적 의도로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크로아티아의 나치피뢰국의 내무 및 법무장관을 지낸 Artukovic의 국적박탈 및 추방사건에서 그의 아들은 "유고슬라비아가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담당변호사조차도 "미국 사법부에서 하나의 비극적인 에피소드"로 단정하면서 미국 법무성의 특별수사대(OSI)가 그 존재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만든 큰사건일 뿐이라고 동조하였던 것이다. OSI가 협력을 얻은 소련의 사법당국이라는 것은 실제 KGB이며 소련이 KGB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기실 미소대결을 국가안보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KGB에 의해 얼마든지 조작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소련에서 제공된 증언들은 결국 미국사법절차가 보장하고 있는 제반 적법절차규정이 결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의문의 제기에 따라 특별수사대의 사건처리의 온당성에 관한 자체내의 조사와 소련에 의한 증거조작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미국의 법률에 의해 검증받고 있다는 내용의 법무성의 반박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동서냉전은 나치범죄자들의 완전한 처단을 불가능하게 한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이 되었다.

④ 5-60년대의 안식, 70년대의 추적

이와같이 한때 범죄자를 처단하라는 인류 양심의 강한 목소리는 냉전의 시작, 전전과 더불어 점차 조용해졌다. 그 사이에 유태인 학살과 나치범죄는 이미 과거의 일로 망각의 커튼 뒤로 사라졌다. 70년대 중반에만 하더라도 48건의 나치범죄자에 관한 형사사건이 서독에 계류되어 있었지만 이에 대해 서독의 언론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서독은 "나치의 죄값은 이미 치르겼으며 오래전에 그 그림자는 극복되었다"는 의식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망각의 높으로부터 다시 나치범죄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서독 형법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서독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공소시효 제거를 주장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나치전범에게 면책을 줄 수 없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언론들은 새롭게 전쟁중의 끔찍한 학살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1978년 미국의 NBC는 4일간 대학살(Holocaust)을 시리즈물로 방영하여 120만의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자아냈다.

1970년대는 다시 인류의 양심이 부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한 시대였다. 단순히 나치를 경험한 세대 뿐만 아니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함께 나치의 범죄에 몸서리치고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공유할 수 있었다. 대학살에 대한 새로운 자각, 양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치전범을 비롯한 전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제거하는 조약이 유엔의 주선에 의해 채택되었고 공소시효를 무기한 연장하는 조치가 서독에서 취해졌다. 1972년에는 미국에서도 Hermine Braunsteiner에 대한 추방재판의 공판이 나치전범에 대한 추방조치로서는 최초로 열리기 시작하였다.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OSI가 생겨나고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나치전범들에 대한 스토리가 발굴되고 추방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때는 독일 내에서의 나치전범 보다는 독일의 연합국이었던 발틱,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프랑스의 비수정권 하에서의 나치전범에 대한 관심과 추적에 집중된 시기였다.

⑤ 파일을 닫을 날

나치범죄자에 대한 추적은 기본적으로 이들을 평화스럽게 죽어가도록 냅버려 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 추적을 벌여온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재판에 회부됨이 없이 나이를 먹고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적어도 자신의 잔혹한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생전에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나치전범에 대한 추적은 계속될 수는 없다. 대부분의 나치범죄자들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존의 가능성성이 회복해 졌을 뿐만 아니라 생존해 있더라도 이미 80대 내지 90대에 이르러 처단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생자들 조차도 점점 사라져 더 이상 범죄를 증명해 줄 사람들도 없어져 갔다

나치전범 추적의 가장 일선에 섰던 "시몬 비센탈 다큐멘테이션 센터"는 관리하고 있던 나치범죄자리스트와 파일을 금세기의 경과와 더불어 폐쇄할 예정이라고 한다. 추적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이제 나치전범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그 추적의 열띤 전쟁, 가쁜 호흡에도 긴 안식이 오게 될 것이다.

(2) 세기의 나치재판들

① 아이히만 사건

"나는 의회에 잠시 전 '유대인문제에 관한 최종해결'에 대해 다른 나치지도자와 함께 책임이 있는 가장 악랄한 나치전범 중의 한사람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 그는 이미 체포되어 이스라엘에 있으며 곧 나치 및 나치부역자처벌법에 따라 재판에 처해질 것입니다."

1960년 5월 23일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 수상은 의회(Knesset)에 대하여 가장 악랄한 나치전범 중의 하나인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했다고 알린 발표문의 일부이다. 이 발표는 즉각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경악시켰다. 그 당시 아이히만은 리차드 클레멘츠라는 가명을 쓰고 부네노스 아이레스 근교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의 체포는 이스라엘의 자원자 요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보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는 1960년 5월 11일 납치되어 1주일간 억류되어 심문을 받고 자의에 의해 이송된다는 각서에 날인한 후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로 강제로 이송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이에 즉각 항의하여 외교문제로 비화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사파로 종결되었다. 명백한 주권침해였으나 6백만명의 동족의 목숨을 잃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위치를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이스라엘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은 후 아이히만은 이미 뉴른베르크 재판에서 범죄조직으로 판정된 SS, SD, 게슈타포의 구성원이었으며 나치의 유대인 학살 정책의 최고 결정 및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 기소되었다. 원래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자란 아이히만은 독일로 이주하여 나치에 가담한 이후 비교적 일찍부터 유대인 문제 전문가로 자리잡았다. 1934년 베를린의 SD에서 유대인 책임자로 임명된 이래 1937년 말에는 장교로 승진하였고 오스트리아의 병합과 함께 그 지역의 유대인 강제이주 책임을 맡았다. 1941년 게슈타포의 유대인문제 담당부서인 IV B4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전쟁이 끝날때까지 그 직위를 유지하였다.

재판은 1961년 4월 11일 시작되었다. 예루살렘의 지방법원에는 6대주로부터 몰려든 수백명의 기자들로부터 북적거렸다. 재판이 진행된 4개월 동안 114회의 공판을 열었고 1천5백건의 문서, 120명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아이히만의 변호인들은 그가 단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어떠한 이니셔티브도 없이 제한된 권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였다. 그가 어떠한 정치적 정책 결정에는 무관하며 다른 유럽 여러 지역으로부터 강제수용소로 유대인들을 이송하는 책임을 전 2차적 기관에 불과한 IV B4의 책임자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칸트의 인식 특히 '범주적 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을 따르도록 노력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문제 전문가로서 유대인학살에 '영혼과 육체를 함께 바친' 그의 역할을 부정할 도리는 없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법정의 관할권문제, 납치에 따른 국제법 위반, 공소시효 문제등 수많은 법률적 쟁점이 떠올라 아이히만 재판은 "법률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드라마의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

아이히만에게 적용된 죄명은 이스라엘의 '나치와 그 부역자 처벌법'(Nazis and Nazi Collaborators Punishment Law, 5710 of 1950) 위반이었다. 이 법은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의해 처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법원에 의해 처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아이히만 사건의 판결문을 읽는데 3일간이나 걸렸다. 당연히 예정된 대로 사형 판결이었다.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항소심 판결도 같은 내용이었다. 사면 청원도 기각되었다. 1962년 5월 31일 한밤중 아이히만은 처형되었다. 그의 요구에 따라 화장된 그의 사체는 한 줌의 재로 변하여 지중해 연안에 뿌려졌다.

② 바르비사건

-돌아온 '리용의 도살자'

1983년 2월 24일 프랑스 리용의 검찰관 잔 베르티에는 바르비(Barbie)에 대해 8개 항목의 공소사실을 제시하였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비인도적 범죄사실들이었다. 비인도적 범죄라는 죄목의 '발명'은 우리 시대가 이룬 성취였다. '외과수술'처럼 전쟁이 가져온 결과였다. 이 공소는 29세의 바르비가 리용에서 SD 책임자로 일하면서 저지른 온갖 범죄를 저지른지 40년이 지난 후에서야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8개 항목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1. 1943년 독일 경찰관 두명에 대한 공격의 보복으로 22명의 인질 살해

2. 1943년 19명의 체포 및 고문

3. 리용으로부터 86명의 유대인 송출을 방조

4. 1943년과 1944년 사이에 리용 주변에서 42명을 총살

5. 1944년 프랑스 철도노동자의 수색과 체포를 벌여 그 가운데 몇명이 다치고 나머지는 행방불명

6. 1944년 대부분이 유대인인 650명을 아우슈비츠와 라벤스브뢰 수용소에 이송

7. 브론시에서 70명의 유대인, 생 제니 라발에서 두 목사를 비롯한 유대인 총살

8. 이지우 마을에서 대부분이 어린이인 55명의 유대인을 송출

그러나 바르비의 죄악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나중에 41개의 공소사실로 늘어났다. 그는 새디스트로서 자신과 살던 스위스 여자를 짚증이 나자 총살해 버리고 유대인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기를 뺏어 아우슈비츠행 기차에 던져 버리는 인간이었다. 이러한 냉혈적 행동으로 그는 여러번의 훈장을 나치정부로부터 받는가하면, 그리고 점령하의 프랑스인들로부터 '리용의 도살자'(Butcher in Lyons)라고 낙인찍게 된다. 클라우스 바르비라는 이름은 프랑스에서 나치 시대의 악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이 바르비를 그토록 원하였던 이유는 그가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정신적 지주였던 Moulin의 학살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바르비가 불리비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1974년 이후 널리 알려져 프랑스 정부가 송환 요구를 해 왔던 상태였다. 특히 나치전문가 Klarsfeld 변호사가 바르비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으나 불리비아 정부의 완강한 거부로 끊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바르비의 추방은 양국정부의 은밀한 거래를 추측하게 하였다. 실제 라파즈에서 리용으로 바르비를 태우고 온 비행기에는 무기와 3천톤의 밀, 그리고 5백만불이 실려 되돌아갔다고 전해진다. 그만큼 프랑스는 강렬하게 바르비를 원했던 것이다.

바르비재판은 1987년 5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 열렸다. 당시 73세의 바르비는 인정신문에서 불리비아에서 쓰던 가명 '클라우스 알트만'이라고 밝혔으며 주소는 라파즈라고 대답하였다. 이 재판동안 리용 시민들은 40년전 자신들의 투옥과 고문과 처형을 담당했던 책임자를 대면하여 증언할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바르비와 그 변호인들은 그 전쟁기간 중에 벌어졌던 모든 일의 책임을 바르비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면서 "다음에는 에펠탑을 훔쳤다고 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또한 이 재판은 프랑스의 학생들에게 하나의 좋은 역사교육이 되었고 언론은 이 기간 동안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바르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39명의 변호사들이 유대인단체, 레지스탕스그룹, 개인적 생존자들이 재판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었다. 결국 9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유죄평결을, 3명의 리용형사법원 판사들은 무기형을 선고

하였다.

바르비의 존재는 미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바르비가 아직 프랑스로 송환되기 직전 미국의 CIC 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우연히 블리비아 라파즈의 뉴스를 보도하던 NBC 방송을 보다가 화면에서 사업상의 문제로 구속되었다는 바르비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너무도 선명히 그의 인상을 확인한 그 요원은 NBC에 접촉하여 자신이 CIC 정보원으로 고용된 바르비등을 통제하던 CIC 요원임을 밝혔다. 이 모든 보도가 NBC에 다시 나가자 미국사회는 나치전범을 정보요원으로 사용하겠다는 폭로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 온 전체주의에 대한 도덕적 우월성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③ 텨얀유크 사건

템얀유크(Demjanjuk) 사건은 대단히 극적 반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텨얀유크에게 가해진 혐의는 소련의 군인이었다가 독일의 포로가 된 후 트레블링카 수용소의 경비병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유대인 학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었다. 미국 클리블랜드의 포드회사에서 자동차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그를 여러 생존자들이 그 수용소유대인들 사이에 악명을 떨쳤던 '공포의 이반'(Ivan the Terrible)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1986년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추방되어 살인죄로 재판받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의 그 '이반'인지에 관하여 공방이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법정이 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1988년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텨얀유크의 변호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가 '이반'이 아니라는 증거를 숨기는데 공모하였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법무성이 이미 1978년 소련으로부터 그러한 증거를 입수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그 자료들을 제시했다. KGB신문내용과 나치로부터의 노획문서들로 구성된 19가지의 자료들이었다. 이 증거들에서 그 '이반'은 텨얀유크가 아닌 또 다른 우크라이나 경비원 'Ivan Marchenko'라는 중언들이 담겨 있었다. 진짜 문제의 '이반'인 마르첸코는 9살이나 많으며 3.5인치가 더 크다는 주장도 이루어졌다. 결국 텨얀유크는 소련의 자료가 공개된 이후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랜 세월의 경과가 만들어낸 역사의 또 다른 '비극적 회극'의 하나였다.

④ 안드레야 아르트코비 사건

안드레야 아르트코비(Andrija Artukovic)은 제2차세계대전 중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크로아티아정권의 내무장관을 역임하였다. 크로아티아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극우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독일이 유고를 점령하여 크로아티아 괴뢰정권을 세우게 되자 그 정권의 내무장관으로서 크로아티아의 적대세력이었던 세르비아인, 티토의 유격대원, 집시 등을 무차별 학살하여 "발칸반도의 살인마", "죽음의 내무장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나치의 폐배에 따라 아르트코비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아일랜드등지에서 머물다가 최종의 목적지를 미국으로 잡았다. 1948년 여름, Anich라는 가명으로 미국의 로스엔젤레스로 잠입한 그는 시민권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유고슬라비아 정부가 그를 전범으로 수배하고 인도를 요청하고 있음을 안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1951년 미국 언론에 공개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전범중의 한명이 살고 있음을 미국의 신문들이 대서특필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그를 추방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고 미국에 안주하려던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아르트코비는 냉전의 당사자인 미국과 유고의 갈등과 미국내 사법절차의 지연으로 30여년이나 걸리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유고로 추방되는 운명을 맞았다. 41년만인 1985년 5월 자신의 범죄의 현장인 유고에서 재판이 열려 사형을 선고받았다. 유고법정은 그에게 총살형을 선고하면서 "정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유고에서는 80세 이상의 고령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되어 있고 아르트코비는 86세의 실명상태에 있었지만 크로아티아 정권과 나치즘의 죄악을 심판하는 의미에서 극형을 선고한 것이었다.

⑤ 멘텐 사건

멘텐(Pieter Nicolas Menten)은 1941년 SS부대원으로서 폴란드의 한 마을에서 수십명의 유대인을 살해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1949년 나치부역 혐의로 8개월간 감옥생활을 하였다. 1950년대 폴란드는 전쟁범죄혐의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40개의 방이 있는 맨션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던 그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멘텐은 과거를 숨기고 미술품 수집상으로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76년 나치 현터들은 네덜란드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여 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다. 멘텐은 스위스로 도망하였으나 다시 네덜란드로 송환되었다.

그후 멘텐에 대한 징계는 시작되었다. 네덜란드 정부에서도 소송비용이 5백만불이나 들어갈 정도였다.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0명의 폴란드계 유대인의 학살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대법원은 법무부가 전후 네덜란드에 대한 지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1952년 면책을 주었다는 이유로 그 판결을 번복하였다가 다시 정부의 요구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멘텐은 최종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1980년부터 복역을 시작하였다.

⑥ 슈밤베르크 사건

슈밤베르크는 독일점령 폴란드 지역의 강제수용소등지에서 SS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숱한 유대인 학살사건에 관계된 자였다. 1987년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어 독일로 송환된 "폴란드의 학살자"로 알려진 그는 1945년 오스트리아에서 잠시 체포되었다가 도주하여 1949년 이래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었다. 1987년 서독정부가 50만달러의 현상금을 걸어 끈 경찰에 검거되었다. 아르헨티나의 군사독재의 희조와 함께 방패를 잊은 그는 알폰신 정부하에서 국적이 박탈되고 독일로 추방되었다. 그는 시몬 비센탈 센터의 10대 나치전범수배자에 포함되었던 사람이었다. 원래 그 자신이 직접 살해한 40명을 포함하여 3천여명의 유대인 학살에 관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여러 대륙으로부터 슈트트가르트법정으로 몰려든 회생자들은 50년전의 그를 가리켜 '주인' '판사' '살인마' '신이자 악마', 그 사람이 맞다고 확인하였다. "유대인 사격이 취미"였던 그는 불타는 창고 안으로 들어간 15명의 남녀를 뒤쫓아가 불붙은 사람들을 향해 다시 총을 쏠 정도로 잔인했다고 한다. 변호인조차 그의 범행을 부인하지는 않고 다만 "시간이 진실의 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의 혼란과 모순만을 지적하였다. 이미 80세의 노인이 된 그는 허리가 몹시 구부정해지고 무표정하게 재판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쟁기간 중의 기억을 부정하였다. 그러면서도 그 전쟁전의 일과 SS입대 사실은 기억하였다. 중요 나치범죄자재판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이 사건에서 11개월의 공판 끝에 슈밤베르크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 추적을 피한 사람들

① 추적과 입증의 곤란

나치 추적이나 송환이 언제나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은밀한 은신처에서 피신에 성공한 나치 범죄자도 적지 않았으며 일부는 공공연하게 그 신원이 밝혀졌음에도 해당 거주지 국가들의 노골적인 보호를 받기도 하였다.

더구나 수십년전에 일어난 범죄의 범죄자를 확인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일이 간단하지는 않았다.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시간과 돈,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피해자들은 전후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고 범죄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범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언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또한 증인의 편견, 주변적 환경에 쉽게 영향받는 증인의 민감성, 오랜 시간의 경과등은 증인에 의한 동일인 확인에 가장 큰 장애를 초래하였다. 그 대안으로 사진에 의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United States v. Walus 사건에서 미국정부는 Walus라는 사람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관하여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그의 사진을 신문에 광고하면서 증언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범죄가 일어난 한참 후의 사진인데다가 사진의 질도 문제가 되는 판에 그 사진에 의한 증인의 유효성이 논란이 되었다. United States v. Kowalchuk 사건에서는 미국정부가 제시한 증거가 피고인이 전쟁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전후의 동서냉전은 나치처단에서도 곤란한 상황을 야기하였다. 특히 동구권 지역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그곳 피해자들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서 나치범죄자들에 대한 국적을 박탈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함께 있어서 소련족 증거의 신뢰가 문제되었다. 많은 나치 범죄에 있어서 소련 시민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가 되었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 시민을 나치범죄자로 판정받는데 대하여 국가적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United States v. Kungys 사건에서 미국의 뉴저지 지방법원은 소련정부의 협력하에 취득된 증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시민권박탈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무엇보다도 나치범죄자 처단에 가장 큰 적은 세월이었다. 수십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증인들의 기억은 흐려지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을 혼동하였다.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 후 당연히 나타나게 마련인 이러한 혼동은 증언의 신빙성을 삐걱시켜 피의자의 무죄로 연결되곤 하였다.

심지어 증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들어났다. 강제수용소에서 몇년을 지낸 사람들이 정상적인 기대여명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나치범죄자들이 강제수용소의 생존자들보다 오래 사는 것은 대단히 흔한 일이었다.

먼저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결코 그 신원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체포나 처벌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끝없는 수색과 추적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인 도주와 은신으로 결국 생전의 체포를 면한 경우는 부지기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피신자들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② 조셉 멘겔레(Joseph Mengele)

-죽음이 그대를 자유롭게 할 때까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는 무엇보다도 생체실험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 수용소의 수석 의사로서 “아리안족의 특징과 푸른 눈을 가진 아이”를 인공적으로 창조하려 하였던 Joseph Mengele는 그 수용소의 의사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명하였다. 수천명의 수용자들을 개스실의 죽음으로 물거나 갖은 생체실험을 다했던 그는 수용자들 사이에 ‘죽음의 천사’로 널리 알려졌다.

“1943년 티푸스가 여성 수용소에 크게 번졌다. 2만명 가운데 7천명이 앓아 누웠다. 멘겔레는 먼저 6백명이 거주하는 블록을 먼저 비워 가스실로 보냈다. 그리고 그 블록을 깨끗이 소독한 다음 옆 블록의 수용자들을 들여보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블록이 소독되었다. 그러나 무서운 일은 그 맨처음 블록의 6백명은 가스실 외에는 갈 곳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발한 발상을 위한 ‘티푸스 회치’로 그는 훈장을 받기도 한다. 1981년 서독 검찰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면 “1943년 5월 25일 507명의 징집과 528명의 여자 징집을 개스실로 보냈다”고 되어 있다. 막상 그 자신이 징집계 외모와 혈통을 지녔으면서도 그토록 징집을 증오하고 학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뮌헨대학에서 칸트철학을 공부하고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뒤 의사자격을 취득한 그가 가장 비인도적인 범죄자로 들판하였다.

연합군의 진주와 함께 그는 미군의 포로가 되었으나 신원을 속여 혼란의 와중에 있던 상태에서 무사히 석방된다. 고향인 Gunzberg에 돌아온 그는 아무도 그의 전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온한 5년을 보냈다. 그러나 그의 아우슈비츠에서의 생체실험은 뉴른베르크 재판에서도 증언되었다. 아우슈비츠의 책임자였던 Hoess는 뉴른베르크재판의 피고인 Kaltenbrunner의 변호인 심문에서 “멘겔레에 의해 쌍둥이에 관한 생체실험이 진행되었다”고 증언하였던 것이다. 1946년 12월 미국이 23명의 SS 소속의사를 전쟁범죄, 비인도적 범죄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보면서 멘겔레는 위협을 느꼈다.

드디어 피난민을 가장하여 1949년 아르헨티나로 도주하였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그는 본명으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였다. 그에게 서독정부가 영장을 발부한 것은 1959년 7월이었다. 영장이 발부되자 아르헨티나에서 파라구아이로, 다시 브라질로 도피행각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는 그에 대한 모의재판이 열려 전세계의 텔레비전이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은 교황 바오로 2세에게 모든 카톨릭 신도들이 멘겔레의 행방을 찾는데 협조해 달라고 청원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자극받은 각국 정부는 멘겔레의 체포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하였다. 1985년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독일, 미국, 이스라엘 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 이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그러나 바로 그 3주 후 독일의 Die Welt지는 멘겔레의 시체가 브라질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논란이 일자 사용파울루 경찰은 멘겔레의 시신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묘지에서 파내 법의학자들에 의해 검증되었다. 공식적으로 그의 주검임을 확인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죽음이 비로서 그에 대한 추적으로부터 자유를 가져왔다.

③ 마틴 보르만(Martin Bormann)

-“해결되지 않은 최고의 나치 미스테리”

1946년 나치독일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두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뉴른베르크에서 처형되었다. 그 예외는 감옥에서 자살로 처형을 피한 괴링과 제3제국의 불괴와 더불어 사라져버린 보르만 두사람이었다. 괴링은 뉴른베르크 재판의 과정에서 “총통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특히 헤스가 없어진 이후인 1942년부터는 보르만이었다. 그것은 파멸적으로 강대한 영향력이었다”고 증언하였다. 히틀러의 비서였던 그는 전쟁의 말기에는 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제2인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런 보르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전후 영국과 미국, 그리고 소련의 정보기관들은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보르만의 소재나 심지어 죽은 혼적조차 찾지 못하였다.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그는 월식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를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1964년 11월 서독정부는 그를 체포하는데 정보를 주는 사람에 대해 10만마르크의 현상금을 걸었다. 그 이전인 1961년 서독의 해세주 검찰총장인 프리츠 바우어는 보르만이 살아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고 선언하였다. 1965년에는 하이파에 있는 나치전범문서보관소 소장 프리드만은 보르만이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듬해 아이히만의 아들이 보르만에게 “당신의 자리에 대신 서 있는 아버지를 위해 남미의 은신처에서 나와 줄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신문에 실어 관심을 끌었다. 1967년 독일 법무성은 브라질 대법원에 구금영장 및 추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보르만이 생존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1973년 4월 프랑크푸르트 주검찰청은 보르만의 행방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내면서 일단 보르만이 1945년 사망한 것으로 결론 짓고 공식적인 추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행방불명은 영원히 나치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④ 하인리히 뮐러(Heinrich Muller)

뮐러는 독일 계슈타포의 전 책임자였는데 나치헌터들은 그의 생존을 믿고 있었다. 그는 알바니아로 도주하여 동구에서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의 존재와 거주지는 결코 밝혀지지 않았다. 1964년 서독 관리들이 그리고 추정되는 사체를 검시하였으나 뮐러라고 단정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⑤ 범죄자를 보호하는 범죄자

한편 그 신원과 존재가 밝혀졌음에도 처단에 실패한 사례들도 있다. 남미를 비롯한 독재국가로 피신한 나치범죄자들은 '안전한 피신처'(safe heaven)를 구할 수 있었다. 나치범죄자는 전체주의 체제의 유지에 전문가들로서 제3세계의 독재자들에게 유용할 수 밖에 없었다. 스스로 권력자에게 유용하도록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점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제3제국'은 종말을 고했지만 일부 나치 범죄자들은 그러지 않았다. 이들 독재자들은 그들의 빙객(賓客)인 나치범죄자들을 함부로 내 주려하지 않았고 이들의 손 안에서 나치범죄자들은 안식처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남미는 이러한 나치범죄자들의 온상이었다. 전통적으로 남미는 정치적 피난처의 강한 관념을 지니고 있었다.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추방하지 않는 것이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갑자기 다른 남미 국가의 대사관에 피신함으로써 피난처를 구하곤 하였던 것인데 나치범죄자들의 추방에 응하였다가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을 두려워하였다. 남미의 국가들은 살인자까지 거의 추방하지 않았으며 '손님'은 언제나 보호되었다. 남미는 나치 이전의 독일과도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 1차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독일인이 남미로 이주하였고 이들은 각곳에 정착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곳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파라구아이의 경우 대통령이 되었던 스트뢰스너는 독일계였다. 이러한 이유로 나치즘과 인종차별주의는 이 사회에도 큰 영향력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고 나치전범들이 쉽고 자유롭게 안식처를 구했던 것이다.

그 가운데 시리아에서 유태인문제에 대한 고문으로 일해 왔던 부룬너(Brunner)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아이히만의 오른팔이었던 부룬너는 10만명의 유태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자였다. 그는 시리아 정부의 고문 역할을 하면서 그 신원이 드러났음에도 송환을 거부한 시리아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기소를 면하였다. 우편물에 포장되어 있던 폭탄으로 실명하는 등 끝없는 위험 속에서도 그는 끝내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일생을 보낼 수 있었다.

4. 세계 각국의 나치전범 색출과 처단 노력

나치범죄자를 찾고 이들을 법정에 세우려는 노력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국가도 나치범죄자를 공개적으로 변호하거나 이들을 보호하려고 할 수는 없었다. 제2차세계대전 중에 벌어졌던 참혹한 역사는 그러한 변호와 보호의 여지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열거하는 나라들 외에도 적지 않은 나치범죄자 색출과 처단의 노력이 있었음이 분명하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예만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 이스라엘과 유태인

① 이스라엘 정부

6백만명의 유태인 회생의 대가로 2차세계대전 직후 창설된 신생국가 이스라엘이 나치전범들의 추적에 나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먼저 이스라엘 의회(Knesset)는 1950년 '나치 및 나치협력자처벌법'을 입법하여 나치처단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 따라 이스라엘 법정은 유태인에 대하여 행해진 범죄, 전쟁범죄,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

이 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케이스는 역시 아돌프 아이히만 사건이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정열적으로 아이히만을 찾았고 드디어 아르헨티나에서 그를 납치하여 나치처벌법의 15개 범죄사실로 법정에 세우는데 성공하였다. 재판이 시작된지 13개월 만에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다. 아이히만 재판은 납치의 위법성, 이스라엘 법률의 소급입법문제, 이스라엘의 관할권 등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먼저 납치문제에 관하여 이스라엘 법정은 일단 법정에 선 이상 피고인은 그 법정에 서게 된 방법을 탓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일반 이론을 원용하였다. 아이히만의 변호인들은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임을 주장하였으나 이스라엘 법정은 뉴른베르크에서 나치범죄자들을 처단하는데 사용한 '정의의 보편적 원칙'을 입법한 것에 불과한 나치처벌법이 문제될 수 없다면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재판에 대해서 보편적 관할권의 적용에 관한 독일정부의 항의 외에는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판"에 대해 문제를 삼는 국가가 없었다.

② 유태인 단체와 개인

많은 나라와 정부조직 못지 않게 나치전범들의 추적에 성공을 거둔 민간인과 개인들이 있었다. 나치의 범죄를 목격한 증인들과 피해자들로 전세계에 네트워크를 구성한 이를 단체들은 비록 재정과 조직은 정부조직보다 못하였지만 불타는 정의감으로 그 난관을 극복하여 나치추적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대체로 한때 나치에 의해 처형대상에 올랐던 피해자들 자신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처형당하거나 고문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기억할 정도의 나이들이었다.

i) 세계유태인총회(The World Jewish Congress)

1936년 제네바에서 구성된 세계유태인총회는 이미 창립시부터 나치의 위험성을 전세계에 경고하고 있었다. 전쟁중에는 나치반대와 유태인구제에 힘을 기울이던 이 단체는 종전과 더불어 난민구제, 재산복구, 배상청구 등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나치범죄자에 대한 추적·처단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였다. 뉴른베르크 재판 당시 세계유태인총회의 유태인문제위원회 위원장이던 로빈슨은 미국의 주임검사 자문역을 맡았다. 이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문서와 증인의 제공역할을 다하였다.

그후 세계유태인총회는 나치전범 추적의 제일선에 나섰다. 미국에서 나치사냥을 되살린 것은 1972년 이 총회의 Karbach박사가 미국에 살고 있는 나치전범용의자 59명의 명단을 미이민국에 제출함으로써 가능했다. 1980년대를 통하여 이 총회는 전세계로부터 모여진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했다. 일부는 OSI에 직접 전달되었고 또 다른 자료들은 영국, 캐나다 등 다른 나라 정부에도 전달되었다. 이 총회의 직원이었던 Bessy Pupko는 가장 혁신적인 나치헌터의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5개의 파일박스를 관리하면서 전세계의 유태인신문들을 통하여 유태인들에게 나치전범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루에도 여러 시간을, 여러 언어로 세계 각지와 통화하면서 특정사건의 증인을 쫓고 자료를 확보하는 일에 매달렸다. 이 단체는 또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쿠르트 발트하임의 나치전력을 찾아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ii) 시몬 비센탈, 그리고 개인 나치헌터들

나치의 잔혹한 범죄로 피해를 입었거나 큰 분노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전후에도 나치범죄자 추적에 나선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나치헌터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시몬 비센탈이다.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나치의 손에 회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간신히 강제수용소를 탈출한 적이 있는 그는 나치범죄자 추적과 처단의 상징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스스로 나치범죄자의 리스트를 확보, 유지하면서 이들을 추적하여 1천여명에 가까운 나치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우는데 성공함으로써 그의 명성은 의심할 여지없이 확고하게 되었다.

종전 직후 미국 CIC등에 관여하면서 나치범죄자 색출에 노력하다가 1947년 이후 오스트리아의 린츠, 비엔나등에 Documentation Center를 설치, 운영하였다. 그는 가장 먼저 아직도 생생한 회생자들의 기억이 생생할 때 그것을 기록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전쟁이 끝나면서 나치강제수용소에서 약 10만명의 생존자가 있었고 이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등에 연합국이 세운 피난민센타에서 임시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비센탈은 먼저 이를 피난민센타에 주재원을 두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강제수용소 경비원, 살인과 고문의 경험과 목격담등에 관한 생존자들의 증언을 채록하게 했다. 이 채록과 사진등 모든 증거자료는 나치범죄, 그 범죄자, 증인별로 인덱스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이것은 뉴른베르크 전범재판, 1947년의 Dachau에서의 전범재판등에서도 이용되었을 정도로 이미 정평이 나 있었다. 비센탈이 확보한 나치범죄자의 목록은 22,500이 넘어서고 일단 명성이 나자 계속 관련 자료들이 담지하였다. 1961년에는 1만5천명의 SS대원의 계급, 사진, 특기사항등과 함께 적힌 명단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인쇄된 이 명단은 지극히 소중한 것이어서 여기에 포함된 자는 자신이 SS대원임을 부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자신이 독일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대부분을 이 사업에 투자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유대인과 그 조직,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성금이 모여들었다. 대단히 불규칙한 이 돈을 잘 관리하면서 나중에 한달에 1500달러가 넘는 경상비를 충당해 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느 정부의 돈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열만으로 아이히만, 맘겔레를 비롯하여 악명 높은 나치범죄자의 추적과 확인, 체포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의 이름은 이미 전세계로 숨어든 나치범죄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또 그만큼 나치전범들과 신나치조직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의 대상이 되었다. 비센탈이 지목한 나치전범 1,100명 가운데 4명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아무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험한 일을 계속할 그의 후계자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다.

비센탈의 개인적 노력은 1977년 시몬 비센탈 센타가 설립됨으로써 항구적 운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센타는 미국의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하여 대학살에 관한 연구와 인종간의 화해를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과 계몽을 통하여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과 교훈을 전세계에 전달함으로써 동일한 죄악이 인류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바탕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시몬 비센탈 외에도 나치현터들이 많이 있었다. 뉴욕의 치과의사 Charles Kremer는 Valerian Trifa의 신원을 밝히고 노출시키는데 주력한 사람이었다. 트리파는 원래 루마니아 태생이었는데 전쟁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로마정교회의 주교가 되어 권세와 부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전쟁 중에 그는 이른바 Iron Guard의 지도자로서 나치를 위해 일했으며 4천명의 루마니아 유대인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였다. Kremer는 트리파의 과거를 모두 폭로하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뒤 다시 치과의사로 되돌아갔다.

뒤에서 보는 Hermine Braunsteiner Ryan의 경우에도 그를 쫓는 나치현터가 있었다. 리안은 폴란드의 Maidanek 강제수용소의 여자 경비원이었는데 친명이 넘는 여자와 아이들의 사망에 관여하였다. 종전후 미국인과 결혼하여 캐나다로 이주한 다음 다시 뉴욕으로 옮겨 미국시민이 되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그녀에게 재앙이 온 것은 바로 이민국에 근무하던 Anthony J. DeVito때문이었다. DeVito는 전쟁 중 미군으로 복무하면서 강제수용소의 참혹함을 목격한 바 있었다. 그는 이민국에 근무하면서 리안이 미국에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폭로하였다. 수년의 노력끝에 리안은 폴란드로 강제송환되어 그곳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iii) 반인종주의연맹(Anti-Defamation League)

인종차별과 반유대인주의와 싸우는 중요한 기구로서 이 단체를 빼놓을 수 없다. 이 기구의 책임자인 Welles와 그의 부인 Ceil도 나치 강제수용소의 수용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계속되는 나치 현터를 연구하는 그룹이나 상원 위원회에 증언을 위해 나가기도 하고 나치전범 처단의 당위성을 강연하려 다니기도 한다. 제대로 된 사무실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손으로 쓴 수많은 전화번호와 인명 리스트는 적지 않은 위력을 지니고 있다. 이 리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나치전범 Brunner과 일을 찾아냈던 것이다.

(2)독일

기본적으로 나치범죄가 대부분 독일에서 독일인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일정부가 나치범죄자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만 1949년까지는 독일인과 무국적자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1949년 이후에야 비로서 독일은 연합국과 그 국민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까지 처벌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서독정부의 나치전범수사본부는 남부독일의 루드비그스부르크에 자리잡았고 유능하고 혁신적인 나치 현터 알프레드 쉬트라임이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사와 처단, 추적에 도움을 주고 근거가 된 것은 나치전범의 기록을 보관하는 자료보관소들이었다. 나치전범추적의 가장 중요한 자료센터는 국무성 산하의 배틀린서너센터(Berlin Document Center)였다. 2차대전 전쟁동안의 대학살과 나치작전에 관한 유일하고도 엄청난 규모의 자료들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 1946년 문을 연 이 센터는 노획된 독일문서의 공식적인 창고였으며 전세계로부터 오는 나치당에 대한 정확한 정보 요청에 응하였다. 연합국에 의해 관리되던 이 센터는 1988년 독일정부에 반환되었다.

이리하여 서독정부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조사한 나치전범용의자는 91,160명에 이르며 그 가운데 6,482명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2명이 사형, 160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나치전범들의 평균 선고형량은 8년이었으며 실제 복역연수는 4년이었다. 그러나 기소된 전범 수자의 75%가 독일이 연합국의 점령하에 있을 당시(1945-1949)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1950년 이전에 기소된 5,228명의 전범 가운데 살인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단지 100명뿐이었고 그 가운데 강제수용소에서의 살인은 15명이었다.

1970년대 이후에 기소된 유명한 나치전범들 가운데 SS대위였던 Paulus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1971년 함부르크에서 161명의 민간인 살인혐의로 기소되었다.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로 풀려났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바람에 1986년에 다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 선고결과는 징역4년에 불과하였다. 이에 항소한 Paulus는 20년간 걸친 재판은 국제인권규약위반이며 81세의 나이와 건강으로 보아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받고 말았다. 1988년에는 아우슈비츠 SS경비병이었던 Weise라는 자가 5건의 살인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장은 Weise가 "자신의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회생자들을 장난감처럼 다루었다"고 설명하였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또다른 나치전범은 역시 SS 상사였던 Karl Frenzel이었다. 74세의 프렌젤은 Sobibor 강제수용소의 유대인학살의 책임자로 기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피고인들 자신이 너무 연로하여 배심원들의 처벌의지를 약화시켜 대부분 경미한 선고를 받게 되었다. 게슈타포 장교로서 1만5천명의 유대인을 강제송출하고 학살하였던 Helmut Krizons은 재판 당시 68세로서 단지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나치군 중위로서 라투아니아 강제노동자를 살해한 Kurt Rahauser는 3년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SS를 포함하여 수십만건의 전범사건이 아예 기소를 면하였다. August Heissmeyer라는 SS 장군은 처음에는 기소를 면하고 있다가 국내외의 압력으로 기소되었으나 그에게 적용된 죄명은 가명사용일 뿐이었다. 감옥은 커녕 그는 나머지 여생을 코카콜라회사의 서독 지사장으로 보냈다. 뒤에서 보는 'Paperclip Project'가 냉전에 협력한 나치과학자들의 면책에 관

한 음모라면 나치기업가들에게도 비슷한 종류의 면책이 주어졌다. 나치의 전쟁과 학살의 수단을 제공하고 비인도적 범죄에 직접 가담한 많은 나치기업가들이 종전후에도 그들의 부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1964년 3월 서독정부는 전범으로 분류될 수 있는 독일 최대의 화학제조 Heinrich Butefisch에게 최고의 훈장인 Grosses Bundesverdienstkreuz를 수여하였다. 이와같이 독일에서 나치전범들이 제대로 충분하게 처벌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선 독일의 법체계가 엄격한 실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나치범죄처벌에 장애가 되었다. 미국법정에서 민간인을 다수 살해한 혐의로 미국 시민권을 박탈한 우크라이나 경찰관 Bohdan Koziy에 대해서 독일법하에서 범죄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송환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독일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법정에서 유죄로 판명된 대부분의 전범들이 면책될 판이었다. 더구나 독일법은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1980년 1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전쟁범죄들이 처벌될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과 전세계의 유대인단체들의 항의에 따라 1979년 7월 3일 독일연방의회는 살인과 제노사이드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이 이후에 처벌된 나치범죄자들은 별로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2차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다수의 나치범죄자들이 세계 도처로 흘러들어갔고 독일은 이들에 대한 송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독일이 몇가지 사건을 예외로 하고 이러한 송환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독일정부는 비록 나치정부의 권위하에서 벌어진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일 영토밖에서 벌어진 비독일인의 범죄인 경우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독일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클라우스 바르비 사건등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났다. 바르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독일정부는 불리비아로부터의 추방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관할권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프랑스정부가 최종적으로 추방요구와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면 바르비는 결코 법정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3)캐나다

캐나다의 전범처리 문제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77년 무렵이다. 캐나다유대인총회가 이민 담당 장관을 초청하여 캐나다에 살고 있을 나치전범의 처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캐나다홀로코스트생존자협회등에서 의회에 대한 나치전범처벌법 제정에 관한 로비를 하고 있었다. 1978년 Kaplan 의원은 이러한 로비끝에 C-215법안('캐나다에서의 전범에 관한 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1949년의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시민권박탈을 골자로 하는 캐나다국적법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다른 동료의원의 무관심으로 이 법안은 무용지물이 되었으나 의회는 몇몇의 나치전범용의자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캐나다 밖에서는 나치 헌터 시몬 비센탈이 나치전범으로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이들에 대한 결정적인 조치가 취해 지기 전에는 캐나다 땅을 밟지 않으리라고 언명했다. 그는 동시에 캐나다 내에 살고 있는 나치전범이 1천여명에 이르며 미국과 같이 대부분 우크라이나 또는 동구권으로부터 이민온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단속적으로 캐나다 의회, 정부, 국민들 사이에 논의되던 이 문제가 추상적인 입법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으로 터져나온 것은 1982년 봄의 Albert Helmut Rauca사건이었다. 73살의 이 사람은 리투아니아에서 수천명의 학살에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독일정부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고 있었다. 이 해에는 나치 통치기간 유대인들의 캐나다 이민을 극도로 제한한 조치를 비난한 학문적 연구서 'None is Too Many'라는 책이 나와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 책은 나치전범과 직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캐나다가 피난처를 거부한 유대인의 운명과 전후 기꺼이 피난처를 제공한 나치전범에 관한 모순된 캐나다 정부의 정책을 쟁점화한 계기가 되었다.

계속된 압력으로 캐나다 정부가 마침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1985년 2월에 이르러서였다. 특히 아우슈비츠의 '죽음의 천사'로서 생체실험을 담당한 나치 의사 맹겔레가 캐나다에 몰래 숨어 살고 있다는 주장은 여론을 극도로 악화시켜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리하여 맹겔레를 비롯하여 캐나다 내의 전범의 존재를 조사하고, 그리고 이들을 다를 캐나다 법체계를 연구할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퀘벡최고재판소 판사 Deschenes가 임명되었다. 그동안 나치전범 처벌을 주장해 왔던 유대인 단체들과 의원들은 전범 용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판절차 대신에 단순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해 4월 10일 처음으로 이 위원회가 열려 활동규칙등이 제정되었고 증인심문과 증거제출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었다. 이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한 이후 나치범죄자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들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과 폴란드인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나치 점령자와 탄압에 앞장선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비난과 이에 대한 우크라이나 출신자들의 반박이 계속되어 인종집단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유대인과 우크라이나인 사이의 구원(久懇)이 이 위원회의 활동을 사이에 두고 폭발하였던 것이다.

많은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자료의 검토가 계속되어 Deschenes위원회의 보고서가 준비되었다. 이 자료속에는 소련으로부터 보내온 것도 포함되었다. 1986년 6월 30일이 보고서 제출의 데드라인이었다. 그러나 사건의 복잡성때문에 1987년 3월이 되어서야 이 보고서는 헛빛을 보았다. 두 파트로 이루어진 이 보고서의 첫번째 부분은 966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으로 위원회의 조사절차와 이 위원회에 제기된 많은 법률적 문제들, 권리안, 8백여명에 이르는 나치전범 용의자들(의명으로 처리되어 있음)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이 들어 있었다. 두번째 부분은 비공개자료로서 위 8백여명 가운데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29명의 용의자들에 대한 혐의와 증거의 요약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후에도 이 위원회에 유력한 정보가 쏟아졌으나 이미 조사할 시간이 더 없는 상태였다. 위원회는 20명의 주요혐의자들과 218명의 추가조사를 요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캐나다가 아직도 나치범죄 용의자들의 천국임을 이 보고서는 분명히 하였다. Deschenes는 채코,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등 캐나다가 범죄자인도형성을 맺고 있는 나라와는 나치전범을 송환할 것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해 줄 것을 견의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OSI와 같은 수사대의 창설은 부적절하며 그것은 캐나다의 다민족 사회를 근저에서 뒤흔들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 보고서의 견고에 기초하여 캐나다 정부는 나치전범 뿐만아니라 모든 전범을 캐나다에서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리하여 1987년 9월 드디어 캐나다전쟁범죄법(The Canadian War Crimes Act)이 제정되었다. 캐나다가 2차세계대전에 참여한 1939년 9월 9일 이후 전쟁범죄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캐나다 밖에서 저지른 캐나다인에 대해서도 캐나다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법률이었다. 국제법상의 이론바 '보편적 관할권'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해서 비록 캐나다 외의 지역에서 범한 나치범죄의 경우에도 그 범죄자가 캐나다 내에 살고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나치범죄자임이 확인되면 범죄자 국가로 송환하는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 법원이 직접 재판하여 처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 법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2차세계대전 당시의 나치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범죄가 범해질 당시에 캐나다법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소급입법의 논쟁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그 당시 범죄가 이와같은 보편적 관할권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범인이 캐나다 국민이거나 캐나다와 교전중에 있는 국가의 국민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요구되었다. 역시 이 법률에 의해 1987년 12월 9일 76세된 헝가리 태생의 Imre Finta가 구속되었다. 강제구금, 납치, 살인에 관계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Finta에 대한 재판은 미국을 포함한 북미주에서 최초의 직접적인 전범재판이었다.

이 법률에 의해 캐나다가 문명사회에 의해 비난받는 나치범죄자들을 위한 '천국'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캐나다 의회 의원 한 사람은 "전쟁범죄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확고한 정책없이 캐나다를 정의로운 사회 또는 문명화된 곳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법안을 통과하면서 "캐나다인은 이러한 종류의 행위가 불처벌된 상태로 남겨둘 수는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온 세계에 전했던 것이다.

(4) 오스트레일리아

① 오스트레일리아행 피난민 속의 나치

인구밀도가 회박한 오스트레일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넘쳐나는 유럽의 인구와 피난민을 흡수할 수 있는 적합한 나라 중의 하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스로도 산업노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47년 이후 4년반에 걸쳐 약 18만명의 난민이 유럽을 떠나 "멀지만 광대하고 인구밀도가 회박한 나라"로 이민의 길을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나치범죄자와 그 동조자들이 끼어 있어 1942년 이미 조직되어 있었던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유대인 위원회(The Jewish Council)는 이를 오스트레일리아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신분을 제대로 조사하는 일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유대인위원회가 그 당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한 피난민 가운데 SS대원의 문신을 가진 사람들, SS대원으로서 찍은 사진등을 가진 사람들이 발견되었으나 무시되었으며 도착후 캠프에서 유대인 난민들이 조직적으로 공격받은 사실도 있다고 하였다. 이들이 오스트레일리아의 곳곳에 정착한 후에도 자신들의 과거를 자랑하거나 무의식중에 나치활동을 한 사실을 자인하는 등으로 나치범죄자임을 드러내 지역 신문에 보도되기 조차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오스트레일리아로 들어온 난민 가운데 상당수의 나치범죄자 또는 그 동조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으나 그 당시에는 대체로 중시되지 않았다. 더구나 냉전의 격화와 1949년 이후 오스트레일리아의 미국 편향은 반공주의를 최우선과제로 등장시키면서 더 이상 소수이민자의 나치출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소멸시키고 말았다. 심지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경찰로서 독일인 보다 더욱 유대인 수용자들을 학대하였던 Bontschek이란 자에 대하여 여러 수용자들의 전술서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정보기관은 증거가 없다면서 조사를 종결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송환 요구를 거절하였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더 이상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않게 된 나치협력자 출신들이 1957년초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반볼세비키연합(Anti-Bolshevik Bloc of Nations)의 오스트레일리아지부가 그것이다. 이 조직은 원래 냉전이 격화되면서 서방의 정보기관들이 반공 정보 네트워크로 이용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이용가치가 떨어지면서 그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반소·반공을 기치로 내걸고 이들은 보수 우익의 이념을 실현하는 정치적 활동을 계속하였다.

② 새롭게 깨운 나치범죄자에 대한 경각심

나치에 대한 정치인들과 언론의 오랜 무관심을 일깨워 준 것은 1986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었다. 먼저 이 때 5부작으로 방송된 ABC라디오 다큐멘터리 '오스트레일리아의 나치'(Nazis in Australia)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 방송은 그 당시까지도 오스트레일리아 보수적 정치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Ljenko Urbancic이 슬로베니아 Ljubljana의 "작은 괴벨스"였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었다. Urbancic은 독일점령 및 관리하의 슬로베니아 정보부서에서 신문, 방송, 강연등을 통해 나치즘 선전에 광분하였음이 밝혀졌다. 세계적인 나치헌터 시몬 비센탈이 ABC 프로그램에 나와 Arnoldus Pabresha라는 사람은 독일간첩이며 리투아니아 극우폭력집단의 회원으로서 1천3백명이나 죽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나아가 100여명의 나치범죄자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당시는 침묵과 무관심의 30년을 지나 전세계적으로 나치범죄자들의 색출과 처단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그런 바람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이러한 물결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쳐 왔다. 오스트레일리아 유대인 협회가 1986년 초부터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에 자극받아 자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그 협회 회장 Caplan은 당시 수상 Hawk를 만나 나치전범조사와 처벌을 권고하였다. 사방의 압력으로 일단 그해 6월초순 비로서 Andrew Menzies가 비공식적인 조사책임자로 상원에서 임명되었다.

③ 전범처벌법의 개정

Menzies보고서는 특정인에 대한 나치 단정이나 이민유입과정에서의 오스트레일리아 관리들의 고의적 목살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정부에 대하여 "중대한 전쟁범죄를 범한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조치를 취할 것"과 전범용의자들을 수사하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법무성 아래 특별수사대를 설치할 것, 그리고 혐의가 분명해진 자들에 대한 시민권박탈, 범죄지로의 추방, 1945년의 전범법개정등을 건의하였다.

1945년의 전범법(1945 War Crimes Act)은 아시아지역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인에 대하여 행해진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었다. 만약 나치전범, 그것도 30년이 지난 후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법의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특히 전범용의자를 추방하기 보다는 오스트레일리아 내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위 전범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법무성 내에 특별수사대(Special Investigation Unit)를 설치하고 그 책임자로 검찰차장까지 지낸 Robert Greenwood를 임명하였다.

1987년 10월 법무장관 Lionel Bowen은 전범법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하였고 야당조차도 동구권으로부터의 정보를 증거로 쓸 것인가에 대한 논란외에는 별 반대없이 통조하였다. 12월에는 이미 상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고 1988년에 이르기까지 350건의 건의서 제출, 17명의 증언이 이루어졌다. 드디어 전범법 개정안이 상하양원에 의해 통과되어 나치전범자에 대한 안식처가 이 지구상에서 또 하나 사라졌다.

(5) 미국

--은신처와 추격자의 두얼굴

① 나치범죄자의 이주와 추방에 관한 미국의 법제

유럽의 피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미국에 피난민을 가장한 나치범죄자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 미군의 보호하에 독일에 설치된 난민수용소에는 나치협력자들이었고 특히 밸트인들의 3분의 1은 게슈타포나 SS대원이라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질서를 주도하게 된 미국은 일단 난민을 가능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미국은 당초 할당제를 도입하여 소련에 의하여 병합된 발트 3국이나 동구권에 우선적 비자 발급을 해 주었다. 미국의회는 1948년(DP법)과 1953년(RR법)의 특별 이민법을 개정하여 종래의 이민 할당제도를 제거하고 보다 많은 이민의 유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민 관련 법률들은 물론 민간인들의 학대와 처단에 조력한 어떠한 나치범죄자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과 활동을 숨긴채 나치범죄자들은 쉽게 미국에 이주할 수 있었다. 위 특별이민법에 의해 난민위원회(Displaced Persons Commission)가 설치되고 CIC의 도움을 받아 선별작업에 나섰으나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유럽 전지역으로부터의 난민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할당제에 의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독일계 동구권 난민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아볼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의 신원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불가능하였다. DP법이 만료된 1952년까지 40여만명의 유럽 난민이 미국으로 유입되었고 그 가운데 1만명 가량은 나치전범으로 추산되었다. 미국은 완전히 나치전범들의 '안전한 천국'(safe haven)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국내외 여론으로 나치전범들의 신변에 위협이 닥쳐왔다. 유태인조직과 미국내 인권단체들의 나치추방 여론 형성과 나치범죄자 색출운동이 벌어진 이후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나치범죄자들이 차례로 확인되었고 대부분이 시민권이 박탈되거나 국외로 추방(deportation)되었다. 이민법(INA)이 이러한 절차의 근거가 되었다. 1978년 의회는 이민법을 개정하여 종래 있던 추방 규정에 나치범죄자의 추방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1933년 3월 23일부터 1945년 5월 8일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나치정부, 나치정부의 군대에 의해 점령된 지역의 정부, 나치정부의 지원과 협력에 의해 설치된 정부, 나치정부의 동맹국이었던 나라의 정부의 지시 또는 그 연계하에 인종, 종교,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여 어떠한 사람을 학대하는 일을 지시하거나 선동하거나 지원하거나 참여한 외국인"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나치전범에 대해서 먼저 시민권이 박탈당하고 이어 국외로 추방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환(extradition)도 취해졌다. 송환은 송환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인데 미국에서 송환된 케이스는 Ryan, Artukovic, Demjanjuk 3건에 불과하였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소련은 미국에 대하여 Maikovskis, Linnas 등에 대한 송환을 요구하였으나 송환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시민권박탈(denaturalization)절차와 추방(deportation) 절차는 미국법상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다. 시민권박탈절차는 연방지방재판소의 재판과 순회재판소의 항소, 대법원 상고로, 추방절차는 이민담당판사 앞의 청문,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순회항소재판소와 대법원을 각각 거치게 되어 있었다. 이 두개의 절차는 각각 진행되게 마련이었고 그 재판의 내용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7번의 심금의 모든 절차를 밟는데는 7년여의 세월이 걸리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나치전범이 사망하는 경우 조차 생겨났다.

한편 나치범죄자들에 대한 기소나 처벌절차가 미국내에서 개시되지는 않았다. 나치범죄가 미국내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형사재판권의 관할 결정에 있어서 국적주의, 영토주의, 범행지주의의 원칙을 지켜 왔다. 나치범죄는 미국인이 미국에서 미국인에 대하여 범행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은 나치전범을 처단하기로 하는 모스크바 선언과 런던협약에 서명하였고 1946년 유엔총회는 모든 국가로 하여금 전범을 체포하고 이를 범죄 국가에 송환할 것을 결의하였기 때문에 법률적 송환의무를 지고 있었다. 더 나아가 미국이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또한 현재 발전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보편적관할권이론'에 의해 미국이 직접 나치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미국은 이미 테러리즘에 대항해야 할 필요성에서 테러리스트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입법을 한 바 있다.

② 나치범죄자 색출운동의 시작

미국내에 나치전범들이 유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행정부가 이들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기소하려는 노력을 30여년간 거의 한 적이 없었다. 1945년 이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민국(INS)을 통하여 나치관련자를 확인하고 추방하려는 시도는 대단히 형식적이거나 비효율적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민국이 나치협력자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은 10건이 채 되지 않았고 그 가운데 단 1명만이 추방되었다. 이와같은 무관심과 비효율의 배경에는 당시 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나치즘보다는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더 강화되었을 뿐만아니라 이민국의 취급이 중앙이 아닌 지방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나치범죄자에 대한 이민국의 조사는 다른 범죄와 달리 특별한 취급을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성실한 조사가 따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Hermine Braunsteiner Ryan 사건은 미국 국민의 나치전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42년 폴란드 루블린에 설치된 수용소의 악명높은 여성경비병이었던 Braunsteiner가 뉴욕에서 남편과 함께 가명으로 살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녀에 대해 1973년 서독정부는 송환을 정식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미국 법원도 그 요구에 따랐다. 서독에서 6년동안 재판을 받은 끝에 1981년 서독 법원은 그녀에게 다수 살인죄를 적용하여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여성 하원의원이던 Eilberg와 그를 뒤이은 Holzman이 미국내에서의 나치전범 수색과 추방을 위한 캠페인에 불을 당기고 운동을 이끌었다. 1973년 세계유대인협회의 Otto Karbach 박사는 이민국에 59명의 미국내 나치전범용의자명단을 제출하였고 이민국은 즉각 조사팀을 설치하였다. 뉴른베르크 전범재판 이후 나치범죄자를 조사한 최초의 기구이기는 하였으나 1명으로 구성된 이 조사팀이 그 방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74년에 이르러 하원 법사위원장 Joshua Eilberg가 국무성의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키신저 국무장관에게 보냄으로써 국무성은 1975년 서독등 관련 국가에 Karbach List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들 국가로부터의 정보제공과 이민국의 용의자에 대한 국적박탈소송이 시작되었으나 이민국의 불성실한 증거자료준비, 생존한 증언자들의 회소성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③ OSI와 나치범죄자

1977년 이민국 내에 다시 Martin Mendelsohn변호사를 책임자로 하는 특별소송팀(Special Litigation Unit)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나치관련자들에 대한 수색과 소송등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자 불만이 의회내에 고조되었다. 나치범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가 이루어진 것은 의회의 압력으로 1979년 법무성 산하에 특별수사대(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가 설치되면 서부터였다. 이때부터 나치전범의 수사와 추방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단일한 체계하에서 취급되었다. 2백8십만불의 예산도 책정되었고 수사인력도 대폭 증가되었다.

초대 책임자는 뉴른베르크 검사 출신의 Walter Rockler였고 1980년에는 부책임자였던 Allan A.Ryan이 그 뒤를 이었다. 18명의 변호사, 6명의 역사학자 등을 포함하여 직원이 47명에 이르렀다. 1981년에는 하원의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OSI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다하도록 레이건 대통령에게 탄원하였다. 같은해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의원등 11명의 상원의원이 OSI 예산감축을 반대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1982년 CBS 텔레비전의 "60 Minutes"라는 프로에 '나치 커넥션'이 나가자 언론인과 의회, 일반대중의 관심과 여론이 폭발하였다. OSI의 수사관이었던 존 로프트스는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정보기관이 나치범죄자들을 그들의 요원으로 몰래 채용하여 활용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지난 35년간 아무도 이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으나 실제로 그동안 크고 작은 단체들이 그러한 사실을 고발하였으나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일 뿐이었다. 수없이 미국 시내를 활보하고 있을 나치전범들의 존재를 알리려 하였으나 관심을 끌지 못하자 Paul Sifton이라는 랍비는 나치의 SS복장을 한 채로 1979년 11월 콩코드호텔에 나타나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④ 미국의 음모, 나치전범의 은폐와 활용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이 나치전범자들을 정보원등으로 고용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온세상에 드러난 것은 클

라우스 바르비 사건 때문이었다. '리용의 도살자'로 널리 알려진 바르비는 1983년 불리비아에서 프랑스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가 1947년부터 1951년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미군첩보대인 CIC에 의해 그가 나치전범임을 알면서도 정보원으로 고용하였던 사실이 밝혀져 미국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공식적으로 정중한 사과까지 하였다. 미국군형법(UCMJ)상의 이적행위등에 해당되는 이러한 행위는 공소시효경과등의 이유로 CIC관계자들은 처벌되지 않았다.

미국의 CIC는 전쟁 종료 직전 나치의 SS, SD, 게슈타포등에 소속된 일부 나치정보장교들을 독일과 점령당국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였다. 이른바 "rat-line"이라는 것을 만들어 수배된 나치전범을 유럽에서 도주하는 것을 돋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는 미국정보기관의 도움으로 미국시민권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한편으로 뉴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벌이면서 나치처단과 인류 정의를 외치면서 미국은 뒷구멍으로 자신의 국익을 위해 전범들을 빼돌리고 있었던 셈이었다.

그 후에도 미국은 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나치추적과 처단의 의지 보다 반공의 결의를 더욱 다지게 되었고 과거 공산주의 탄압에 경험이 있던 나치의 정보장교들을 반공전선의 정보원등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더구나 독일점령을 위해 배치되었던 각국 사이뿐만 아니라 미군부대 사이에도 상호간의 정보 경쟁이 치열하여 전쟁 중의 경력을 불문하고 현재의 정보요원으로서의 가치를 따졌다. 바르비의 경우는 과거 전력을 무시하고 정보요원으로 채용된 하나의 예일 뿐이었다. 이들은 현지 물정을 전혀 모르는 미군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존재였고 특히 독일의 정보장교들 가운데 일부는 소련의 영향하에 든 동구 여러나라의 공산당과 그 당원, 그 활동등에 정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지난 수십년동안 활용한 나치관련자들이 최소한 156명이라는 주장도 있다.

뿐만 아니라 1,558명에 이르는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과학자들이 국방성 및 국무성의 'Project Paperclip'이라고 불리는 작전을 통하여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나치당원이거나 SS대원이었다. Werner von Braun, Theodor Zobe, Herbert Axter등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 그룹 속에 속해 있었다. 이들은 탈나치화정책과 전범처벌의 원칙에서 벗어나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을 위해 각종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었다. 흔히 달로켓, 제트비행기, 그외 상당수의 과학적 성과들이 바로 Paperclip의 유산이라고 말해지지만 동시에 그 유산은 미군을 실험대상으로하여 발전시킨 가공할만한 신경가스등 신경화학 무기도 포함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OSI가 다루고 있던 사건 가운데서 적어도 20건 이상은 미국정부가 활용한 나치전범들이었다.

유럽 여러나라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나치 전범용의자들의 송환 요구에도 몇차례 미국은 거절하였다. 아직 미국이 그 국가를 승인하지 않았다거나 그 재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유고슬라비의 경우 7백건 가량의 송환요구를 하였으나 미국은 단지 20여건에 대하여만 유고슬라비에 송환하였다. 미국의 이와같은 나치범죄자의 보호와 이용은 소련이 "서방국가들이 나치전범들을 품안에 넣고 추방을 거절하고 있다"는 비난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드러내주었다.

⑤ 추방되는 나치전범들

미국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은 나치범죄자들은 대체로 나치 강제수용소의 경비병, 경찰, 또는 나치 정부 관리들이었다. 강제수용소 경비병이었다가 미국으로 이주한 자로서는 Feodor Fedorenko, Karl Linnas, Ivan Demjanjuk등이 유명하다. Fedorenko는 80만명의 유태인 가스실에서 학살당한 트레블링카 수용소의 경비병이었다. 그의 비자에 농부라고 기재했다가 사실이 밝혀져 1981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시민권이 박탈되고 소련으로 추방되어 그곳에서 처형되었다. Linnas는 에스토니아의 타르투 수용소 책임자로 있던 자로서 역시 소련으로 추방되었다. 위에서 설명한 Demjanjuk사건외에도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의 상사였던 Hans Lipschis는 1983년 서독으로 추방되었다.

경찰로서는 전쟁 중 라트비아 경찰책임자였던 Boleslaves Maikovskis가 유명하다. 자신이 라트비아 철도청 서점주인이었다고 속여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나 거짓임이 밝혀져 서독으로 추방되어 재판을 받았다. Serge Kowalchuk는 우크라이나 민병대에서 일했던 사람임이 밝혀져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크로아티아의 내무장관으로 일했던 Artukovic은 자신이 수천명의 세르비아인, 유태인들이 수감된 강제수용소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1984년 유고슬라비아로 추방되어 그곳에서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나치범죄자 추방절차는 너무도 지리한 것이었으며 1980년 OSI 창설 이후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이미 때늦은 것이었다. 추적의 단서를 찾기 쉽지 않았으며 대상자들의 나이는 너무 들어 있었다. 더구나 그것은 상대 국가가 열심히 받아들여 법정에 세우기를 바랄 때 미국은 적극적일 수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스스로의 법정에 이들을 세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추방당한 전범 보다는 안전한 피난처를 미국에서 구한 전범이 더 많으리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것이다.

5. 결론

-정의는 구하고 기억하는 자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

"죽은 사람들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 때문에, 그 보다는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 때문에 이 재판은 중요합니다. 이 재판은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 재판은 기억의 이름으로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기억되지 않는 정의란 불완전하고 거짓되며 정의롭지 않은 정의입니다. 망각이란 아우슈비츠가 절대적 범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부정의입니다. 망각이란 나치의 결정적인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 물론 어느 것도 죽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법정에서의 만남과 증언 때문에 피고인은 죽은 사람들을 다시금 죽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을 다시 한 번 죽이게 된다면 그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본 재판은 기억에 그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유태인으로서 나치수용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엘리 위젤, 그 처절한 경험을 문학으로 형상화한 공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엘리 위젤. 그는 기억이야말로 정의라고 단언하고 있다. 망각은 불의이며 기억은 정의라고 외치는 그는 나치의 범죄를 집단의 기억속에, 그리고 역사의 기억속에 남기는 것으로써 정의를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되풀이하고 만다"는 것은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다.

나치범죄자들이 전쟁이 끝난 뒤 반세기에 이르도록 끝없이 추적당하고 처단당하면서 안전한 휴식처, 피난처를 구하지 못했던 것은 이들을 뒤쫓은 집요한 나치사냥꾼들의 존재, 이들을 뒷받침한 전세계의 양심과 여론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그 범죄에 대한 분노, 회생자들에 대한 추모, 같은 사건의 반복에 대한 우려와 제발방지의 염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것은 모두 수십년 전에 있었던 비극에 대한 인류 공동의 망각에 대한 단호한 거부, 끈질긴 기억의 산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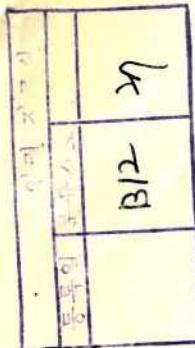
이 속에서 나치범죄자가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해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거나 결국 체포당하여 범행

지로 압송당해야 했다. 체포의 가능성과 공포 속에서의 불안한 생활, 또는 자신이 저질렀던 범행의 현장에서 그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조롱과 손가락질 속에서의 재판이 바로 나치범죄자들이 전쟁의 종료 후 직면해야 했던 운명이었다.

이것은 바로 정의의 실현이었다. 범죄자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게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치범죄의 극악함을 드러내는 일은 물론이고 범죄자는 결코 용서받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준 이러한 과정의 뒤에는 고단한 나치범죄추적자들의 추적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나치범죄자들과 이들의 공모자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 남을 수 없게 되었다. 범죄자들의 손에 회생된 사람들과 그 가족, 나아가 전 세계인들이 정의감을 맛볼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들의 노고 때문이었다. 정의는 결국 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진실을 인류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었던 것이다.

이제 그 끔찍한 세계대전이 끝난지 반세기를 막 넘어 섰다. 그 반세기 동안에도 지구상의 곳곳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지 않았다. 대량의 학살도 멈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전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나치전범의 추적과 처단의 소식은 이러한 학살의 범죄자에게는 경종이 되었으며 인류에게는 전쟁과 학살에 대한 경각심을 끊임없이 일깨워주었다. 최근 보스니아에서의 인종말살정책의 책임자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설치된 전범재판소에서 기소됨으로써 비인도적 범죄는 전쟁중의 행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또 하나의 선례가 되고 있다. 이제 나치범죄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사망하였고 더이상 추적의 필요성도 사라졌다. 그러나 인류의 정의를 향한 투쟁과 추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별기획 : 5·17, 5·18 '공소권 없음' 결정의 반역사성



세계 각국은 과거사를 어떻게 심판했는가

—부당한 권력의 '불처벌'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박 원 순
변호사 · 본지 편집위원

1. 서론 : 민주적 이행과 '불처벌' 문제의 보편화

민주적 변화의 물결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가 지배했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유럽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민주화 바람은 라틴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로 확대되고 마침내 아시아, 아프리카로 불어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편 1980년대 후반에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도 그 전체주의적 사회 해체를 경험하면서 다당제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냉전의 해소는 공산권 국가들의 붕괴와 함께 그에 대항하기 위해 서방국가들에 의하여 건설, 지원받았던 군사정권의 기초도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언제나 단신적이고 효율적으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기존 체제의 저항과 타협, 혼란을 수반하기 일쑤였다. 특히 많은 나라에서 독재정권을 유지했던 군부와 관료의 영향력이 새롭게 성립된 민간정부에 강력하게 잔존하거나 민주적 정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약하여¹⁾ 과거의 비리와 사회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진전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현실 때문에 벌어지는 논쟁 중의 하나가 바로 '불처벌' 문제이다. 이들 나라에서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시절에 이루어졌던 인권침해범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공연한 살해, 고문, 납치, 강간, 약식처형 등 온갖 종류의 악행이 정치권력 그 자체의 정책으로 또는 하부통치기관의 관행으로 자행되었다. 이 잔혹한 인권침해의 주모자와 가해자가 그들의 정책을 뒷받침했던 권력의 붕괴와 더불어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민주적 정부 수립에 필수적인 경과조치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군사정권 또는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권력을 인수받은 체제는 대체로 과도적이거나 미온적이어서 이러한 대규모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실제 처벌의 법정에 서게 된 고위직 가해자들의 숫자는 극히 적은 일부에 제한되었다.²⁾ 이러한 '불처벌'의 현실은 개별 희생자에 그치지 않고 그 사회 전체에 긴장과 대결, 채워지지 않은 정의감과 분노의 분위기를 팽배하게 했다. 더 나아가 독재정권의 붕괴라는 전세계적 현상과 더불어,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현상³⁾임이 분명해지면서 세계 인권단체와 인권기구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⁴⁾ 따라서 이 문제는 어느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권 보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전인류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2. '불처벌' 논의의 여러 쟁점

'불처벌' 문제는 여러 측면과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다. 가해자·피해자의 입장, 개인과 국가 또는 사회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 또 '불처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은 심각한 것이며 여러가지 요구가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입장과 요구 때문에 '불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과정에서 침예한 갈등과 논쟁이 발생한다.

여기서는 국민적 화해와 강력한 처벌의 요구 사이의 철학적 종교적 법률적 논쟁, '불처벌'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진실은폐의 문제, '불처벌'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명령복종행위였다는 변명, 공소시효 만료와 소급효금지 원칙의 허용성, '불처벌'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관할권과 송환의 문제, 형사적 처벌 외의 불법으로서 공직추방의 문제 등에 관하여 각각 간략히 검토해보기로 한다.

1) 국민적 화해 요구와의 충돌

'불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논리들도 사면조치 과정이나 과도적 민간정부의 타협적 정책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거의 인권침해 범죄자들을 끝 없이 추적하다보면 국민적 갈등과 적대의 악순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용서와 사면을 함으로써 국민대화합을 이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오래 지속된 내전의 종결에는 실제로 이러한 화합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제네바협약 제2의정서는 광범위한 사면조치의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제적 필요성과 아울러 화해를 강조하는 논리는 인권침해범죄 처벌의 요구가 복수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형사정책상 응보주의는 형벌 부과를 정당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다. 훨씬 더 강력한 견해는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처벌은 정의에 기초한 것이라는 반론이다. 뿐만 아니라 처벌이야말로 재발 방지의 확고한 다짐이며, 인권 보장 및 민주체제 확립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주장이다. 즉 민주주의제도의 정착은 모든 제도와 단계에 대한 윤리적 태도의 회복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 없이 '법 지배'의 원리, 인간의 존엄성 보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상처에 연연해하는 것은 물은 상처를 다시 열어재치는 일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견해는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국가적 화해를 이루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진정한 국민적 화해는 용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그 용서는 망각이 아니다. 용서는 또한 무관심과도 다르다. 마상 용서는 보복이나 폭력보다는 더욱 용기있는 행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피해자와 그가 소속된 사회가 함께, 밝혀진 가해자의 참회와 재발 방지의 다짐이라는 조건을 성취해야 한다.

또한 범죄자 처벌은 그 희생자가 결정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 중의 하나이며 배상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희생자는 진실 파악과 처벌의 실제적 조건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 실제로 비정부 인권단체들이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범죄자에 의하여 향유되는 '불처벌'은 동일한 범죄의 반복을 고무한다… 동시에 고통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회복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불가양의 권리임에 틀림없다.)

또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용서'의 미덕이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교황 요한 2세의 지적은 기독교의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인 용서만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용서의 강한 요구가 정의의 객관적 요구를 암도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정의는 용서의 목적을 이루고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성경이 주는 어떠한 메시지의 문구에도 용서나 자비가 악, 스캔들, 재앙, 중상에 대한 관용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 어떤 경 우에도, 남용과 그 피해자에 대한 배상, 악과 스캔들에 대한 회복이 용서의 조건이 된다. 정의의 조건 충족이 필수불가결하며 그럼으로써 사랑은 진정한 용서를 보여주게 된다.

2) 진실 규명과 '불처벌'의 상관관계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논의와 조치는 먼저 진실 파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진실 규명이 없는 처벌이나 배상은 자의와 복수로 연결되며 마련이며 진실 파악의 노력이 없는 사면은 결국 불처벌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국민에게 알리는 조치는 모든 과거 인권침해사건의 해결을 위해 풀어야 하는 '첫 단추'이다.

이러한 진실 규명은 그 침해가 어떻게 준비되고 실행되었는가, 누가 지시하고 실행했는가,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등 해당 사건의 전체적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실의 모습은 '공식적'이며 '공개적'으로 대중과 국민 앞에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그같은 인권침해 범죄는 한 개인에 대한 것임과 동시에 그 사회 전체에 대한 사회적 공공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러한 과거 인권침해사건의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그 처리방식과 수준에 대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여기서 진실의 '공식적' 공개라 함은 국가기관에 의한 전면적 객관적 사실조사를 뜻한다. 언론에 의한 보도로서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공적 권위를 가진 중립적이고 전제적인 조사활동과 그 결과야 말로 한 국가의 역사적 기록을 제대로 정립하고 해당 사건의 권위있는 해석을 마련하며 당파적 고려를 초월할 수 있게 한다.

진상 은폐는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을 야기한다. 원한과 분노를 되새기 게 하게 마련이다. 특히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벌어졌던 실종사건에서 그 가족들은 실종된 가족들을 찾아해매며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알 권리⁵⁾를 지닌다고 생각했다. 또한 진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도 어렵다. 또한 이것은 가해자와 그 소속 부대 또는 집단이 역사의 심판을 피하게 만들고 때

로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게 한다.

진실 규명을 위한 방식은 다양하게 채택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같이 인권침해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되기도 했다.⁹ 아르헨티나의 '전국실종자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었으나 소환권, 압수수색권, 기소권 등이 없어 제대로 진상조사를 해내기가 불가능했다. 또한 의회 내에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파라과이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권, 전문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아닌 대규모 인권유린사건 조사에 부적절함이 드러났다.

가해자 또는 그 집단은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자신과 그 집단의 기소와 처벌 가능성, 명예의 손상, 보복의 가능성에 생겨나기 때문에 극력 이를 반대하고 저항하려 한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공모와 협력 사실, 해당 사건의 진실을 고백하는 대신 사면을 주는 등의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 이 제의되기도 한다.

많은 경우, 설사 어떤 정치적 압력과 복잡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사실조사가 어렵다. 가혹행위는 수 년에서부터 수십 년 계속되어왔고, 그 증거는 조직적으로 은폐되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또 다른 보복 또는 명예 때문에 피해자 자신이 무관심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은폐된 사건을 드러내고 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했던 나라들일수록 비밀서류 등을 유지하는 특별한 문서보관소를 가진 경우가 많다. 또한 이 보관소에 과거의 잘못과 인권침해 사실을 밝혀주는 문서들이 대량으로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그와 같은 문서보관소에 대한 접근은 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국민적 수색작업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예컨대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Stasi)'가 보관중이던, 11만 명의 전속 직원과 14만 명의 밀고자들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에 관한 기록은 600만 파일에 이르렀다.¹⁰ 이것은 80킬로미터의 선반에 놓인 분량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한 동독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파일 관리대상에 해당할 정도였다. 이 엄청난 분량의 정보수집에 협조한 정보원들이 바로 가까운 친척, 친구, 이웃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맛보아야 했다. 폴란드에서는 현재까지도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국가보안 협력자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데 따르는 진통을 겪어야 했다. 하원에서 내무장관에게, 지방정부 공무원으로부터 정부의 고위관료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기구와 협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일부 의원들은 그것이 1995년까지 모든 비밀서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하원의 결의와 모순된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를 표명하기도 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국가기관, 국영사업체 등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문서보존을 확

보하는 법령이 1990년 8월 제정되었다. 문서보관소의 제조직과 공공의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는 그같은 자료들이 파괴되거나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면서 피해자들의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명령복종행위자의 책임문제

많은 인권침해사건의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상부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변명을 내놓았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각처의 군사법정에서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들은 상관의 명령을 항변사유로 제출했다.

그러나 그같은 항변사유를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전범의 경우 최고사령관 또는 국가원수 한 사람에게 책임이 한정될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뉴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그 현장에서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피고인이 정부 또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이 그 피고에 대한 면책사유는 되지 못하지만, 정의의 요구에 일치한다고 재판소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처벌감경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¹¹

이에 따라 그 항변을 배척하고 명령을 이행한 것이라도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랐다.¹² 오랜하임의 유명한 국제법교과서 제6판(라우터페트가 개정한 것)은 종전의 내용을 고쳐 책임을 인정했으며,¹³ 이에 맞추어 1944년 4월 영국의 군법교범을 고쳤다.¹⁴

아르헨티나 군사법은 명령을 과장하여 수행함으로써 범죄적 행동을 저지른 하급장병의 처벌을 불허하고 있었다. 이 법 제514조는 하급장병은 그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장 확대하여 집행했을 때 공범으로서 처벌받도록 규정하여 그외의 경우에는 명령을 내린 상급장병만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08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연방법원은 어떤 대령에 의하여 제기된 '명령수행'의 항변을 기각함으로써 위 법률 규정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르헨티나는 민간정부 출범 3년 만에 대령급 이하의 군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법률(법률 제23,521호)을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단순명령 수행자들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말았다.

4) 공소시효와 소급효

수십 년에 걸친 장기간의 독재정권은 피해자들이 국가권력과 밀착된 가해자를 고소·고발하거나 법정에 세우는 것을 오랫동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공소시효가 진행됨으로써 더이상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절대적이며 공소시효가 경과된 사건들에 대하여 기소가 진실로 불가능한가.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¹²⁾ 중의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들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형태로 공소시효를 제거함으로써 지금도 계속 처벌하고 있다. 독일에서와 같이 국내법으로 시효를 연장하는 사례, 영국·프랑스 등에서와 같이 특별법을 두어 처벌을 가능케 하는 사례,¹³⁾ 1968년 유엔이 제정한 시효부적용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관행과 선례에 따라 그 후 독재정권에 의하여 벌어진 각종의 잔혹한 인권침해행위 역시 비인도적 범죄의 유형에 속하며, 이러한 '국제적 범죄'는 마땅히 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 발전해왔다.¹⁴⁾ 공소시효를 더 합리적으로 연장하려는 시도도 있었다.¹⁵⁾ 그러나 국내 입법과 관행은 여전히 엄격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소시효 부적용 이론에 따르려는 의지가 대체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체로 인권침해범죄에 해당하는 고문, 살해, 강간, 약식처형, 불법구금 등은 범행 당시의 각국의 형법에 비추어서도 불법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것에 근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시의 국내법 체계가 그러한 인권침해행위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사후 입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가는 문제가 된다. 이른바 소급효의 인정 문제이다.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 아래 소급효의 금지는 근대 형사법의 가장 중요한 근본원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정에서 예외를 두게 되었다. 이른바 평화¹⁶⁾에 대한 죄, 인도¹⁷⁾에 대한 죄 등이 그것이다. 나치와 그 협력자에 대한 처벌을 둘러싼 적법성 논쟁이 심하게 일었으나 위와 같은 죄의 자연법적 근거, 행위 당시에 존재하던 국제법과 국내법 및 관습법의 존재 등이 반드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국제인권규약 제15조 제2호 역시 바로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다. "행위 당시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일반적인 법원칙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재판과 처벌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법원칙이라면 행위 당시 명문의 처벌법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3. '불처벌'의 지역적 현상

1) 남미지역

남미지역은 가장 악명 높은 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그만큼 '불처벌'의 문제도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 지역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특히 1960년은 군사독재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전환점이었다. '더러운 전쟁(인권운동가와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납치, 고문, 살해, 강간 등의 범죄행동을 말한다)'으로 상징되는 참혹한 인권침해의 재앙이 이 지역 위를 감싸기 시작했다. 이해에 있었던 쿠바혁명은 당시 권력에 있던 자들에게 강권통치의 명분을 주었다. 여기에 미국이 반게릴라전 훈련과 기술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국가정책의 문제로서 종래 존재하지 않았던 중대한 인권침해가 하나의 패턴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남미지역에서 가장 전형적인 '중대한 인권침해'는 역시 실종이다.¹⁸⁾ 거의 대부분의 남미국가에서 발견되는 실종사건은 정작 불법연행, 감금, 고문 그리고 살해라는 등식을 상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대량의 실종사건들의 유족들은 아직도 사라진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남미의 중대한 인권침해는 군부독재에 반대하여 일어선 반란군들의 존재에 의하여 다시 정당화되고 악화되었다.

1980년대 이후 붕괴되기 시작한 남미의 군사정권은 대체로 자신의 과거 범죄를 은폐하고 소추를 방지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조치를 취한 다음 민간정부에 권력을 이양했다. 사면법, 새로운 민간지도자와의 탐합, 증거 인멸, 군부의 영향력 잔존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었던 것이다. 어느 국가에서도 과거 청산, 중대한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이 성공하지 못했다.

(1) 아르헨티나

① 군사독재의 붕괴와 비뇨네 과도정권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 이래 여섯 번의 쿠데타를 경험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정한 군사정권의 지배하에 있었다. 원래 1950년대 초반까지 아르헨티나는 유럽과 비견될 정도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이 나라에 몰아닥친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은 연이은 쿠데타와 그 군사정부 아래에서의 지독한 인권침해로 귀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른바 '포클랜드 전쟁' 패배의 후유증으로 레오폴드 갈

티에리 장군이 1982년 6월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사임한다. 새로이 임명된 레이날도 비뇨네 대통령은 민간정부로 이행하는 18개월의 과도정부를 이끌게 되었다. 군부는 종전 군부지도자들의 폐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과거의 '더러운 전쟁'에 대해서는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을 상대로 한 그 '전쟁'에 대한 '공동의 죄' 의식이 이러한 일치를 가져왔다. 당초 군부는 새로운 정부로부터 자신의 명맥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온존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으나 '5월 광장의 어머니회'와 같은 시민운동이 확산되자 선거를 약속하고 새로운 알폰신 대통령에게 운명을 맡기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처벌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계을리하지 않았다. 이들의 변호 논리는 '국가안보'라는 '전가의 보도'였다. 레이날도 비뇨네 대통령은 그 과도기간 동안에 인권침해에 대한 군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첫째, 1983년 1월 28일 「전복행위와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전쟁에 관한 최종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 과도한 권력행사가 일어났던 점은 인정했으나 군대의 모든 행동은 직무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또한 망명 또는 은신하지 않은 모든 실종자들은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목적'으로 사망한 것임이 틀림없다고 선언했다. 둘째, 같은 해 9월 22일 군사정부는 이른바 '국가적 화해의 법률'이라고 불리었던 법률 제22,924호를 공포했다. 1973년 5월 25일(정치적 범죄에 관하여 마지막 사면이 있었던 날)로부터 1982년 6월 17일(갈티에리 장군의 사임 일자) 사이에 벌어졌던 정치적 동기와 목적에 의하여, 군부 또는 정치적 반대자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모든 형사적 범죄에 사면을 가한 것이었다. 셋째, 정부는 여러 종류의 비공개적 혼령과 명령을 내려 군사정부의 탄압정책과 관련된 문서의 파괴를 시도했다. 특히 비뇨네 대통령은 1983년 정권이양을 목전에 두고 불법구금자에 대한 문서의 파괴를 비밀리에 명했고, 연방경찰은 「반란진압작전」에 관련된 문서를 모두 소각했다.

② 알폰신 민간정부의 성립과 인권정책 1983년 선출된 알폰신 대통령은 군사정권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이양하기 몇 주 전 스스로 자신들을 위하여 선포한 사면령을 무효화시켰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실종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명했으며 과거의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고위 군사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을 시도했다. 시민들로부터의 강력한 압력이 알폰신 대통령 본인이 예정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과거청산'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1984년과 1985년에 걸쳐 군부지도자들이 이른바 '더러운 전쟁' 시기에 수행했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 1994년 1월 멕시코에서 열린 '평화와 인권을 위한 시위' 모습

그러나 그 이후 계속된 경제회복의 난조, 무장반란 등은 군부의 재등장 우려를 평계삼아 과거의 인권침해 범죄자를 처벌의 손아귀로부터 도망케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알폰신은 소환권과 기소권을 갖는 의회 차원의 위원회 설치 요구를 거부하고 그대신 대통령 자신에 의하여 임명되고 자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것이 이른바 전국실종자위원회(CONADEP)이다. 자발적인 증언에 의존했을 뿐 이 위원회는 소환권이 없었기 때문에 군부의 혐의자들을 조사할 수가 없었다.¹⁶⁾

한편 반동의 분위기는 의회로 하여금 기소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을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 '푼토 파날(Punto Final)' 법이라고 불리었던 이 법은, 일정한 시한 이후에는 더이상 기소할 수 없도록 처벌 시한을 설정했다. 그 당시까지 약 700명의 장교에 대하여 1,700건 가량의 사건이 기소되어 있었다. 많은 경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법으로써 이제 더이상 증기가 확보된 다수의 군인들조차 기소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1987년 알폰신 대통령은 군부와의 타협책으로 이른바 '직무준수법'을 만들어 명령에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중령 이하의 군인들이 직무상의 행동으로 저지른 범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책임을 면제하고 말았다. 이 법률은 30일 이내에 반대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고위 장교들에게조차 무죄 추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하급 장병이 판단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거나 행위 당시 그 불법성을 알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없

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문제되는 개인은 상관의 권위에 의하여 명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강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에 의하여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법률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개별적인 사건들을 평가할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변호사들에 의하여 위헌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987년 6월 22일 대법원은 3대 2로 합헌을 선언했다. 반대했던 판사는 그 법률이 합법화 또는 정당화함이 없이 일정한 행동을 사면하려는 의회의 기도라고 보았고, 찬성 입장에 섰던 판사는 사면의 일반적 성격은 사면받는 사실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을 뿐 개인적 성격, 계급 등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따라 당시 계류되어 있던 300명의 장교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다.

③ 메넴의 등장과 '불처벌'의 확대 1989년 등장한 메넴은 더욱 노골적으로 과거의 범죄자들을 사면·면책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2명의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7명의 군부지도자들이 기소되었고¹⁷⁾ 18명이 기소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메넴 대통령은 이들을 대부분 사면해버렸다. 과거처벌 작업이 시작된 지 6년 만에 단지 두 사건만이 유죄로 결론이 났고 5명의 주요 범죄자들이 구금되었다. 아르헨티나를 탈출하여 미국으로 갔다가 송환된 카를로스 메이슨 장군도 그 경우 중의 하나였다. 유명한 장군들로서 인권침해범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았던 비델라, 16년형을 선고받은 비올라 등이 모두 사면 명단에 있었다. 이들은 그 독재기간 동안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행동했던 것뿐이었으며 자신들의 행동은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대한 사면은 자신들에 의하여 "국가적 평화의 성취에 큰 공헌"을 했다고 치하하는 철면피한 모습을 보였다.

(2) 칠레

1978년 칠레의 군부정권은 스스로의 손으로 1973년 9월의 쿠데타와 1978년 3월 사이에 벌어진 각종 실종사건 등의 범죄에 관하여 자체 사면령을 발표했다. 1978년 3월 19일의 포고령 2,191호가 바로 그것이다. 1990년 3월 집권한 아일원 대통령은 이 사면령에 관하여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칠레 대법원은 사면령이 단순히 형벌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조사권한까지 박탈한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실종자의 행방을 법원이 조사하는 것까지 봉쇄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사건이 그대로 끝날 수는 없었다.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한 1973년부터 아일원 대통령에게 정권을 인계한 1990년까지 16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진 인권유린사건들은 그냥 덮어버리기에는 너무도 중대하고 심각했던 것이다. 이 사건들의 진상조사와 처벌을 둘러싸고 논쟁과 투쟁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군정하에서 실종되거나 학살당한 정치인, 시민 등 2천여 명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특별검사의 임명과 전권을 수여하는 이른바 '아일원 법안'을 둘러싸고 이에 반대하는 군부와 미온적임을 지적하는 인권단체 쌍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새로운 조사기관의 설치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이 법안은 그 동안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의회의 속성, 피노체트의 존재로 말미암아 의회마저 위 사면령을 폐지하거나 위헌선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서 나온 대안이었다.

1990년 5월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의하여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심각한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사법적 기능이나 개인의 책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못했고 다만 '배상의 공정한 조치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를 권고'하는 일이 주된 임무였다. 이 위원회에 피해자, 가족, 인권단체들의 정보가 산더미처럼 접수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약 2천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1992년 1월 31일 희생자 가족들에게 연금 또는 일시불의 손해배상 지급, 추가적인 사건의 조사 등을 가능케 하는 법률 제19,123호가 통과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 법으로 위 업무를 담당하는 배상과 화해를 위한 국가기구가 설치되었다. 몇 개의 사건은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게 되기는 했다. 해외에서 일어나거나 또는 1978년 사면령 이후에 발생한 사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도 칠레가 경험한 엄청난 규모의 인권침해사건을 재정리하고 응분의 대응을 하는 데는 전혀 미칠 수 없는 것이었다.

(3) 우루과이

1985년 민간정부가 들어서기까지 1973년부터 12년간의 군사독재는 우루과이 국민을 억울한 죽음과 고문, 실종 등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줄리오 마리오 상 카네티 지도하의 새로운 민간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일반 법정에 인권침해사건들을 제소하기 시작했다(2년 동안 약 180명의 군인과 경찰관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6년 12월 군부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우루과이 의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재조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만 사면법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에 모든 인권단체들은 이 법의 폐기를 주장하며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캠페인을 벌여나갔다. 이것은 우루과이 헌법이 25%의 국민이 국민투표를 요구하면 실시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한 것이었다. 전국적 캠페인을 위하여 국민투표 운동전국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 위원회가 내세운 주장의 요지는 분명했다. 과거의 책임자를 치벌함으로써만 희생자들이 법률적으로 배상받게 되고, 미래의 반복이

방지될 수 있으며, 진실을 안 연후에야 국민들은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우루과이의 군사독재가 결정을 이루던 1981년에 탄생한 인권운동단체, '평화와 정의를 위한 봉사'의 창설사이며 제수이트 교단의 신부였던 루이스 페레즈 아귀레의 이야기이다.

페레즈 아귀레 신부의 국민투표 찬성은 보복과는 다른 진실의 갈망에 근거해 있었다. 그는 자신을 고문한 사람을 알고 있었고, 몬테비데오의 길가에서 만난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그를 용서했다. 그와 함께 그는 "국가가 고문자를 그를 위하여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임을 지적했다. 어떤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고문자를 용서한 것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다. "깊은 기독교적 신념으로부터 내심의 개인적인 결단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많은 내적 고민이 요구된다. 그것은 진정한 화해여야 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국가가 대신 그것을 해주겠다고 요구할 수는 없다. 진실이 말해진다면, 아마도 우리 국민은 대부분의 고문자를 용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관용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국민의 압력에 굴복한 우루과이 정부는 마침내 국민투표 실시에 동의했다. 그 대신 정부는 사면법의 거부가 군부의 개입과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는 선전에 몰두했고, 이 위협과 공포에 못이긴 국민은 58 대 42의 비율로 그 법안의 유지를 손을 들고 말았다. 이 국민투표 결과는 차후의 과거청산 요구운동을 무디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4) 파라과이

파라과이는 다른 남미지역보다 훨씬 늦게까지 완강한 군부독재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1954년에 집권한 스트뢰스너 장군은 34년 동안 이 나라의 절대적인 통치자로 군림했다. 그가 집권했을 때 이 나라는 근 1백 년에 걸친 내우외환으로 피폐해져 있었다. 그의 집권으로 평화와 안정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정직을 공산주의자나 테러리스트로 몰면서 그가 없는 파라과이는 무정부주의나 폭력의 악순환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그가 약속한 안정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가톨릭을 제외한 모든 기관, 단체들이 스트뢰스너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고문과 약식처형, 실종사건이 잇따른 것은 다른 남미의 군사정부와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 영원할 것 같은 독재정치도 1989년 2월 3일, 로드리구에즈 장군의 쿠데타에 의해 끝나고 민주적 이행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어떠한 과거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치별의 결정은 따르지 않았다. 당분간 그 범

죄자들은 면책을 향유하게 되었다. 특히 스트뢰스너는 브라질에 망명중이고 두아르테 베라 장군은 볼리비아 대사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여 개의 고문사건이 그 피해자 가족들에 의하여 제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 피고인들을 위해 맡고 있는 변호인들은 시간 지연작전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1960년대 내지 1970년대 일어났던 그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전 정부의 구성원이었던 이들은 1989년 그 정부 전복 이전에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하여 저질려진 인권침해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1993년에 벌어지는 대통령선거는 이 문제에 관한 첨예한 입장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스트뢰스너 장군 밑에서 장기독재를 이끌었던 콜로라도당의 우모시 후보는 과거 정권의 공무원과 군대의 득표를 위하여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푼토 페널'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말한다. "왜 과거를 파는가? 나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고 더 낙관적인 미래를 보고자 한다"라고. 그러나 다른 지도자들은 "스트뢰스너 독재의 도둑과 경찰이 저지른 절도, 사기, 고문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기도"라고 비판한다. 어느 무소속 후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의는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파라과이는 아직 이 논쟁과 혼란 속에 있다.

(5)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사용되었던 독립적인 조사위원회의 모델이 유엔의 중재자에 의하여 엘살바도르에서도 이용되었다. 1991년 4월 정부와 국가해방전선 사이에 이루어진 이른바 '멕시코 합의'는 '진실위원회'의 설치를 담고 있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1992년 1월 16일의 평화협정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전 미주인권재판소장이었던 토마스 부루겐달 교수를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유엔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된 이 위원회는 로메로 대주교 암살사건을 포함하여 1980년 이래 일어났던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을 지닌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얼마나 진실 발견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한 앞으로 이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6) 과테말라

1954년 개혁적인 민간정부가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너진 이후 과테말라도 다른 남미국가와 마찬가지로 군사독재의 온갖 폐해를 경험해왔다. 반공이라는 이름 아

래 아무런 법률적 견제장치 없이 고문과 살해가 열병처럼 유행했던 것이다. 1985년 군부는 새로운 민간정부의 선출에 동의했고 크리스찬 민주당의 케레조가 집권했다. 그러나 그는 군인들의 '불처벌'과 민주적 통치의 기초를 세운다는 서로 모순된 두 가지 약속과 함께 취임했다.

남미지역의 다른 나라에서 형식적으로나마 과거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의 자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캐레조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만 건의 약식처형과 실종사건이 전혀 조사되지 않았고 책임자들은 여전히 군대의 지휘관으로 남았다. 캐레조는 인권침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일반 형사법원에 맡겨두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실종자들의 운명을 조사할 독립위원회 설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종전의 군사정권은 스스로를 사면하는 사면법을 제정해두고 있어 법적 처벌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은 꼭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의 재발을 가져왔다. 의회에서 임명된 인권 옴부즈만¹⁸⁾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캐레조 집권 5년간 588명의 약식처형과 140명의 실종사건이 있었다.

1991년 1월 새로이 대통령이 된 세라노 엘리아스는 취임식에서 “법을 파괴한 사람은 예외없이 처벌될 것이다”라고 언명했다. 그것은 과거의 인권침해자들의 기소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길거리 어린이들의 살해에 가담한 경찰관 4명에 대한 기소 등이 이루어져 세라노 정부의 군부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역시 취임 3개월 동안 180명의 약식처형, 46명의 실종, 암살사건 등은 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데 충분한 것이었다.

(7) 떠루

페루 역시 심각한 인권의 고난을 겪었다. 특히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이른바 '빛나는 길' 등 반란군과의 전투과정에서, 그 위기를 악용한 정부에 의하여 수많은 유형의 인권침해가 있어왔다. 페루의 11년에 걸친 군부독재는 1980년 종막을 고하는 듯했다. 1979년 새로운 헌법은 자세한 인권보장, 다당제, 삼권분립 등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새로이 출범한 페르난도 벨라운데 정부는 군부에 대한 민간우위를 확립하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민간정부의 지도자들은 군부의 인권침해가 마치 불가피한 전쟁수행의 결과라는 것을 묵인했다. 그러나 이어 들어선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은 1985년 선거에서 50%의 지지율을 확보한 절정의 인기, 전임자의 인권정책에 대한 평소의 비판 등으로 인하여 인권의 획기적인 신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그의 인기는 곧 시들해졌고 인권상황의 본질적인 개선도 없었다.

'불처벌'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다음 두 가지 사건이 흥미롭다. 아르타자 사건에서 해병대 대위인 아르타자가 여러 건의 실종, 학살사건에 관련되어 민간재판소에 회부되자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 납치되어 사망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가족은 찾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 그를 대리하여 그를 재판할 권한이 민간법정에 없다는 항변을 제기했고 민간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여 군사법정으로 이송했다. '유령재판'이었던 셈이다. 1986년 6월, 리마와 칼라오에 소재한 3개의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빛나는 길' 포로들이 공동으로 감옥 안의 시설과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여 난동을 피웠다. 이를 진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항복한 죄수들 수백 명조차 처형해버림으로써 문제가 확대되었다. 민간법정의 판사가 그 작전의 책임자인 조지 라바날을 기소했으나 군인들은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맞섰고 대법원이 이들의 편에 손을 들었다. 그 후 군사법원은 중요한 책임자들을 모두 제외하고 겨우 두 명을 기소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때로는 검찰이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방폐 노릇을 하기도 했다. 경찰의 광범한 수사권과 사법부의 통제를 막음으로써 인권침해의 법적 수단이 되었던 '반테리리스트법'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1988년 상원에서 이른바 '베르날스 위원회'가 생겨나 폭력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설치되었다. 그 후에도 의회 내에 인권문제를 다루는 두 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그 결과는 미미했다.

2) 아프리카 지역

(1) 심미세력의 잔혹행위와 그 불처벌 문제

(1) 아프리카의 민족정부와 그들的政治
노예무역으로 상징되는 아프리카 각국의 고통은 식민지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식민지시대가 종료한 이후에도 그대로 남았다. 노예로서 북미, 유럽, 중남미에 끌려간 아프리카인은 그 '신세계'에서도 여전히 노예 또는 '하류계급'의 생활을 면하지 못했다. 현지에 남은 아프리카인들은 식민지 종주국의 착취와 인권유린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대한 책임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식민국들이었음을 말할 것도 없다. 식민지 종주국들은 아프리카인들을 상대로 강간, 약탈, 살해 등 온갖 종류의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원주민들의 독립운동이 강화되면서 제국주의의 열강은 이들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의 강도를 더했다. 캐나다(1950년대), 알제리아(1950~1960년대), 양골라·모잠비크·기니아(1960~1970년대), 짐바브웨(1960~1980년대), 나미비아(1960년대~1989) 등에서의 독립운동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예컨대 캐나에서는 수만 명이

1950년에서 1963년 사이에 영국 반란진압군의 손에 살해되었다. 그러나 그 후 어느 서구 제국주의 열강도 그들의 식민지에서 저질렀던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거나 배상한 바 없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전범들에 대하여 처벌의 원칙을 별전시켜온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며 모순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범죄성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사면하는 법령을 만들어 두 기조차 했다. 예컨대 써든 로데지아 영국 총독은 짐바브웨 독립 직전에 일반 사면령을 공포했다. 이 사면령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저항행위와 함께 그것을 진압한 군인과 경찰 등의 행위를 한꺼번에 사면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와 같은 식민지시대의 가혹한 인권침해와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자손들은 공식적 사과,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1992년 7월 다카르에서의 아프리카통일기구(OAU) 정상회담은 유럽이 과거 식민주의와 아프리카인의 노예화에 대해 배상하는 책임의 연구와 준비를 위해 전문가그룹을 설치하기로 결의했다.¹⁹⁹ 특히 태평양 연안의 작은 섬나라 나우르는 이미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자연자원의 식민지적 착취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요구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내놓고 있다.

(2) 우간다

그 후 독립된 아프리카 각국에서는 독버섯처럼 독재정권이 출현했다. 이들이 엄청난 인권유린을 자행했고 마침내 퇴조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대로이다. 여기서는 우선 아프리카에서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성공한 우간다의 경우를 본다. 이디 아민의 장기독재는 1986년 요웨리 무새베니의 권력장악으로 무너진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정권을 뒷받침하던 정권안보 체제는 소멸하고 그대신 인권침해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1962년 우간다 독립 이래 1986년에 이르기까지 벌어진 모든 인권침해범죄에 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절차와 결과는 거의 매일 텔레비전에 방송되었고 가장 인기있는 시청률이 되었다. 1981년 음바라라(Mbarara) 지역에서 일어난 7명 실종 사건의 명령 책임자로 지목된 크리스푸스 라카시이시 전 장관이 1988년 6월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밀턴 오보테 대통령 시절, 공포의 국가안전부 정치담당 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7명의 살해를 실행했던 또 다른 국가안전부 요원이었던 엘리아스 와나마 역시 기소되었다. 차량사고로 위장발표된 성공회 대주교 자나니 루우움에 대해서도 이디 아민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살해되었다는 증거들이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위 위원회의 노력은 좌절을 겪기도 했다. 1987년 이웃나라들로 도망간 범죄자들의 송환에 실패했던 것이다. 탄자니아의 다르에 있는 치안재판소 판사는 존 찰스 오플레 중령을 송환해달라는 우간다의 요

청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그 청구를 기각했다. 루웨레오 삼각주 지역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그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었다. 살해 목적의 납치 혐의를 받았던 정보장교 피터 오윌리에 대한 송환 역시 캐나고등법원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이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과거의 범죄자를 조사, 소추, 처벌하는 데 부분적으로 실패하고 만 것은 교통편의 문제, 인력부족, 소급효 금지원칙 준수에 따른 법률적 장애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3) 기니아

1984년 4월 세쿠 투레 정권이 무너지고 새 정부가 선 기니아의 경우에도 물 치별' 현상은 예외가 아니었다. 새 정부는 전 정권의 어떠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기를 꺼렸다. 의회 안에서의 반대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의 경찰관을 내무장관으로 임명할 정도였다.

(4) 배달

(4) 배닌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적 이행을 이룩한 나라로 손꼽힌다. 1990년 2월 배닌 의회는 맑스-레닌주의의 독재로부터 다원적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을 결의했다. 전 정부는 정권이양의 불가피한 상황을 파악하고 사전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과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예컨대 망명한 시민들의 귀환을 허용하는 사면법, 독립성이 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권위원회의 설치, 정부관리들의 재산을 감사하는 위원회의 설치 등이 그것이다. 의회는 그러한 조치를 확대하여 새로운 사면법, 새로운 재산감사위원회를 제정, 설치했고 과거 정권에 의하여 축출된 군인들을 복직시키는 법령도 제정했다.

그러나 배닌의 경우에도 일종의 사면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예외는 아니었다. 1991년 4월 12일 면책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1972년 케레쿠 전 대통령이 1972년 집권한 이후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 면책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감자 살해와 고문 등 여러 사건에 관련되어 있던 케레쿠 대통령의 면책은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1984년 사망한 한 수감자의 동료들이 고발한 진정에 따라 두 명의 보안요원이 살인, 횡령, 고문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5) 말리

23년간이나 이 나라를 지배하던 무싸 트라오레 대통령이 1991년 3월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전복되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규모의 시위들이 폭력적으로 진압당한 직후였다. 트라오레 대통령과 전 내무장관이 독직과 1991년의 시위대 학

살공모 혐의로 공개재판을 받았다. 이들에게 붙여진 이른바 ‘피의 범죄’ 혐의는 다수의 전직 고위관리에 대한 소송의 홍수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군인들은 제외하려는 경향이 높았지만, 특히 트라오레 대통령을 전복하고 ‘국민구제 과도위원회’를 이끈 뚜레 장군에 대하여 1992년 9월 면책을 주었다.

(6) 쿠고

1991년 2월에 열린 의회는 국가의 장래와 과거의 인권침해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큰 논쟁을 벌였다. 콩고에는 1960년대 이후 1977년의 브라자빌 주교를 포함하여 약 3천여 명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살해 등 혹독한 인권침해가 잇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사쓰 느구애쓰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의회는 국민적 화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거의 모든 정치적 범죄와 인권침해에 대하여 일반사면을 선포했다. 어떤 인권침해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안전위원회가 해소되고 혁명재판소가 폐지되며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었다. 1992년의 정치적 혼란 이후에 들어선 새로운 지도자도 역시 일반사면을 확인했다. 사쓰 느구애쓰 대통령이 재임했던 전기간을 포함하여 면책을 주었던 것이다.

3) 아시아지역

(1) 아시아지역 '불처벌' 문제의 특성

아시아지역에서도 인권침해 범죄자에 대한 광범한 '불처벌' 현상이 보편적으로 일어났다. 살인, 고문, 납치, 자의적 구금 등에 가담한 군인과 경찰이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 인권침해가 '불처벌'의 담보하에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폭압과 '불처벌'이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적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제도화의 명분과 근거는 '국가안보'이다. 이것 역시 이 지역에 강력하게 존재한 냉전과 긴장의 산물이다.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법률과 관행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 보안경찰과 군인들의 면책이 보장된다. 인도의 경우 무장병력특권법 제6조는 수권을 받은 장교, 영장 담당 장교, 기타 고위 군장교들의 민간인에 대한 행동의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면책법은 "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 행한 법률적 또는 다른 행동"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면책시키고 있다.

(2) 타일랜드

1932년 절대군주제가 종말을 고한 이후 타일랜드는 17번 이상의 군사쿠데타를

경험했다. 특히 1976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학생들의 시위는 무자비하게 진압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압의 핵심적인 책임자의 한 사람이었던 프라파스 장군은 유틸리티에 불교사원의 숙련가 되으로써 그 책임을 짓 것으로 간주되었다.

타일랜드의 '불처벌' 경험은 1992년 5월에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의 폭력적 진압자들에 대한 경우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났다. 그 당시 타이의 수십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것은 외신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 비무장한 사람들을 향하여 타이의 보안군은 발포하여 최소한 52명을 살해하고 수백 명을 구속했다. 이때 연행된 수백 명의 행방과 운명은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 며칠 후 타이 수상은 사임하고 말았지만 사임 직전 그 자신을 포함한 군부지도자들을 사면하는 칙령을 선포했다. 새로이 구성된 의회는 그 칙령을 무효라고 선언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그 선언을 불소급이라고 판결하여 결국 그 칙령은 유효하게 되었다. 일부 정치인들이 사건 당시의 수상을 비롯한 군부지도자들을 고발했으나 타이의 경찰은 무혐의 처리하고 말았다.

(3) 필리핀

마르코스 지배하 필리핀의 인권탄압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만큼 이 나라의 민주화와 그 한계는 더욱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972년에 내려진 필리핀의 계엄령은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전통을 한방에 산산조각내고 말았다. 그 이후 대규모로 이루어진 일상의 인권유린은 필리핀을 국제인권단체 사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인권오명국의 하나로 올라놓았던 것이다. 민간인의 살해, 고문, 실종 등 권력에 의한 정치적 폭력은 필리핀의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일상화 되어버렸다. 그러나 1987년 2월의 평화적인 혁명은 단암과 민관, 무례와 외세의 지배로부터 이 나라를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새벽의 약속'으로 비쳐졌다. 신제로 집권 초기에 아키노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 제정, 대통령 직속 인권위원회 설치, 각급학교의 인권교육, 공산당 및 신인민군(NPA) 시노사를 포함한 정치범 석방 등으로 인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1987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아키노 행정부의 인권정책의 방향과 해석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깨어졌다. 반란에 대한 '전면전' 정책과 '민간자위봉 사자조직'이 민간인을 무장하여 '이이제이(以夷制夷)' 방식으로 광범하게 인권침해를 야기했던 것이다. 수많은 종교인, 인권운동가, 시민들이 백주 대낮에 살해되거나 일쑤였으며 고문과 정치적 구속자가 늘어났다. 1989년 한 해 동안 312건의 고문, 141건의 약식처형, 43건의 실종사건 그리고 2천 명이 넘는 정치적 구속이 이루어졌다. 군부의 포로가 된 민간정부의 한계로서 필리핀 사례는 인용될 만하다.

이같은 인권침해의 재발은 과거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관용, '불처벌'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그 파탄 과정을 살펴보자. 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필리핀에서는 가장 존경받았던 인권변호사 호세 디오크노가 그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 활동에 기대를 모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과거와 현재의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1972년 이후의 계엄령시대에까지 15년을 소급하여 그동안 있었던 인권침해범죄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활동은 조만간 난관에 봉착했다. 수많은 고발이 잇따랐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재정과 인원 지원 없이 7명의 위원들이 그 사건들을 처리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 위원들은 모두 중복된 다른 업무들을 맡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활동을 가로막았던 근본원인은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데 대한 군부의 강력한 저항에 있었다. 디오크노 위원장은 1981년경 고문 끝에 사망한 인권운동가 바비 드 라 파즈를 비롯한 여러 사건에 관련되어 악명이 높았던 롤란도 아바딜라를 지목하여 이 한 사람이라도 상징적으로 조사, 기소하려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디오크노는 암으로 사망했고, 1986년 말경 인권위원회의 활동은 거의 정지되고 말았다. 1987년 대통령궁 앞에서 있었던 농민시위 진압과정에서 17명의 시위대원이 사망했고, 이에 1명을 제외한 전원들이 사임함으로써 인권위원회는 완전히 종착점에 도달했다. 1987년 2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고 그 안에 인권위원회 설치조항이 있었으나 이것은 이미 행정부 내의 한 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군부는 신인민군의 '만행'을 이 위원회에 고의적으로 대량 제소함으로써 이 위원회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군인들을 수사, 기소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었다. 군부 자체의 수사의지 결핍과,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협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포고 1,850호는 군인의 범죄를 모두 군사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어 이것이야말로 인권침해에 가담한 군인들의 처벌을 불가능케 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공식적인 군인의 신분을 가지지 않은 민간 무장병력의 경우 민간법정에서 얼마든지 재판이 가능했음에도 전혀 기소된 바가 없었다. 이것은 결국 필리핀 정부의 인권침해범죄 처벌 의지의 실종을 확인케 한다.

이러한 정부의 무성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권단체들은 새로이 일어나는 살해, 실종사건에 매달려 과거 범죄자의 처벌에 관심을 쏟을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이러는 사이 과거의 인권침해 범죄자들은 '화려한 변신'을 시도했다. 마르코스 치하 최대의 악명을 날리던 롤란도 아바딜라는 일로코스 노르테 주의 부지사가 되었으며, 다바오 경찰청에서 고문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경찰관 한 명은 마닐

라경찰청으로 영진하기도 했다.

과거의 인권침해 불처벌이 가져온 결과, 필리핀에서 새로운 대규모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대로이다. 필리핀의 '불처벌'의 가장 최근 사례로서는 안드레스 프리지날 사건이 꼽힌다. 그는 1992년 3월 6일 보안군에 의하여 체포된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8개월 동안 가족들과 변호인이 그의 소재를 찾아나섰으나 군부대는 그의 연행과 구금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가족들은 영장에 대한 이의를 고등법원에 제기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기도 했다. 지칠 줄 모르는 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의 활동으로 프리지날은 군대의 '안전가옥'에 구금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마침내 석방되었다. 침묵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구금, 고문 등을 폭로했다. 그러나 그 가해자들의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필리핀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방글라데시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은 1백만에서 3백만 명에 이르는 방글라데시인의 죽음을 가져왔다. 독립 후 다수당이 된 아와미 리그는 전범과 그 부역자를 재판할 것을 다짐했다. 1972년 3월 현재 약 3만 명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그 가운데 단지 2,850명에 대해서만 재판이 시작되었다. 1973년 11월에는 이들에 대한 일반사면이 선포되었다.

1975년 무지바르 라흐만 대통령과 40여 명의 추종자들이 군대가 동원한 탱크에 의하여 암살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은 책임있는 장교들을 사면했고 이 결정은 새로운 수정헌법에도 명기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국민들의 시위와 봉기 끝에 장교들은 리비아로 망명했다. 1982년부터 1990년까지는 에르샤드 장군이 이끄는 군사정권이 이 나라를 지배했다. 에르샤드 장군이 1990년 12월 사임한 직후 구정권의 잘못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1991년 3월 그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무기소지,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혐의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1991년에는 또한 초대 대통령의 암살자에게 혜택을 주는 헌법상의 면책을 제거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5) 네팔

네팔은 정당 없는 왕정이 30여 년간 지배해왔다. 그러나 1990년 4월 네팔의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을 위한 투쟁이 공산주의자 그룹과 또다른 정치집단, 인권단체, 전문가, 기타 사회단체들이 모인 '범좌파

전선', 네팔의회당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비렌드라 네팔 왕이 다당제 수용, 총선 실시 등에 동의했던 것이다. 이 투쟁과정에서 1990년 4월 6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카투만두 시민들을 향하여 경찰이 무자비하게 사살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국왕의 동의는 바로 그같은 희생 위에 떨어졌던 것이다.

새로 수립된 과도정권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왕정하에서 일어난 심각한 인권침해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두 위원회가 성립되었다. 하나는 30여 년간 이루어진 실종사건을 조사하는 '실종위원회'였고, 나머지 하나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과정(1990년 2월에서 4월까지)에서 일어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조사할 이른바 '말리크 위원회'였다. '실종위원회'는 1985년 6월에 일어난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연행되어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에 관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자료요청, 인터뷰 등의 조사를 진행했고 보고서까지 냈으나, 이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한편 '말리크 위원회'는 비공식적인 보고서에서 위 기간중에 45명이 사망하고 2,3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어떤 법률이 적용 가능한지 특정되지 않았고, 또한 발사에 가담한 경찰을 개별적으로 가려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 보고서에 따른 기소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같은 불명확한 위원회들의 조사활동과 정부의 입장 때문에 자의적 구금, 고문 등이 재발하기 시작했다.

4) 동구권지역

소련 붕괴와 함께 다른 동구권지역 국가들도 과거 공산정권의 물량을 목도했다. 공산정권의 지배하에서 이루어졌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관한 처벌 요구와 재평가의 움직임이 터져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때로는 이것이 지나쳐 많은 나라에서 전 공산당원들에 대한 일종의 '메카시즘' 선풍이 휘몰아쳤고 여론재판과 '마녀사냥'이 되살아났다는 비판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의 법률에 의하여 집행된 행위를 모두 범죄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에서도 인권침해범죄가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처단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상징적인 몇 사건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특히 구소련의 경우 스탈린 치하에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빼앗은 시베리아 추방, 1930년대와 1940년대의 해아릴 수 없는 사람의 불법 처형, 타타르족·불가 등 일계 민족의 강제추방 등에 관하여 스탈린 사후 1950년대 비밀경찰의 책임자 배리아를 비롯한 100여 명의 처벌이 있었지만 나머지 중요한 관여자들에 대한 별다

른 처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다. 이들은 그 이후 경찰, 검찰, 법원 등에 남아 계속 인권침해범죄에 개입해왔다. 그 이후 지속된 정신병동의 남용, 정치적 반대자의 불법적 구금 등 기본적 인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구소련 시민들의 인권침해에 커다란 기능을 했던 KGB를 비롯한 보안기관들 역시 개혁의 수술대에 올라갔으나 그 근간은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폴란드에서는 얀 올체프스키가 수상이 됨으로써 공산당 간부들과 비밀경찰요원들은 전전긍긍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인권변호사로서 1980년대에 벌어졌던 의문의 사건들²⁰에서 변호인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위 사건들의 최종적인 배후는 바로 공산당의 정치공작 파트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명의 비밀경찰 장군들이 구금되었고 의문의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다. 이 장군들은 내무부 조직 내에 범죄조직을 설치, 운영한 것 외에도 5가지의 죄목으로 재판받았다. 그외에도 공산정권하에서 이루어진 몇 건의 정치적 암살, 고문 등과 같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조사와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었다.

불가리아에서도 몇 건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불가리아 국가원수 겸 공산당수 토도르 히브코프, 전 수상 아타나소프, 전 기획부장관이었던 옵챠로프가 각각 7, 10, 9년형을 선고받았다. 히브코프에 대해서는 터키계 불가리아 시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집단적인 범죄로서 개인적인 책임을 확정짓기 어려워 더 이상 기소되지 않았다.

헝가리에서는 1991년, 1944년 12월 21일부터 1990년 5월 2일까지 사이에 벌어진 심각한 범죄로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처벌되지 못했던 범죄에 관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받았고, 다만 1956년의 헝가리사태 진압과 후속 탄압조치가 전쟁범죄로 선포되고, 이에 관한 소급적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위헌판결 직후 대통령은 되고, 이에 관한 소급적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위헌판결 직후 대통령은 개인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는 대신 "과거의 탐색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제안으로 진실에 대한 추적을 증진하고 개인의 책임을 확고히 해둘 역사위원회의 설치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제안은 결코 실현되지 못했고 시효에 관한 논쟁도 끝나고 말았다.

루마니아의 국가원수 차우세스쿠에 대한 기소와 처형은 전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그는 1989년 12월 25일 사형선고를 받고 당일로 처형되었던 것이다. 혐의는 널리 알려진 대로 6만 명의 희생자를 놓은 제노사이드 범죄, 국민과 국가에 대항하여 무장행동을 조직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권위를 해손한 행위 등이었다. 9개월 후 그의 아들 니쿠는 군사법정에서 9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외에도 차우세스쿠와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했던 국가위원회의 부위원장, 내부장관, 제1부수상, 루마니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 등이 역시 제노사이드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00명 이상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혐의로 장군들이 역시 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는 보안군 사령관이었던 블라드 장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외에도 약 1,700건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91년 10월 초순경 옛 공산당 간부와 인민군 장교 그리고 비밀경찰요원 및 협력자가 행정부나 국영 언론기관, 대학, 국영사업체 등에 앞으로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989년 12월 그 직전에 있었던 시위사건의 진압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해 의회에 설치된 위원회로부터 기원한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여 30여 명의 경찰이 기소되고 그 중 몇 명은 1990년 봄 4년의 징역형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았다. 당초의 위원회는 1990년 6월의 새로운 선거 결과 재조직되고 내무부 문서에 접근하여 그 조사범위를 과거의 고급 정치관리들의 행적에까지 확대했다. 나아가 의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행정부와 군대, 사법부 내의 정책결정 부서의 직책 담당자는 이 법에 따라 국가보안기관과의 협력이 없었음을 서약해야 했다. 한편 1968년의 이른바 '프라하의 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1992년 2월 내무장관에 의하여 수행된 조사결과가 공개되어 반역죄로 기소되었다. 구스타프 후사크에 대한 심리가 열렸으나 그는 석방되어 1991년 11월 사망하고 말았다. 나머지 8명의 피고인들도 시효만료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평화의 보호에 관한 1950년대로부터의 법률이 이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부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인권침해범죄에 관한 상당수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는 동독을 탈출하는 시민을 쏜 경비병, 선거결과를 조작한 관리들도 들어 있다. 동독 국가원수이며 공산당 당수였던 에르리히 호네커와 국가보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재판도 열렸다. 이들에 대한 혐의의 주된 내용은 바로 위 경비병에 대한 사격명령을 내린 데 있다. 정보기구(슈타지) 책임자였던 마일케는 1932년에 있었던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었다. 그는 동독에서의 많은 인권유린사건에 관련성을 의심받았지만, 증거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오래 전에 있었던 살인사건과 그 당시 수집되어 있던 증거로 기소당한 것이다. 위의 경비병에 대한 재판에서와 같이 동독의 국경법이 무효로 된 경우와 달리 동독의 법률을 유효하게 인정하여 그에 위반한 행위가 처벌된 사례들도 있다. 예컨대 1989년 10월 7일의 시위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된 시민을 상해한 경찰관이 처벌받았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건들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독정권에서 벌어졌던 광범한 인권침해

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심지어 호네커를 비롯한 당 간부들에 대한 재판진행의 중단, 극소수 지도자들에 대한 수사, 경비병들에 대한 판대한 처분들은 희생자 가족들로 하여금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를 내게 하기도 했다. 다음은 독일의 유력지 「디 벨트」와 프랑스의 「리베라시옹」지가 동독을 탈출하려던 시민에게 발포한 경비병에게 3년 6월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반응과 견해를 실은 글이다.

『디 벨트』 호네커에 의하여 부과된 동독 장벽의 월경자에 대한 사격명령의 피해자인 크리스 구에프로이는 그녀의 아들을 죽인 경비병에 대한 판결에 대해 몹시 불만이다. 그녀의 실망은 그 경비병들이 선고받은 3년 6월이라는 기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녀가 제기하는 문제는 왜 우리의 사법이 권력에 있었던 '살인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 콜 수상이 최근 칠레를 방문했을 때 피노체트 정권하에서 일어난 범죄의 책임자들은 기소되어야 하며 희생자들은 정의의 힘을 행사하는 즐거움을 맛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에서는 왜 더욱 강력하게 그런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가? … 구에프로이 여사는 국가를 비판하는 용기있는 자세를 취했다. 이제야말로 기소자들을 동정하기보다는 그들에 의한 희생자를 배려할 때이다. 호네커의 명령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좋은 친구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다.

『리베라시옹』 재판이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베를린 장벽을 지키던 동독 경비병들에 대한 재판이 끝났다. 지난 1989년 탈주하던 크리스 구에프로이를 사살했던 잉고 하인리히는 3년 6월, 안드레아스 쿠헨파스트는 2년간의 집행유예, 나머지 2명의 경비병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장 테오도르 자이델은 "동독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탈주자에 대한 사살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단순히 '긴 연결고리 가운데 말단에 서 있음'에 불과하다"고 말함으로써 '진실로' 유죄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는 독일의 사법제도를 암묵적으로 시사했다.

4. 결론 : 화해와 미래로 향하여 열린 길

이상에서 우리는 불의에 대한 심판과 범죄에 대한 응징이 부분적으로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의실현의 더 많은 실패와 범죄자의 효과적인 면책, 죄없는 다수 희생자의 계속되는 고통을 접검했다. 이 상황은 얼마나 인류에게 모독적인 것인가.